

獨逸統一 關聯 資料集(Ⅱ)

1991. 12.

統 一 院

冊을 내면서

이 冊子는 駐獨韓國大使館이 提供한 각종 資料 및 同 大使館에 派遣되어 있는 當院 所屬의 統一研究官이 송부한 報告書 가운데, 統獨以後 주요 懸案問題 및 解決方案을 다룬 資料를 編輯, 發刊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冊子에 실린 內容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은 아니며, 現地에서 送付한 資料를 그대로 複製·發刊한 것도 相當部分 있다는 점을 勘案하여 活用해 주시기 바랍니다.

獨逸統一問題나 韓半島問題의 解決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關係專門家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총 목 차

I. 통독이후 1년간 각 분야별 통합현황	3
II. 통독 1주년 보고서	63
III. 독일은 하나다 (통합조약 및 부속문서 해설 자료)	121
IV. 구동독의 붕괴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165

통독이후 1년간 각분야별 통합현황

목 차

1. 기업 및 경제구조 재편을 통한 동독의 재건	7
2. 사회적 통합분야	10
3. 통독과 관련한 재정문제	13
4. 소유·재산권 문제	17
5. 주택문제	21
6. 환경오염제거 문제	23
7. 연구·과학·기술분야 재편	25
8. 동·서독간 심리적인 이질성 극복 문제	27
9. 행정체계 확립	31
10. 사법체계 확립	37
11. 군사통합 문제	41
12. 교육통합 문제	44
13. 과거청산 문제	48
14. 언론체계의 재편	53
15. 구동독의 대외관계 처리	56
16. 체육통합 문제	59

1. 기업 및 경제구조 재편을 통한 동독의 재건

가. 시장경제 체제로의 재편에 따른 동독지역 경제붕괴

- 40년간에 걸친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패로 전분야 걸쳐 서방기업과 경쟁력 있는 업무 전무
 - '90. 4/4분기 제조업 부분 생산량 감소 : 전년도 대비 평균 - 50.9%
(경제 5현 특별보고서)
- COMECON 국가들의 수주 격감
 - 과거 동독기업의 대외무역중 70% 차지 (그중 40%는 대소무역)
- 서방기업의 투자 장애요소
 - 생산수단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법적인 소유관계 미확정
 - 각종 인.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해 줄 행정체계 미구축 특히 등기업무 분야 전문인력 부족
 - 투자 입지조건으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 미비
- 구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 장애 요소
 - 대부분 기업의 매각조건이 좋지 못함.
 - . 노후한 환경정화시설 대체비용 소요
 - . 과거 기업재산의 과대평가로 막대한 구채무 존재
 - . 기존 고용계약관계 인수에 따른 부담
 - . 자본주의적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개시 대차대조표 작성 지연
 - 매각이 안된 기업은 정비하여 매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하나 막대한 경비와 경영인력 소요
 - . 약 4,000억 DM 소요 예상
- 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증가하는 임금인상 요구
 - 화폐. 경제 통합 이후 평균임금 75% 인상

나. 경제구조 재편 및 재건현황

o 구동독지역 경제규모 (Ifo 경제연구소)

- 전체독일 총 GDP 2조 6,600억 DM중 7%인 1,850억 DM
- 전체독일 취업인구중 19%
- 구서독지역에 비해서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1/3 수준

o 농업분야

- '91. 7. 7 농업구조 조정법 (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 통과시켜 생산수단의 소유권 확정 및 농업생산 협동조합 (LPG) 구조개편 추진
 - . LPG는 '91. 12. 31까지 해산되어 협동조합, 가족농 형태의 개인자영농, 회사농 등으로 다시 등록함.
 - . LPG를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 공유자산이던 농기구와 재고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
 - . LPG의 구조전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상 과도한 잉여인력의 해고권을 LPG 이사회에 부여함.
 - . 미해결 재산권의 소유권 확정 및 반환과 관련하여 LPG 이사회 임원들이 부채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짐.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건
 - . 과도한 은폐산업 감소 (구서독과 비교할때 2배정도 과도인력 존재)
 - . 우수한 농기계, 질 좋은 제조체, 비료사용, 축사의 재건 등 자본확충
 - . 경영개선 및 능률에 상응하는 급료지급
 - . 재산평가불 통한 재산현황 파악 및 구채무 경감
 - . 기업의 규모와 가축수를 경제적, 환경보호적 필요성에 맞게 조절
 - . 향토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
- 농업지원대책
 - . 신설농가 육성을 위한 호조건의 용자지원
 - . 기업농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청산 및 적응보조금 지원
 - . 농지정리 지원 및 농작물의 가격경쟁 증대책 마련

o 상공업 분야

- 경기하강 국면 일단 정지
 - . 공공투자, 기업사유화, 기업신설을 통해 경기회복 기미
- 국유기업의 사유화 지속 추진
 - . 신탁청 관리 8,790개 기업중 3,400개 매각 ('91. 9월말 현재), '91말까지 4,000개 예상
 - . 사유화를 통해 57만의 일자리가 확보되고 700억 DM의 투자가 보장됨.
 - . 건설업, 수공업, 상업 분야의 사유화 활발
-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 . 구동독지역 투자에 한하여 기한부 투자보조금, 특별감가상각을 허용하여 개인투자 유치
 - . '91에 250억 DM, '92에는 360억 DM 사기업 분야 투자 예상 (Ifo 연구소 추정)
 - . 투자촉진을 위해 관련 입법 제정.정비 : "기업사유화에 있어서 장애 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 제정으로 미해결 재산 원소유자에게 반환원칙의 예외 인정
-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촉진
 - . 교통, 우편.통신, 도시건설, 환경보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현대화
 - . 교통분야 300억 DM('92-'95), 우편.통신분야 550억 DM('91-'97)투자
 - . 사회간접자본시설 조기확충을 위해 건설에 따른 기존의 행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마련중.
- 기업신설 현황
 - . 생산.제조업 분야 기업신설은 저조한 편이고, 도.소매업,接客업, 수공업 분야가 활발한데 37만 5천건이 등록 ('91 8월 현재)
 - . 기업신설의 장애 : 영업공간의 협소 (임대료 상승), 유동자금 미확보 (소유권 관계 미확정으로 담보 제공 능력 미흡), 수주량 부족 (구동독인들 서방제품 선호) 등

2. 사회적 통합 분야

o 과거 총취업 인구 (900만)의 1/3이 실업 또는 단축조업 상태

- 동. 서독간 통독을 즈음한 1년동안 실업추세

		서독지역	동독지역
실업 (명)	'90.8	1,821,800	351,286
	'91.8	1,672,200	1,063,200
단축조업 (명)	'90.8	26,600	1,861,158
	'91.8	129,600	1,451,700
실업률 (%)	'90.8	6.2	4.1
	'91.8	5.6	12.1

. 서독지역은 동독지역 특수로 인하여 실업자가 줄고 있는 반면, 동독지역은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음.

- '91년말까지 실업 170만, 단축조업 200만 예상 (경제 5현 보고서)

o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유경험자, 전문인력 이주 지속

- 임금격차, 자녀교육, 문화생활 향유 가능성 고려

- 화폐, 경제, 사회통합 발효 이후 1년동안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36만명 이주 (생활근거지를 완전히 옮긴 사람)

. 매년 17만명 증가 예상

- 집은 동독에 있으면서, 서독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15 - 20만 추정

o 동. 서독지역간 생활수준 격차 심각

- 실업노동자

. 구동독 평균 실업수당 : 854 - 922 DM ('90년 후반기 구동독 노동자 평균임금 1,357 DM의 63 - 68% 수준)

. 구서독지역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 : 3,192 DM

- 단축조업자

- .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실업수당을 받게됨.
- . 전체 단축조업자중 규정노동시간의 50% 이상을 조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57%에 이르고 있음. ('91. 6말 현재)

- 공공기관 종사자

- . 200만 구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중 새로운 행정기관에 인수되지 못한 자들은 6개월 (50세 이하) - 9개월 (50세 이상)동안 최종봉급의 70%를 받는 대기 경과기관을 거친후 자동실직됨.
- . 현재 140만에 이르는 잔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서독지역 60%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고 있음.

- 연금생활자

- . 구동독지역의 60만명의 연금대상자들은 최소한 '91.1부터 545 DM ('91.7 부터는 인상되어 600 DM)의 연금혜택을 받음.
- . 45년동안 기여금을 불입한 경우 구동독지역은 평균 773 DM, 구서독지역은 1,751 DM의 연금을 받고 있음.

o 통독전에 비해 구동독지역 실질임금은 상승 (Ifo 연구소, '91.8 조사)

-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독지역으로부터 막대한 사회보장 이전지출과 명목 임금 상승에 기인함.
- 2명의 취업자가 있는 4인 가족의 평균임금은 3,691 DM으로 '89에 비해 실질 임금 28% 상승
- 1명의 취업자에 1명이 실업수당을 받는 4인가족의 평균임금은 3,436 DM으로 '89에 비해 실질임금 19.1% 상승

o 정부의 적극적인 실업 및 사회보장 대책 마련

-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서독의 각종 사회보장체계 확대
 - . 대등한 의료. 보건혜택 부여를 위해 의료보험기관에 국가보조
 - . 연금액 인상을 통한 연금생활자 격차해소

- .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되는 빈곤계층에 사회부조금 지급
 - . 무주택자에게 주택임대 보조금 지급
 - . '91 서독지역으로 부터 동독지역으로 재정이전 지출된 1,530억 DM (IW 경제연구소 추정)중 38%인 580억이 투자부분에 활용되고, 62%인 950억 DM은 사회보장경비 (서독 수준으로의 실업수당, 자녀수당, 주택 보조금 등) 지출에 사용되었음.
- 적극적 실업대책 마련
- . 각 기업체와 협력하여 고용창출 조치 (ABM) 확대 : '91 28만명 계획
(8월말 현재 26만명)
 - .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직능을 개발하기 위해 전직.자질 향상 훈련 실시 : '91 55만명 계획 (8월말 현재 53만명)

3. 통독과 관련한 재정문제

가. 구동독지역 주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취약

o 세입 격감의 원인

- 구동독지역 기업의 도산으로 법인세 부문 세수부진
- 구서독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50% 수준) 개인소득세 부문 세수부진
- 국유재산의 사유화 부진으로 재산세 부문 세수부진
- 세무행정체계의 미확립으로 세원포착 미흡

o 조세수입 현황 (DIW 연구소 추정)

- '91 구동독지역 각주는 구서독지역의 1/3, 지방자치단체는 1/10 수준
- '95까지 구동독지역 경제재건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나 1/2 수준 유지 추정
- 주민 1인당 조세수입현황

(단위 : DM)

	'91	'92	'95
구서독 지역주	3,300	3,500	4,300
구동독 지역주	1,150	1,300	2,100
구서독 지자체	1,300	1,400	1,650
구동독 지자체	150	300	800

나. 동독지역 재건에 필요한 재정지출수요 증가

- o 동·서독 지역간 생활격차 해소 (보통 과거 서독의 갈사는 주와 뫼사는 주 간의 차이 정도로 파악)를 위한 통독비용

- 2000년까지 구동독지역은 구서독지역보다 매년 5배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해야하며 매년 1,000-1,500억 DM 소요추정 (구동독지역 Sachsen주지사)
- 2000년까지 구동독지역이 구서독지역 생산성 수준의 4/5 정도에 도달하려면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율을 달성해야 하며, 총 1조 5천억 DM 혹은 매년 1,360억 DM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Ifo 경제연구소 추정)

- 통독에 따른 주요비용 추정치

· 쾰른군 철수 비용	:	130억 DM
· 구동독정부 재정적자 인수분	:	300억 DM
· 구동독 대외채무 인수분	:	300억 DM
· 신탁청 차입금	:	900억 DM
· 과거 동독 국유기업의 구채무 인수분	:	1,000억 DM
· 주택의 보수유지 현대화	:	500억 DM
· 농업구조 재편을 위한 지원금	:	70억 DM
· 교통망 개선 (서독지역수준)	:	1,270억 DM
(철도 480억 DM, 도로 700억 DM, 하운 80억 DM, 공항 10억 DM)		
· 환경정화시설 투자	:	2,000억 DM
· 우편·통신 분야 시설 투자	:	550억 DM
· 동·서독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	:	700억 DM
· 에너지 산업 설비 현대화	:	1,000억 DM

-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투자는 민간기업에 위임하고 있으며, 정부는 투자의 활성화와 산업입지조건 강화를 위해 공공투자(사회간접자본, 환경보호, 교육, 에너지 부문)에 주력함.

o 각종 자원조달 수단

- "독일통일기금"에 의한 지원 : '94에는 완전 소진

· 연도별 지원액

(단위 : 십억 DM)

년 도	'90 하반기	'91	'92	'93	'94	총액
지원액	22	35	28	20	10	115

· 주민수에 비례하여 각주·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 세금인상조치를 통한 재원 마련

· '91. 7. 1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인상

· 인상내용 : 개인 및 법인소득에 대한 7.5% 추과과세 석유류세

(휘발류 1리터당 25pf 추가), 보험세, 자동차세, 담배세

· 국민의 추가부담액

(단위 : DM)

매월소득	추 가 자 부 담 액	
	독신자 가정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
1,400	32.80	25.50
2,000	41.10	25.60
3,500	84.40	58.50
5,000	118.50	82.80
6,500	158.80	111.60
8,000	223.20	160.60
10,000	294.80	206.50

· 주민개인소득에 대한 담세율 변화 추이

(단위 : %)

년 도	'70	'75	'80	'85	'90	'91	'95
담세율	33.9	36.6	39.3	42.0	41.5	43.0	45.2

- 적자재정 운용

- 세대간 부담배분방식이라 할 수 있는 지속적 적자재정 운용은 공공부문의 자본시장 차입을 증가시키고, 결국 이자율을 상승으로 인한 투자저해로 동독지역의 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방만한 팽창예산 운용은 경화로서 마르크화의 신뢰문제와도 관련 되어 상당한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 '91 공공부문 적자액은 1,500-1,700억 DM으로 독일 총 GNP의 5% 예상
- 공공부문 적자누계액 (연방철도, 연방우편 적자 포함)

(단위 : 10억 DM)

년 도	'85	'86	'87	'88	'89	'90	'91
누계액	847	894	951	1,010	1,039	1,171	1,300

- 각종 특별부과금 도입 검토

- 환경정화시설 개수를 목적으로한 환경특별부과금
- 동독지역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수당 기여금 증액 등

- 통독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계층으로부터 일정액 징수, 기금조성방안 검토

- 이전 몰수재산을 반환받는 사람으로부터 일정액 징수
- 이전 몰수재산에 대해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일정액 징수

4. 소유. 재산권 문제

가. 공권력에 의해 몰수된 이전재산권의 반환 및 보상

- o '45-'48 (소련점령하) 토지개혁에 의한 몰수재산은 미반환
 - 약 320만 ha로서 구동독지역 토지의 1/3에 해당
 - "2+4" 회담에서 소련측에 양해사항으로 통합조약에서 미반환에 등. 서독 합의함.
 - 이전 소유권자들은 상기 통합조약의 규정들이 기본법(헌법) 제3조 (평등권), 제14조 (재산권), 제79조 (기본법 개정불가사유)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재판부는 합헌판결을 내림.
 - . 통합조약 4조 Nr. 5에 의해 기본법 143조 3항에 삽입된 상기 몰수 재산의 미반환 방침은, 79조 기본법 개정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 . "당시 서독의 국가권력이 사실상 그리고 법률적으로 동독지역에 미치고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마치 외국의 국가권력작용에 의한 제반조치에 대해 그 어떤 책임을 질수 없듯이 당시 소련 점령군이 행한 몰수조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수 없으므로" 기본법 제14조 (재산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 . 다만 기본법 제3조 (평등권)에 의거 입법권자는 사후 보상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판시함.
- 이 판결에 의거 재무성은 현재 과거 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입법추진중임.
 - . 보상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이자를 계상하여 주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o '49. 10. 7이후에 반법치국가적 방법으로 몰수된 재산권은 재산법(Vermögensgesetz)에 의하여 이전 소유자가 반환신청을 할 경우 반환을 원칙으로 함.
 - 120만건의 반환신청이 접수되어 있으며 담당부서인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에서 이를 심사, 처리하고 있으나 막대한 행정인력 소요
 - 다만 재산법 제3조에 의해 공공단체 (예를 들어 지방행정기관)나 신탁청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일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구동독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환신청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고 신탁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직접 임대되거나 매각될 수 있음.
 - . 토지나 건물의 경우
 - ..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 .. 주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할때
 - ∴. 긴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성에 필요할때
 - . 기업의 경우
 - .. 고용을 창출, 유지하거나, 경쟁력을 제고시킬 때
 - .. 이전 소유자가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한다는 보장이 없을 때
 - 이러한 개인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침해로 간주되는 특별예외규정은 '92. 12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됨.
 - 공공단체나 신탁청이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도 투자법(Investitionsgesetz)에 의해 반환신청에도 불구하고 제3의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음.
 - . 이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증명서(Investitionsbescheinigung)를 시, 군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바, 발급조건은 상기 재산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함.

- 재사유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전 소유자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소유권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소유권리를 지정(Einweisung) 받아 기업을 자기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이러한 임시적인 권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소유자가 재산법을 담당하는 해당 주정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 신청권자가 기업을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며,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 신청권자는 기업이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업운영 방안을 제출해야 함.
 - . 원소유자(Alteigentuemer)와 현재의 관리자(Verfuegungsberechtigten, 보통 신탁청)의 법률적 관계는 관리자가 매매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임대계약(Pachtvertrag)의 제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 .. 이때 임대료나 매매대금 지불은 완전히 소유관계의 확정으로 관리자에게 기업의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gestundet) 됨.
 - . 해당관청에 의한 이러한 임시적 권리 지정이외에도 원소유자와 해당관리자는 언제라도 기업의 잠정적인 이용에 합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해당 관청에 통보되어야 함.

나. 원소유자의 권리신청이 없는 국유재산의 경우

- o 구동독의 지방행정기관 관리하의 국유재산은 통합조약 21조와 22조에 따라 행정재산(Verwaltungsvermoegen)과 재정재산(Finanzvermoegen)으로 분류되는데, 신탁법(Treuhandgesetz)과 지방재산법(Kommunalevermoegensgesetz)의 규정에 따라 신설 5개주 지방행정기관의 신청으로 신탁청이나 주국세청(Oberfinanzdirektion)의 결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

- 통합조약 21조에 규정된대로 '89.10.1부터 '90.10.3 (통독)될때까지 직접 지방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사용되었던 행정재산 (Verwaltungsvermoegen)
 - . 신탁청이 이관결정을 하는 재산 :
 - 시내교통운수회사, 청소회사, 쓰레기수집 및 운반회사, 이론을 가르치는 직업학교, 도제들의 기숙사, 공장소속 유치원, 공장소속 스포츠센터, 공장소속 종합병원, 공장소속 문화센터
 - . 주국세청이 이관결정을 하는 재산 :
 - 학교 (고등), 전문대, 유치원 (유아원), 스포츠센터, 시립수영장, 도로, 주차장, 가로등, 공동묘지, 시립공원, 시립도서관, 시립극장, 박물관, 유적지, 시청, 행정기관 건물, 시립 망명자 숙소, 소방서, 쓰레기처리장, 기초정기진단을 위한 병원, 종합병원, 양노원, 재활원, 장애인복지원, 문화회관, 청소년클럽, 재향군인회클럽, 관개시설, 시립근교 휴양지
- 신탁청 제1조에 의한 주식회사의 재정재산 (Finanzvermoegen) : 신탁청이 이관 결정
 - . 상. 하수도 사업소, 난방공급회사, 도축장, 항구 및 항만시설, 전기회사, 가스회사
- 통합조약 22조 4항에 의한 주택조합 재정재산 : 주국세청이 이관 결정
 - . 주택건물, 쓰레기처리장,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녹지, 난방용 기구 및 건물, 관리사무소, 관리인 주거지
- 통합조약 부속문서 II, Kap II, Sachge A, Abschim III d에 의한 구동독 정당 및 대중외곽단체 재산 : 신탁청이 이관 결정
 - . 휴양시설, 주택건물, 관리사무소, 관리인 주거지, 인쇄소, 교육시설, 여가선용시설
- Stasi가 소유하고 있던 행정 또는 재정재산 : 주 국세청이 이관결정
- 인민공유 (국유) 동산, 산림회사 : 신탁청이 이관 결정

5. 주택문제

가. 주택분야 소유권의 확정

- 통합조약 22조 4항과 의정서 주석 13항에 의하면 구동독 인민공유 (국유)재산중 국유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과 주택협동조합 (Wohnungsgenossenschaft)에 의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지방자치 단체에 일단 소유권을 이양하기로 되어 있음.
 - 각 지방행정기관 (Gemeinde, Staedte, Landkreise)은 해당재산에 대해 직접 처분권이 있는 바, 해당 재산을 시장경제에 기초한 주택경제구조에 적응하도록 완전 사유화 (privatisieren)시키던가, 지방행정기관이 지분을 가지면서 회사 형태로 전환 (ueberfuehrung)시킴.
 - 다만 재산법에 의해 이전 몰수재산에 대한 반환신청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해당재산은 상기조치와 관계없이 반환되거나, 보상조치됨.
- 각 지방행정기관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주택건설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의 현대화와 보수유지를 하기 위해 해당재산을 시장경제구조에 맞도록 사유화할 책임이 있고 각 주정부는 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그 사유화 형태는 다음과 같이 예상됨.
 - . 지방행정기관이 자본지분을 갖는 개인회사 형태 (유한회사, 주식회사)
 - . 주택조합의 소유로 대지와 건물 이관
 - . 제3자 (개인 또는 기업)에게 매각
 - . 주택소유권법 (Wohnungseigentumsgesetz)에 의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인별 주택재산 형성자에게 매각
 - 그러나 해당재산의 제3자에게 완전 매각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을 받음.
 - . 그 대지가 사회복지주택 (Soziale Wohnung)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 주택조합이나 개인의 주택재산 형성의 목적에 사용되어 주민들의 주택사정
해소에 이용되는 경우

- o 반환신청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이전 몰수재산은 원칙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만 이루어짐.
 - 재산법 제5조에 따라 해당재산이 공동주택 (Complexe Wohnungsban)이나 단지
(Siedlungsbau) 조성에 사용될 경우
 - 통합조약 22조 4항 2절에 의해 해당재산이 주택부양을 위해 구체적으로 건축
시행계획하에 포함된 경우 ('90.10. 3 이후)
 - 재산법 5조 1항에 따라 해당재산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 유치원, 병원 등)

나. 구동독지역 임대료 인상문제

- o 통합조약에서는 동독지역에 한하여 일정기간동안 낮은 주택임대료가 책정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인상이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o 구동독지역의 주택환경은 너무도 열악함으로 주택경기가 활성화 되고 집주인들
이 주택개량과 현대화를 위한 부자의욕을 갖게 하고, 주택시장은 시장경제 구조
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 불가피
 - '91. 8. 1부터 평방㎡당 3DM의 임대료를 인상함.
 - . 구동독지역의 임대료 : 평균 평방㎡당 1-2DM에서 4-5DM으로 인상됨.
 - 소득수준이 일정액 미만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택보조금을 지급함.

6. 환경오염제거 문제

- o 계획경제 실패 유산으로서 그 체제가 안고 있던 여러가지 구조적 요인 때문에 구동독지역 환경오염 잠재 심각
 -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책임하에 무슨 일을 하려하지 않았음으로 특히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각 개인들이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았음.
 - . 반면 서독에서는 각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적 정신을 가지고 주위것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쓰레기 분리수거, 세제안쓰기 등)
 - 계획경제체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위주 할당량 채우기만 강요해, 생산수단 투자에 있어 환경보호적 장치마련과 환경보호적인 산업구조적 조정을 어렵게 만들.
 -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자원같이 경우 억제작용이 없이 마구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환경오염 가중
 - 국제적으로 폐쇄적인 자력갱생적 경제체제로 환경보호 기술과 경험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환경보호분야의 국제적인 노동분업에도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됨.
 - . 더구나 자립경제체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더라도 사용가능한 자국의 자원만 마구 쓰게 됨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킴.
 - 농업분야에서 생산기술이 열악하고, 환경보호적이 아닌 화학비료, 농약을 마구 사용 대지오염 가중
- o 구동독 국유기업의 환경오염 잔재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인수를 꺼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활성화와 환경문제 해결이 안되고 있음.
 - 영업상 또는 경제활동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과거 동독기업이나 대지를 인수하려는 자는 '90. 7. 1 (화폐, 경제, 사회통합 발효시점이자 동독지역에 서독의 법에 준하는 환경보호법 도입시점임) 이전에 원인제공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의 책임을 면제함.

- 이러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구채부 (Altlast) 면제신청은 주정부 해당관청에 늦어도 '91. 12. 31까지 제출되어야 함.
- 이러한 조치로 구동독 공유기업 매각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환경오염잔재 문제 (과거 서독의 법률적 기준으로 각종 환경정화와 시설을 마련하는데 막대한 자원 소요)는 매입투자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신탁청이 인수하게 됨.
- o 2,000년까지 서독수준으로 동독지역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2,000억 DM으로 추정 (Ifo 경제연구소)
 - 폐수처리 시설 : 1,250억 DM
 - 공기정화 시설 : 230억 DM
 - 쓰레기처리 시설 : 340억 DM
 - 오염지대정화 : 110억 DM
 - 식수문제 해결 : 170억 DM
- o 정부의 구동독지역 환경재건 프로그램
 - 심각한 환경오염 부담지역에 즉각 대응책을 마련, 환경정화와 아울러 실업감소 도모
 - 이미 조사된 12,250에 달하는 구오염잔재 부담지역중 심각한 196개 지역에 우선 정화 실시
 - 25만 ha에 이르는 구동독과 쏘련군 주둔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 강유역에 27개 정수시설 긴급 건설
 - 환경정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 환경정화 국제전시회 개최, 초현대적 환경정화기술 도입
 - 특수 폐기물 적치장 건립
 - 투자재원 마련
 - 폐기물 특별부과금, 탄산가스 특별부과금 징수 예정
 - 사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정화회사 설립시 세제상 혜택 부여
 - 구동독의 환경정화인력 자질 향상
 - 환경전문가들 파견 자문. 교육훈련

7. 연구.과학.기술분야 재편

- o 현재 연방 연구.과학.기술성 (BMFT), 각주의 과학.기술담당부처, 각 주대표로 구성된 청산 및 조정실무위원회 (KAI)는 학술심의회 (Wissenschaftsrat)의 권고에 따라 구동독 과학아카데미 (Akademie der Wissenschaft)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91.12.31까지 연구종사자들의 고용관계는 신설주정부가 인수하며 새로운 주법에 의해 장래가 결정됨.
 - . 기존대학 연구소에 이관되는 방법
 - . 새로운 주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존속하는 방법
 - . 기본법 91조 b에 따라 연방-주정부간 공동재정 부담 비율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Max-Planck-Gesellschaft (연방과 모든 주정부간의 재정부담 비율은 50:50)가 되거나, Fraunhofer-Gesellschaft (연방과 모든 주정부간 부담 비율 90:10)이거나, Grossforschungseinrichtung (연방과 연구기관 소재지 주간의 부담비율은 90:10)이거나 "Blauen Liste" (각 연구기관별 부담비율은 다름)에 따른 새로운 연구기관이 되는 방법
 - . 사경제 주체에게 매각을 통해 이관되는 방법
- 이러한 기존연구의 존.폐문제는 학술심의회에 의한 전문감정서에 의한 권고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됨.
 - . 학술심의회는 구동독 과학아카데미 연구기관을 조사하기 위해 구동.서독 지역 및 EC의 과학자로 구성된 7개의 전문가 그룹 (Arbeitsgruppe)을 결성했으며, 건축 아카데미 (Bauakademie)와 농업아카데미 (Akademie der Landwirtschaftswissenschaft)를 위해 각각 1개씩 전문가 그룹을 따로 결성함.
- 학술심의회는 현재까지 조사를 근거로 하여 구동독 과학 아카데미 소속 연구자 2만 4천명중 9천 - 만명정도가 인수되어, 새로운 연구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연방 연구.과학.기술성은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음.
 - . 이중 2천명은 각 주정부 특히 대학연구소에 흡수될 것임.

- 이 중 7천 - 7천 500명을 연방 - 주정부 재정 공동부담의 연구기관으로 흡수할 계획임.
- 과거 국유기업에 종사하던 산업체 기술연구원 (8만 6천명)의 장래가 불투명한바 이 중 이미 2/3가 서독으로 이주하였거나 실업에 직면했거나 조기정년퇴직을 하였음.
 - 일부는 사유화된 기업을 따라 과거 국유기업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연구용역기술회사 (Forschungs-GmbH)가 되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체 연구기관은 생존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현재도 신탁청 (Treuhandanstalt)의 관리하에 있음.
- 청산 및 조정실무위원회 (KAI : Koordinierungs-und Abwicklungsstelle) 활동
 - KAI는 구동독지역 신설 5개주와 베를린의 동의를 얻어 각주에서 파견된 인원을 중심으로 '91.12.31까지 구동독 과학 아카데미 산하 연구기관 청산을 위해 설치된 업무.조정 협의 기구로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음.
- 기존연구기관 고위직 연구원들 쇄신
 - 모든 연구기관의 소장 (Direktor), 실장 (Abteilungsleiter), 과학아카데미 간부들에 대해서는, 과거 Stai 등과 연루된 과거 전력이 없는지를 전면 심사함.
 - 현재 구동독 연구기관 소장급중 절반이 해고되었음.
- 연방정부는 구동독 연구기관중 더이상 과학.기술.연구기관으로 존속하지 않게 되는 기관들은 사경제 주체에게 사유화 매각할 예정임.
 - 이 매각 자금은 '91.6말 현재 300만 DM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기금 재단 (Wissenschaftssiftung)을 만들어, 신설 5개주 과학 진흥에 사용할 예정임.

8. 동. 서독간 심리적인 이질성 극복 문제

- o 국가적, 제도적인 통일은 행정적,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미 1년전에 완료되었지만, 많은 구동독 주민들은 아직도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채 심리적인 격차 상존
 - 구동독 공산정권의 교조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 교육에 의해 양성된 인간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이 구서독인들의 그것과 편차를 보이지 않고 양독 지역 국민들이 공통의 정체성(gemeinsame Identitaet)를 갖는대는 약 한세대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음.
 - 이러한 구동. 서독간 상이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다른조건에 기인하는 경험 및 인식체계를 동등화시켜 양지역 주민들간의 정신적, 심리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의(politische Bildung)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 그러나 이미 독재체제를 57년동안 (히틀러 독재로부터 통독이 될때까지) 경험한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위로부터의 행정적인 지시에 의한 일방적인 강요형식의 교육은, 새로운 질서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또다른 독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o 현재 동독주민들은 익숙한 것들이 모두 폐기되고 새로운 질서와 규범이 도입됨에 따른 "대변혁의 쇼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심리적 불안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음.
 - 인간의 존재는 인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제도와 구조속에서 규정되어 지는 바, 새로운 제도를 익히는데 동독지역 주민들은 너무 많은 시간과 신경을 써야 함.
 - . 마치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던 사람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야 했을때 느끼는 답답함과 똑같이, 통합조약에는 통독이후 양독간에 법률의 동화가 완료되어 대부분의 서독의 법률이 동독에 이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독주민은 실생활에서 너무도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실업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생활기반과 자아실현의 토대를 상실하였음.
 - . 구동독에서는 실업이라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의 후견에 의해 완전교육과 직장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통독후 경쟁사회에 던져져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구서독인들에 비해 엄청난 심적 부담임.
 - . 더구나 물질적인 생활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평생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자기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자기 과거의 노동이 전혀 가치없는 곳에 투입이 되었다는 자기비하와 함께 생의 의미를 재확인 해보아야 하는 엄청난 고뇌를 겪고 있음.
- 미해결 재산권 문제가 많은 동독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 국유(인민공유)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각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목적으로 내어놓을 경우는 덜한데,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언제 서독지역으로부터 반환신청이 닥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안해 하고 있음.
- 통독이후 과거 가해자들에 대한 과거 청산문제가 제기될때 구동독주민들에게는 체제전환에 따른 심적 고통이 존재함.
 - . 40년간의 사회주의는 각 개인에게는 기억속에 살아 있는 역사인데, 이러한 역사를 완전히 범죄로서 단죄해야 하는 시점에서 공범자 (Mittaeter)로서의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 자기가 직접 연루가 안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체제와의 단절은 자기 역사와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각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고통스러운 불안을 수반함.

o 정치교육의 구체적인 방향

- 주민들의 의식속에 잠재된 SED 지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점차 극소화 시켜나감.
 - . 모든 주민의 생활영역내에서 "당의 진리규정의 독점성" 잔재를 제거하고, 자유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 .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는 일상생활을 탈정치화 (Entpolitisierung)해야 함.
 - . 국가의 후견에 익숙하여 늘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보호문화' (Nischenkultur)로부터 탈피해야 함.
- 새로운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에 익숙해 지도록 다양한 정보와 만남의 광장을 마련함.
 - . 획일적인 정보가 아닌, 다양한 이해집단과 학술연구기관, 중립적인 교육기관에 의한 다양한 정보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 . 민주사회에 존재하는 갈등(Konflikt)속에 은폐할 수도 없으며, 서로의 이해를 표출하고 관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되 궁극적으로는 타협을 해나가는 "민주적인 논쟁문화" (demokratischer Streitkultur)가 정착되도록 함.
 - . 특히 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결성된 다원적 정당 구조에 익숙해지고, 기존의 정치제도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함.
 - 구동독지역 청소년층에서 만연되고 있는 정치적 무관심(연방정치교육센터 추정에 의하면 청소년층의 1% 미만만이 정치에 관심)과 소비.향락 문화에 대한 심취 등의 문제 해결
 -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는 각종 교육.홍보자료를 작성 배포함.
- o 현재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기관은 다음과 같음.
- 연방 수준에서는 연방내무성과 연방정치교육센터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r Bildung)가 맡고 있음.
 - 각 주정부 산하에 정치교육센터가 있음.
 - . 현재 구동독지역 신설 5개주에는 주정부의 행정체계가 완전히 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교육센터가 설립이 안된 곳도 있어, 자매를 맺고 있는 구서독지역 주정치교육센터가 많은 지원과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각 정당의 학술재단이 중요한 정치교육기능을 맡고 있음.
- 각 대학의 연구기관과 종교, 사회단체등도 자체세미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방 정치교육센터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정치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 구서독지역, 구동독 기관중에는 교회가 가장 구동독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음.
- 각 지방 자치단체는 기존의 자매결연을 이용하여 동, 서독지역간 친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남의 광장,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구동독지역에 결핍되어 있는 문화적인 사회간접자본 (Kulturelle Infrastruktur)를 확충하는데 많은 행정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각종 협회, 단체 등 자발적인 이익단체와 동호인 클럽들도 구동독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회원이 가입을 두고 있는 바, 이들 또한 동, 서독인들간의 이질감 해소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

9. 행정체계 확립

가. 행정조직 재편

o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 인력 감축

- 통합조약에 따른 구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 감축 기준
 - . Stasi 등 국가보위기구에 종사한 자
 - . 구동독 공산당 (SED)와 대중 외곽기구에서 체제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한 자
 - . 시민적, 정치적 재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66. 12. 19)에 보장된 인권과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 ('48. 12. 10)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위배된 행정 행위를 하였던 자
 - . 전문적 지식의 결핍이나 개인적성의 부적합으로 업무요청에 부응하지 못한자
 - . 더 이상 통독후에는 행정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할당을 받지 못한 자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 과도기적 경과기간 (50세이하는 6개월, 50세 이상은 9개월)동안 과거 급여의 70%를 받으며 전직준비, 그 이후는 자동실직
 - .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조치의 위헌여부를 제소했으나 패소
 - . 과거 200만의 구동독 공무원중 140만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추계
- 잔류공무원중 앞으로 몇명이 정식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지는 각 연방부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예산운용의 가능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임.
 - . 계속 근무가 확정되는 자들은 공무원 법에 의한 제자격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며, 일정한 유예기간을 갖고, 구체제와 관련된 과거경력 없이, 전문지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받음.

○ 공무원 법 (Beamtenrecht) 등 관계법령 마련

- 통합조약(Einigungsvertrag)에 따라 우선 연방 공무원법이 신설5개주에도 도입됨. 각 신설 5개주는 '92.12.31까지 주 공무원법(Landesbeamtenrecht)을 제정해야하며, 제정시까지 과도기간 동안 연방공무원법의 규정과 통합조약에서 합의된 별도 규정이 적용됨.

- '91.1.9. 연방내무성에 의해 제정된 "구동독 공무원중 해고되지 않고 인수되는 자들에 요구되는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Verordnung Ueber die Bewaehrungsfor derungen fuer die Einstellung von Bewerbten aus der oeffentlichen Verwaltung im Beitrittgebiet in ein Bundesbeamtenverhaeltnis)이 신설5개주에도 그대로 적용됨.

. 이 규정에 의하면 새로이 공무원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자들은 등급에 따라 유예기간(Bewaehrungszeit)을 갖기로 되어 있는바, 고위직(hoehere Dienst)은 4년, 고급직(gehobene Dienst)은 3년, 중급직(mittlere Dienst)는 2년, 단순직(einfache Dienst)는 1년 임.

○ 잔류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법적인 고용관계

- '91.1.1.을 기해 주요한 고용관계 제 법규는 거의 그대로 신설5개주에도 도입하여, 과거 서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적용되던 제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고용계약 관계가 형성 됨.

. 다만 능력에 상응하는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91.3.5. 임금 협상을 통해 구 동독지역 보수수준이 구 서독지역의 60%선 유지

나. 신설 5개주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 직업교육

○ 능률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해고되지 않고 연방, 주, 각 지방자체 단체에 인수되는 과거 동독지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임.

- 특히,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전문지식 뿐만아니라, 법치국가적 질서에 대한 신념고취등 정신교육도 중요함.

. 행정법, 헌법, 재정학, 행정학(인사, 재무관리)등이 주요 과목

o 현재 재교육 현황은 '90말까지 15,000명, '91말까지 30,000명에 대해 실시되거나 예정임.

- 이와 별도로 35,000명의 체신 공무원, 1,360명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됨.

- 특히 각주 세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방 재무성에서 직접 23개 교육 프로그램은 작성, 실시함.

o 연방 정부는 신설 5개주에 대해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조치를 함.

- 각 주의 공공행정 전문학교와 연방행정청(Bundesverwaltungsamt)에 더 많은 공무원 예비자를 양성 토록함.

- 연방 중앙공무원교육원(Bundesakademie fuer Oeffentliche Verwaltung)의 교육 계획에 신설5개주 공무원 교육 반영

. 특별반 운영(민주법치국가 질서와 전문 지식 제고를 위함)

다. 구 서독지역 공무원 신설 5개주로 파견.전보 장려 조치

o 봉급 지불상의 혜택

- 만약 파견되는 공무원이 신설 5개주에서 현재의 직급보다 훨씬 높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Zulage)을 지급함.

- 또한 '91.4.9. 연방 내각 결의로 구 동독에서 행정체계 구축에 참여한 구서독 공무원들은 그 근무기간이 지속적으로 1년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연금 산정시 각 근무기간에 대해 2배의 근무 기간 산정을 허용 받음.

- 이전에 따르는 생활 비용 보상 (Aufwandsentschaedigung)
 - 구 서독지역으로 부터 생활근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91.3.20 연방하원의 결의(내무성 건의)에 따라 각 직급에 따라 매월 1,500 - 2,500DM의 지급함.

- 여행경비, 별거 수당 지변
 - 파견일 경우 기혼자는 한달 2번, 미혼자는 한달에 1번의 귀향에 따른 여행 경비와 별거수당이 지불됨.

- 승진에 있어서 혜택 부여
 - '91.4. 말 연방 인사위원회(Bundesperssonalausschuss)는 구 동독지역 파견 공무원에게 경력 평정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도록 결정함.
 - . '91. 말까지 파견되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구 동독지역에서 3년이상 근무하게 되는자는 경력 평정시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함.
 - 또한 유경험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력상 더이상 승진할 기회가 없는 구 서독 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선발심사, 교육, 경력에 필요한 자격 확정등 인사상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 동독지역에 전보 조치함.

- 퇴직한 공무원 파견
 -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도 '92말까지 한시적으로 구동독 지역 행정체계 재건에 참여토록 함.
 - . 이 경우 과거 퇴직시 상응할 직급에서 임금 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받으며 근무하게 되는데 연금 신청권은 계속 보장 받음.
 - . 아울러 구 동독지역에서 근무한만큼 연금년도 산정에 가산함.(최고75%까지)

- 연방정부 각 기관의 공무원 파견 현황 ('91.8)
 - 국방성 (2,399명), 체신성 (1,679명), 노동성 (1,554명), 내무성 (849명), 재무성 (582명), 연방은행 (206명), 교통성 (146명) 등 각 부처 총 7,568명

라. 지방자치 행정체계 구축

- 통독과 더불어 구동독지역에는 비로서 1950년대 없어졌던 신설 5개주가 부활되고 구서독지역의 지방자치 형태 (Staedte, Gemeinde, Kreise)에 따라 새로운 지방행정체제가 구축되어야 했음.
 - 연방내무성과 구서독의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물자지원,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구서독의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구서독의 각 지방행정기관의 연합회는 행정의 연방주의에 의거 각지방 행정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구동독에 신설된 각 Staedte (중.대 도시에 해당), Gemeinde (소도시.읍에 해당), Landkreise (군에 해당)의 회원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서독으로부터의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있음.
- 통독이 되기전 '90년초부터 구서독측은 구동독지역의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형태의 행정지원을 제공해 왔음.
 - 이미 동.서독간 교류협력기간중 맺어졌던 도시간 자매결연 (Staedte-partnerschaft) 통로를 통해 주로 초기에는 물가지원을 제공했음.
 - . 통신수단 (전화, 팩시밀리), 각종 정보유인물 제공
 - '90년대 중반부터는 새로이 자문, 세미나 강사파견, 행정인력 파견 등 인적지원이 증가하였고, 건축자재 자동차, 사무용품기 등의 지원도 행해짐.

- 통독이후에는 통합조약 제15조 ("연방정부와 구서독의 주정부는 신설 5개주 행정체계 확립에 행정지원함")에 따라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짐.
 - . 행정자문단의 조직. 파견
 - . 상주전문인력 파견 : 연방내무성은 "인력파견에 따른 보조기금"을 '91. '92 각각 1억 DM씩 계상함.
 - . 구동독지역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직업교육 지원
- 상기 행정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내무성, 각주내무성, 각지방행정기관 연합회측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 . '90. 7.29 서독에 각주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기존의 동.서독간 도시 자매결연 형태로는 구동독의 중.소도시가 망라되어 있지 않아 (구동독의 5만 이상 도시는 거의 서독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음.) 서독측으로부터 충분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서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새로이 어떤 서독의 주가 구동독의 어느 지역을 관할하여 행정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함.

10. 사법체계 확립

가. 사법조직의 개편

o 주헌법재판소의 신설

- 구동독에서는 사법에 의한 헌법적 규제통제기능이 존재치 않았으며, 국가 권력기관인 국가평의회 또는 인민의회에서 법령의 헌법위반 여부를 심사
- 서독 기존의 각주는 연방의 모델에 따라 각주의 헌법규범을 척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국가이념의 보장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 운용
- 헌법규범의 정치적 동제는 더 이상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독 신설 5개주에서의 헌법재판소 설치에 각주의 연방주의에 의한 헌법적 책무임.

o 최고재판소와 대검찰청의 폐지

- '90. 10. 3을 기하여 동독의 헌법기관이었던 최고재판소와 대검찰청은 각기 폐지되고 그 청산작업은 연방법무부와 연방재판소 또는 연방검찰청이 분담하여 수행
- 최고재판소에 상고 또는 항소종심으로 계속중이던 사건은 연방의 최고재판소들로 이송되며, 제1심으로 계속중이던 사건은 주정부 소재 지구재판소의 특별부에서 심리 계속
- 대검찰청에서 담당하던 사건은 연방검찰청 또는 각주의 검찰청에서 인수

o 동독 법무성의 해체

- 동독법무성은 해체되어 각주정부 산하의 주법무성으로 변용

- 연방법무성은 동베를린의 구법무성 청사에 외청을 과도적으로 설치하고 법무부해체, 각 주법무부 창설, 통일적인 입법작업 등을 통괄

o 재판소 및 검찰청의 관할과 조직개편

- 신설 각주에 서독과 같은 심급의 법원조직 (구재판소 - 주재판소 - 주고등재판소)이 정비될 때까지 기존의 지구 및 군재판소에서 재판권 행사
- 검찰도 서독과 같은 조직 (주검찰청 - 주고등검찰청)이 정비될 때까지 지구검찰청에서 검찰권 행사하되 군검찰청은 폐지
- 소위 일반적 적법성감독의 권한, 민사, 가사, 노동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관여권 등 종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폐지되고 그 직무상 감독도 과거의 대검찰청 대신 각 주법무부에서 행사

o 행정, 재정, 노동, 사회재판소 등 특별법원의 설치

- 동독에는 행정, 재정, 노동, 사회사건 등을 독자 관할하는 재판소는 존재치 않았으며 특히 행정사건, 사회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관념도 없었음.
- 사회복지국가와 정치국가를 지향하는 통일이념상 서독의 모델에 따라 각 특별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설 각주의 당연한 과제
- 각 특별법원이 설치될 때까지는 기존의 지구, 군재판소에서 해당사건별로 재판권 행사

o 변호, 공증기능의 한시적 존속

- 서독의 연방변호사법, 연방공증인법이 연방단일법으로 정비될때까지 과도적으로 동독의 변호사와 공증인에 대한 관계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 계속

- 변호사, 공증인은 서독의 변호사, 공증인과 동등한 지위 내지 권한을 부여하되, 동독인가 변호사의 서독지역으로의 인가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 종전의 법무부에서 행하였던 직무감독권은 각주의 법무부로 이관되고, 징계재판 등의 최종심은 연방재판소에서 관할

나. 구동독 판.검사 심사 및 재임용

- o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불법정권 유지를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하였던 판.검사들을 사법으로부터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유법치국가 수립을 위한 통일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대두
- o 각 신설 5개주와 베를린주는 구동독에서 '90. 7. 22 공포한 법관선출위원회법에 의거 6명의 의원 (주정부 및 지방의회 의원)과 4명의 판사(또는 검사)로 구성된 법관선출위원회와 검사임용위원회 설치하여 적격자 심사 선발중
 - 심사기준 (각주마다 조금씩 다름)
 - . 구체제의 과거전력과 관련한 정치적.도덕적 하자유무, 법률전문지식 소지유무, 객관적.독립적 판결능력 유무, 재교육에 대한 준비자세
 - 법관선출위원회를 통과한 법관들도 3-5년의 시보기간을 거친후 종신법관으로 임명
 - 통합조약에서는 '91. 4. 15까지 각주별 선발문제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선발에 애로
 - . 선발위원들 자체가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많음.
 - . 심사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곤란
 - '91. 7말 현재 Sachsen주만이 구동독인력중 50%를 선발 완료하였음.

다. 구동독지역 법조인력 부족과 연방정부 지원 조치

o 법조인력 소요현황

단 위 : 명

	총소요인원	선발가능 구동독인력	추가 소요인원
법 관	5,000	600 - 700 (1,200)	4,000 이상
검 사	1,200	400 - 450 (900)	700 이상
법률집행인 (Rechtspfleger)	3,000	.	3,000

o 연방정부 지원 조치

- '90에 130명의 판.검사를 파견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의 50% 연방정부 부담.
- 구서독 주정부에서 실시한 판.검사 재교육에 50% 연방정부 부담.
- '91. 2.27 연방각의에서 1억 2천만 DM 상당의 지원계획 발표
 - . 은퇴한 판.검사.법률집행인 동독지역 파견 : 연금 (75%), 사례금 (35% 이상) 지급, 이전비용, 여행경비 보전
 - . 130명의 판사.검사 파견 (50% 연방정부 부담)
 - . 500명의 법률집행인 파견
 - . 기금조성 : 구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 사법기관에 채용을 신청한 법조인들에게 서독지역에 준하는 봉급지불을 위한 기금

11. 군사통합 문제

- '90. 10. 3 통독과 더불어 연방국방성은 구동독 인민군의 지휘권과 병력, 장비 등 모든 것을 인수하기 위해 동부사령부 (Das Bundeswehrkommando Ost)를 설치하여 '91. 6. 30까지 9개월동안 통독에 따른 군사통합 문제를 관장케 하였으며, '91. 7. 1부로 동부사령부는 해체되고 해고되지 않고 잔류하게 되는 병력은 각군 예하에 소속시킴.
- 구동독 인민군의 독일연방군 통합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인원선발과 감축 (해고)에 따른 문제임.
 - 현재 통독에 따른 국제적인 제조약에 따라 독일연방군은 65만 (구동독인민군 포함)에서 '94까지 37만으로 감축하기로 되어 있음.
 - 감군은 퇴직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퇴직후의 사회적 적응, 새로운 직업선택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구동독 인민군중 우수한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인력심사. 선발문제는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나 2년동안의 시보기간 (Probezeit)을 설정, 일단 선별된 자들을 시한부군인 (Soldat auf Zeit)으로 근무케 한뒤, 최종적으로 정식군인으로 채용할 계획임.
 - 구동독 인민군 총 9만명중 5만명을 일단 인수했는데 그중 15,000 - 17,000명이 장교와 하사관임.
 - 구동독 인민군의 특징은 장교는 많은데 유능한 하사관이 부족하다는 것임.
- 과거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던 분단상태의 의식을 극복하고 통합연방군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는 문제도 있음.
 - 구동독 인민군중 50세 이상과 대령이상의 현역들은 모두 전역시켰기 때문에 구체제와 관련된 주요 권력기반은 제거되었다고 볼수 있음.

- 2,500여명의 서독군 장교들이 동독지역에 파견되어 구동독 인민군을 큰 문제없이 지휘하고 있으나, 근무환경.보수.생활방식 등에서 차이가 상존하고 있어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님.
- 잔류 구동독 인민군들중 5천명의 장교와 3천명의 하사관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제하의 민주군대에 적응하도록 2주에 걸친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케 하였음.
- 그러나 봉급체계가 다르고, 구동독지역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동.서독군간에 갈등이 존재함.
 - . 군인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서독수준의 60%에 해당하는 봉급 (점차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격차를 줄여갈 계획이지만)을 받고 있는 바,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병에 대해서는 올해안으로 격차를 해소할 방침임.
 - . 최근 ('91. 1 - 5간) 동부지역 사령부에 접수된 1,600건의 소원수리 (Eingabe)중 700건이 봉급차별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80건이 인간적인 차별대우를 호소하고 있음.
 - . 국방성이 산정한 바에 따르면 동.서독 군시설 (특히 내무반, 위생시설, 취사장 등)의 격차를 줄이는데 최소한 160억 DM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 통독이후 예산중 국방비는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격차해소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음.
- o 통독과 함께 독일연방군에 인수된 장비와 탄약들은 감축폐기될 예정인데 이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임.
 - CFE 협정에 의거 전차.전투기, 대포, 함정, 미사일 등 5대 무기체계에 대해서 NATO 16개국이 각자 얼마만큼의 무기를 줄일 것인가가 결정되었는 바 구동독 인민군의 장비는 MIG-29기 (성능검사에서 우수한 비행기로 평가, 동독인민군이 상당한 부속품 재고량을 갖고 있어 10 - 15년 사용 결정)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장비를 폐기 또는 판매할 계획임.

- 장비(탄약 포함) 처리시 제3국에 판매문제는 현존 조약상 명시된 제한규정은 없으나, 가능한한 NATO 회원국에 판매할 예정이며, 연방안보이사회에서 매건별로 가부를 결정할 예정임.
 - 구동독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던 탄약 30만톤의 처리가 가장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탄약폐기에 10 -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산정조차 못하고 있음.
 - 탱크 1대를 폐기하는데 평균 10만 DM의 비용이 들며, 약 2,800대를 폐기해야 하므로 그 비용만 2억 8천만 DM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o 구동독 주둔 소련군은 '94말까지 점진적으로 철수할 계획임.
- 통독당시 소련인은 군인 34만명과 민간인 21만 등 총 55만명이 있으며,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던 병영, 훈련장 등의 부동산 가치는 1,000억 DM으로 추정되고 있음.
 - '94까지 매년 4 - 5개 사단이 철수할 계획이며 약 4,000기에 달하는 각종 무기도 이에 포함되어 있음.
 - 잔류 소련군의 탈영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소련군대의 기강 해이와 독일의 경제, 사회적 매력 때문에 귀향을 거부하고 현재도 250만명의 소련군이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고 있음.
- o 통독과 더불어 동독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던 군사기밀 서류 2만 6천건이 독일 연방군에 의해 인수되었는데 다수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사활동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자료중 '89 가을 동독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때 동독군인들에게 국민들을 향해 총기를 사용하라는 지시명령 서류는 발견되지 않았음.

12. 교육통합문제

가. 보통교육 (초.중.고)

o 학제의 변경문제

- 구동독지역에 단선형 학제 대신, 구서독의 다원적인 학제가 도입됨.
 - . 10년 공통과정에 2년의 예비과정 뿐이었으나, 초등과정 (국민학교, 1-(4)6학년), 중등과정 (종합학교, 김나지움, 실업학교 (5)7-10학년), 고등과정 (종합학교, 김나지움 11-13학년)으로 분화됨.
 - . 학제의 변경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94까지 과도기간동안 기존학제의 졸업증 및 자격증이 그대로 인정됨.
- 교육은 주정부 소관임으로 신설 5개주 (구동독지역)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방향은 구서독을 기준으로 정비되어 질 것임.

o 기존 교사의 해고 및 재교육 문제

- 각주별 공통적인 교사의 해고기준
 - . SED의 대중외곽 청소년 조직이었던 동독 자유청년연맹 (FDJ)의 간부, SED 각 지부 지도위원, 국가보위부 (Stasi) 및 동독인민군 (NVA) 및 국가기관의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예 : 유아, 초등교육의 수준차이가 큼. 학업이후 준비과정인 예비교육기관 2년이 구동독에는 없음.) 구서독의 모형을 따를 것임.
 - . 사회과목과 영어과목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시급함.
 - . '89 후반기 모드로 정권하에서 해당전공지식이 없이도 교직을 받은자.
 - . 국가보위부 (Stasi)에 비공식적으로 협력했던 자
 - . 다른 전공없이 국가 및 사회강좌 (Staatsbuengerkunde)를 강의한 교사
 - . 러시아어 교사
 - . 동독어린이 단체인 "Pionier Gruppe"의 지도교사

- 각주별로 상기 기준에 의한 교사선발은 '91.5까지 서면질의를 통해 마쳤으며 현재는 각 주정부와 고용계약을 맺고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공무원으로서 최종 채용여부는 제반자격조건 (헌법정신에 충실, 해당자격 소지)이 충족되어야 결정됨.
 - . 각주별로 결정된 Stasi 문서 보관소 (Ganck-Behoerde)에 잔류교사들이 과거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중임.
 - . 가장 빠르게 학교체계를 확립한 Brandenburg주는 34,500명의 교사중 6,500명을 해고했으며, 이중 1,000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됨.
 - . 구동독지역 교사들은 구서독지역에 비해 현재 60%의 봉급을 받고 있으나, 수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80% 정도의 실질임금을 받고 있음.
- 잔류교사의 재교육문제는 교사교육법(Lehrerbildungsgesetz)을 입안중임.
 - . 구동독의 교사의 자질은 구서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짐.

o 교과서 배급

- 통독이전에도 3천 3백만 마르크의 예산으로 구서독이 구동독에 교재 공급
 - . 예산상 독일어, 역사, 지리학, 영어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8-12학년 학생에 제한하여 교재를 공급했었음.
- 구서독에는 학교교재 출판사 (Volkundwissen Verlag)가 단 1개 밖에 없었으나 통독이후 이 출판사도 구서독 출판사에 병합되었음. 구동독 6,000개의 학교에서는 600종의 교재중 학교별 선호하는 교재를 고를 수 있게 됨.
 - . 신학기를 맞아 1,600만권의 교과서가 단시일내에 구동독지역에 보급되어야 하나, 현재 출판사 사정으로 인해 교과서 부족현상 극심
- Curriculum Reformskommission이 결성되어 현재 교과내용 논의중.

o 학교시설 확충

- 연방정부는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응책" (Aufschwung Ost)를 만들어 구동독 경제재건을 꾀하고 있는 바, 이중에 50억 DM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학교, 병원, 사회보호시설 (Soziale Pflegeeinrichtung) 신.개축 비용으로 주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음. 그안에 학교시설비로 지급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발주하고 있음.
- 각주별로 세금에 따라 할당되는 예산이 다르므로 주별 경제능력에 따름.
- 구동독지역의 학교는 대부분 규모가 작으므로 학교건물로 계속 쓰이는 경우엔 장기적인 증축계획 필요

나. 대학교육 (대학교 이상)

o 구동독대학 잔재 청산

- 통합조약 13조에 의거 신설 5개주와 베를린 주정부는 '91. 1. 1부터 6개월 내지 9개월간의 경과기간을 설정하여 구체제와 관련된 학과와 연구기관을 철폐키로 하고, 해당 연구종사자는 이 기간동안 기본봉급의 70%를 받으며 전직 또는 퇴직시키기로 결정함.
 - 동 조약 13조에 의하면 기존동독의 학술.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행정 기관에 대해서 주정부는 주정부 업무관할에 속하는 그 존속여부와 철폐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관련학과는 이념문제와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학과로 해당자는 약 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짐.
- 주요 철폐학과
 -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관련된 법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연구소

- 또한 SED 정권 붕괴이후 대학내부적으로 구체제와 관련한 잔재 정화작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 통독이후 동독지역 대학에도 서독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학자치권이 도입되고 대학교육기본법에 의해 주요정책결정위원회 (Beschlussgremien)의 교수들에게 자율권이 보장되었는 바, 과거 구체제와 관련있는 교수들이나 무능력한 학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과거의 연고를 활용, 등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였음.
- . 기껏해야 학과의 이름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사회이론"으로 "과학적 공산주의"를 "과학적 정치사회학"으로 바꾸는 정도에 그쳤음.
- 한편 이데올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학 학과외에도 특수한 연구기관과 같은 경우는 주정부의 현재 재정보조능력이 없어 철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구동독 대학교육 쇄신을 위한 연방정부 및 신설 5개주 전문가회의 결과

- '95까지 교육내용 및 시설 서독수준으로 개혁. 현대화
- 총 소요액 170억 DM은 연방정부에서 75%, 각 주정부 25% 부담.

13. 과거청산 문제

가. 구동독 정권하의 피해자에 대한 복권.보상문제

- o 통합조약 17조에 의하면 과거 동독 공산정권의 반법치국가적 행위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통독이후 입법권자가 적절한 법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 통합조약에 의하면 복권.보상 (Rehabilitierung)과 거거 형사처벌 무효화 판결(Kassation)의 2중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로 되어 있음.
 - 현재 10만으로 추정되는 과거 구체제 피해자인 동독주민들이 각각 법원에 복권 및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연방법무성은 '91. 7 관계법률안인 "구체제 불법행위청산법" (Unrechtbereinigungsgesetz)를 제출하였는데 국회 통과 예정임.

- o 법무성이 마련한 법안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은 보상액 문제인데 구금자들의 구금일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구금일당 보상액 결정문제와 관련, 정부의 재정형편이 문제가 되었었음.
 - . 현재 법무성안은 구금기간 1달을 기준으로 모든 피해자가 300 DM을 기본적으로 보상받되 서독으로 이주하지 않고 동독에 잔류했던 사람은 추가로 150 DM을 더 받아 450 DM을 지급하기로 했고, 또한 피해자중 노약자, 병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구속자 지원 기금" (Stiftung fuer ehemaliger Haefthlinge)에서 추가로 150 DM을 더 받아 600 DM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다만 이제까지 베를린 장벽 이전에 동독을 탈출하거나 이주해버린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피해자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상액을 구금한달 기준 450 DM이 아닌 300 DM을 책정해 놓고 있음.

현재 추진중인 법안에는 피해자 보상의 범위를 우선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단지 형사상 처벌을 받은자와 정신병원 등에 강제입원조치된 사람, 불법적인 행정행위로 국경근방에 살던 사람중 강제이주조치를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음.

- . 피해자들은 그러나 체제에 저항하다가 받은 많은 직업상 차별(강등, 해고, 직업교육 방해, 승진기회 박탈),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 . 이러한 피해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나,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금과 같은 정도의 피해라고 많은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음.
- . 따라서 구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생계보조형식의 지원을 규정한 구속자 지원법(Haeftlingshilfegesetz)을 보완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좀더 보상피해의 범위를 넓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나찌만행에 대해 피해보상을 규정한 연방피해보상법(Bundesentschaedigungsgesetz)에 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인 SPD와 피해자 대표들은 주장하고 있음.
- * 연방피해보상법에 의하면 "정치적, 종교적, 세계관적, 인종적인 차별로 육체와 건강, 자유,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직업적, 경제적 성장의 가능성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현재 직업상 차별 및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은 법무성내에 전담과를 설치하여 작업을 추진중인데,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재정형편을 고려, 그 기준을 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반면 이제까지의 구속자 지원법에는 과거 동독의 체제에 "폭력을 사용하여"(gewaltsam) 저항한 경우 (특히 '53. 6. 17 민중봉기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법무성 보상법안은 이를 전부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또한 소련점령통치하에서 점령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이번 피해자의 보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o 이러한 입법조치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게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보상의 혜택을 많이 못받을 것으로 피해자 대표들은 안타까와 하고 있음.
- 실제 피해자 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치적인 구금자들의 70% 정도가 나이가 이미 65세 이상으로 연로하며, 또 많은 구금에 따른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함.
- 반면 구동독지역 신설주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복권.보상 신청서류가 쌓여 있어 이를 심사 확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함.
 - . 예를 들어 Erfurt시 같은 경우는 3명의 판사가 3,000여건의 서류를 심사해야 하는데, 그 처리는 빨라야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함.
- 이번 법무성 법안은 이러한 복권.보상 및 형사상 재심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자들을 빨리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 o 많은 피해대표들은 또한 물질적 보상에 앞서 우선 자신이 죄가 없었고 단지 정치적 동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명예회복에 관한 선언이 연방하원과 같은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함.

나. 구체제 청산을 위한 가해자들 처벌 관련

- o 구체제하에서 반법치국가적으로 행해진 정치적 폭행사태에 대해서는 신설주들의 사법체계가 확립되고,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형사소추할 방침임.

- 기존 서베를린 검찰이 주축이 되어 동베를린 검찰을 흡수, 가장 빨리 사법 체계를 확립한 베를린 검찰은 "정권적 범죄행위" (Regierungskriminalitaet) 를 전담하는 임시조직을 편성하여 과거 체제수호를 위해 법치국가적 질서에 어긋나게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치국원, 국가안보위원회, 국경수비문제를 담당했던 국방성, Stasi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음.

- 호네커가 지난 3월 소련으로 탈출한 이후 베를린주 검찰은 4명의 구동독 당과 정부 고위급 인사를 베를린 장벽에서 국경탈출자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 바 있음.

. 이들 4명은 '74. 5. 3 당시 Honecker가 의장으로 있던 국가안보위원회 (8명으로 구성, 주요국가 안보사항을 다룸)의 일원으로서 동 회의에 참가하여 베를린 장벽을 사수하기 위해 국경탈출자에 대해서 사격명령 (Schiessbefehl)을 내리는 결정에 동의한 인물들임.

테러조직인 적군파 (RAF)에 대한 방조.지원 혐의로 전 Stasi 부장과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있음.

현재 5,000명으로 추정되는 과거 동독 스파이들의 처벌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입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입장임.

. 처벌을 주장하는 측은 형식적으로는 같은 스파이활동이었지만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이 과거 서독의 정체성 (Identitaet)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독의 스파이들은 서독정부의 비호하에 이러한 활동을 한 반면, 동독의 스파이들은 당시 서독에 대해 서독의 내적.외적인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위해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격적인" (offensiv) 동독스파이 활동과, "방어적인" (defensiv) 서독 스파이 (BND) 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처벌을 반대하는 측은 스파이활동은 쌍방국가간 활동으로 오래전 부터 통용되던 관행이었으며, '72 동.서독 기본조약이후 부터는 동독의 국가성이 광범위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되었음을 감안하면, 통독이란 특수한 상황이지만 과거 동독의 법을 적용, 이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기본법 3조의 평등권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o 현재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문제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현행 법률 구조하에서는 과거 청산문제가 총체적인 정치재판을 통한 역사적인 매듭은 불가능하고, 각 개별적인 과거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음.

- 과거 동독의 체제가 다른 가치 및 법률체계에 근거하고 있었고 서독의 법치국가적 질서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불법(Un-Rechts)을 규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 또한 형법은 현 법적질서에 대한 반사회적인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해 저질러진 집단적인 범죄의 경우 개별화 (individualisieren)하여야만 범죄구성 요건 (Strafbestand)이 성립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14. 언론체제의 재편

가. 방송체제

o 구동독 방송 해체와 신규방송사 설립

- 통일독일정부는 구동독에서 당과 국가의 시녀노릇을 하던 방송의 해체 작업을 위해서 동독방송해체 전권위원(Muenfenzl)을 임명하였으며, 동인 주도하에 현재 동독국영TV사에 근무하던 7,500명의 인원중 3,100명을 해직시켰는데, 금년말 해체작업이 끝날때에는 4,000명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함.
- 구동독방송의 해체작업과 함께 신규방송사 설립을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바, 신규 5개주의 방송사 설립현황은 아래와 같음.
- 신규 5개주의 남부지역의 방송사 설립현황
 - . 독일 신규주(구동독)의 남쪽에 위치한 삭센(Sachsen), 삭센-안할트, (Sachsen-Anhalt), 튀링겐(Thueringen) 등 3개주는 "중부 독일방송 (Mitteldeutscher Rundfunk : MDR)"을 설립하였으며, 임시사장에 Udo Reiter를 임명하였음.
 - . 중부독일방송(MDR)의 사장직은 드레스덴(Dresden), 에르푸르트(Erfurt), 마그데부르크(Magdeburg)에 소재하게 될 주 방송국의 장이 교대로 하게 될 것이며, 본사의 소재지는 라이프찌히(Leipzig)가 될 것이라 함.
 - . 중부 독일방송은 91. 8월 ARD의 가맹사가 되기 위한 신청을 이미 마쳤음.
- 신규 5개주 북쪽지역의 방송사 설립현황

- . 북부지역에 속한 동베를린 (Ost-Berlin)과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메클렌부르크-포포머른 (Mecklenburg-Vorpommern) 등 2개주 관할의 공영방송의 장래는 남부지역에 비해 확실치 않음.
- . "북동독일방송 (Nordostdeutscher Rundfunk)"란 명칭으로 위 2개주가 하나의 방송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메클렌부르크-포포머른 주정부와 주의회의 대립으로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음.

o 통일독일후의 방송체제 개편을 위한 제반조치

- 1991년 7월말 16개주의 수상들은 기존 구서독 11개주들이 체결한 "방송구조 재편에 관한 협정 (1987.4월)"을 통일후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처하려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동 회의는 ZDF의 방송협의회와 운영위원회에서의 정당간 구성비 문제와 각 방송공사의 유럽 미디어와의 협력관계에 있어 일부 주간에 이견을 보임으로써 성과없이 끝났으며, 91. 8.31일 재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특히 분단상황하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서독의 국익홍보를 해왔던 라디오방송, 즉 Deutsche Welle, Deutschlandfunk, Rias 방송 등 세가지 방송의 개편도 논의되고 있음.
 - . 이 세방송을 위해 독일연방정부는 연간 약 6억 마르크 (약 2,400억원) 지원해왔음.
 - . Deutsche Welle (독일 해외라디오방송)는 해외홍보방송이라는 성격상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음.
 - . Deutsche Welle는 이를 계기로 Deutschlandfunk (동독인 대상 라디오 방송)의 외국어 프로그램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으며, Deutschlandfunk는 이에 대해 전독일지역을 카바하는 독립된 하나의 방송사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음.

- Deutschlandfunk와 Rias 방송개편과 관련 정당간의 이견도 만만치 않는데, 기민당과 신규 5개주의 주수상들은 라디오방송이 없는 독일 제2TV 방송공사 (ZDF)가 두 방송을 인수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사민당은 이 두방송을 독일전역을 카바하는 두개의 방송 (문화, 정보)으로 개편, 각각 ARD와 ZDF의 산하에 놓이게 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음.

나. 구동독 신문.잡지 개편

- 구서독의 전국에서 판매되는 유력일간지들이 독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함.
 - 동독주민 생활수준에 비해 신문의 값이 너무 비싸고, 신문량이 많아 새로운 독서습관에 동독인들이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임.
 - 흥미위주의 짤막한 기사와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가판신문들의 인기가 늘고 있음. (빌트지, 슈퍼짜이퉁 등)
- 구서독의 대형 신문.잡지사들이 구동독의 신문사를 대부분 구입하고 있음.
 - 신탁청은 1명의 서방신청자에게 한개의 지방신문을 매각하기로 함.
 - 정치적 색채가 강한 구동독 정당신문은 존재하고 있으나 독자는 격감되었음.
- 잡지의 경우는 청소년층을 겨냥하는 잡지, 서독의 여성지, TV 등 방송 프로그램 잡지가 인기가 있음.

15. 구동독의 대외관계 처리

가.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처리

- o 과거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협정은 다자간이 600건, 양자간 2,400건으로 총 3,000여건에 이룸
 - 과거 동독정부는 서독과의 외교경쟁에서 독자적인 국가적 승인을 최대의 외교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외국과 될수 있으면 많은 조약. 협정을 체결하려 하였음.
 - 정치. 군사, 경제. 무역, 환경, 문화. 과학, 보건, 영사, 노동. 사회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 분야 등에 이르는 협정중 서방제국과는 다자간 협정을 주로 맺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이전 동구권 및 제3세계 국가와의 양자간 협정 처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음.
- o 동독이 통독전에 맺은 국제법상 조약 및 합의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는 통합조약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양자간 조약. 협정의 경우는 통일정부가 조약체결 당사자들과 협의 (Konsultation)를 거쳐 계속 유효(Fortgeltung). 조정(Anpassung) 또는 효력상실(Erloeschen) 여부를 결정함.
 - 이 작업은 5가지 기준에 의해 진행됨.
 - . 신뢰보호
 - . 관련당사국들의 이해
 - . 서독측의 계약상 의무
 - . 자유. 민주.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따라
 - . EC의 관할권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 서독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동독만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에 통일독일이 가입하려고 할때 모든 당사국 또는 EC와 협의를 함.

- 그러나 통합조약 내용은 단지 외국의 조약체결 당사자들과 앞으로 협상을 거쳐 처리할때 기준만은 언급하고 있을 뿐, '90.10. 3 통독시점까지 동독이 맺은 조약과 협정으로 확정된 기존권리는 과거 서독이 맺은 조약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 더 우선권을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 여기에는 통합조약 8조와 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의 동화 (Rechtsangleichung)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봄.
 - . 즉 기본적으로 서독이 맺은 조약과 협상이 우선하여 동독지역에까지 확장 적용됨.
 - . 다만 동독이 맺은 조약, 협상 내용의 계속 유효성 여부는 통합조약 제9조의 계속 적용되는 동독의 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서독의 법령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만 유효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통일된 독일과 새로운 조정된 형태의 협정을 체결해야 함.
- 현재 연방외무성은 상기 원칙에 의거 각국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각 주무부처와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확정할 계획임.
 - 국경문제와 관련된 구동독의 조약들은 통독후 새로운 독.소간 독.폴간 우호.협력 조약을 통해 그 내용이 계속 유효함.
 - 대외경제관계와 관련된 조약, 협정 등은 '90.10. 3을 기준으로 수지결산 잔액 (Saldo)을 확정하여 새로운 의무이행과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여 새로운 조약, 협정을 체결할 예정임.
 - UN 및 그산하기구, CSCE등 등. 서독이 동시에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정의 경우는 통일독일이 단독대표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하였음.
 - 동독은 가입되어 있었으나 서독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통일독일이 더이상 가입할 의사가 없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의 경우는 관련 당사국 또는 EC와 협의할 의무가 없으며, 통독과 더불어 구동독의 회원자격은 자동 효력상실된 것으로 봄.

- 양자간 조약. 협정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와는 이미 협의 (Konsultation)을 끝냈으며, 소련과 협의를 진행중이나 소련사태로 진전이 안되고 있음.

나. 동독의 대외채무 및 채권처리

- o '90. 7. 1 (화폐. 경제. 사회통합 발효시)까지 서독 및 제3국에 대해 동독이 지니고 있던 채권과 채무는 동독시까지 계속 유효한 경우 연방재무장관의 지시와 감독하에 청산됨.
 - 우선 화폐통합에 따라 기존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DM으로 환산하여야 하는 바, 환산비율은 2:1임.
 - 통독이후 체결될 각 당사자국과의 채무 및 채권이전 협정체결시에는 상기 5절에서 언급한 통합조약 12조의 기본원칙이 적용됨.
 - DM 환산비율이 2:1로 책정되어 채권과 채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재무성은 기금을 조성하여 그 차액을 보상해 줄 방침임.
 - 해당 채권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한 재무성의 지시로 신탁청에 의해 신탁관리되거나 연방재산으로 이양됨.
- o 동독이 회원국으로 있던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기구 특히 과거 COMECON에 대해서 지고 있던 채권과 채무는 통독이후 특별관리대상이 됨.
 - 구 COMECON 국가들과의 대외경제관계는 참가국들의 시장경제적 질서로 개혁과정과 해당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고려 EC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감.

16. 체육통합 문제

- o '90. 12. 15 신설 5개주의 주립체육협회가 독일체육연맹(DSB)에 가입함으로써 45년 이래 분단되었던 독일체육계는 드디어 통일이 되었음.
 - 최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체육분야 최고기관인 독일체육연맹은 구동독의 신입 회원 200만과 더불어 회원수가 2,350만명이 되었으며, 총재에 Haus Hansen이 재선됨.
 - 내무성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제7차 연방체육 보고서에 의하면 91년도 체육예산을 2억 4,800만 DM으로 책정되었는 바, 그중 1억 3,500만 DM이 신설 5개주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함.
 - 동.서독 스포츠의 기구적 통합은 일단 거의 완료되었으니 도핑을 무릅쓰고서라도 스포츠를 이데올로기의 교련장으로 보던 SED의 독재정권의 잔재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 공동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임.
 - 유지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구동독 스포츠의 "업적"으로 지칭되는 초정상급 선수의 능력잠재력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필요로 하며, 35,000개의 구동독 체육시설의 확장과 개축에 필요한 돈은 8억 DM인 것으로 나타남.
- o 정상급 스포츠는 연방정부의 국가지원으로 안정되어가고 있음.
 - 스포츠의학, 트레이닝 진단법, 교육학적, 심리학적 상담 등을 포함한 완벽한 서비스를 갖춘 15개의 올림픽 지원 기지에 구동독의 6대 스포츠 클럽이 합류하여 정상급 스포츠인 육성의 중심지가 됨.

- 통합에는 인력감축이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나 동. 서베를린의 스포츠 통합으로 Berlin이 독일의 최대 올림픽 지원 기지화 하였으며, 포츠담 소재 구동독군 스포츠클럽은 독일연방군 체육학교의 분교가 됨.
 - 구동독의 스포츠 엘리트를 육성하던 24개의 구동독 청소년 스포츠학교는 통독 후에도 계속 유지 존속되고 체육장리 김나지움이나 실습학교의 귀감이 되도록함.
 - 구동독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던 6,200명의 정상급 운동선수들중 1,500명만이 독일체육 보조기금으로부터 2,000만 DM 받으며 선수생활을 계속하고 있음.
- o 구동독에서 주업으로 종사하던 5,000명의 트레이너의 진로문제가 심각함.
- 그중 260명은 계속해서 주업 트레이너로 근무할 수 있으며, 300명은 명예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음.
 - 이들의 인수 및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나, 구서독 트레이너의 능력과 비교할때 구서독 트레이너의 직장의 위협이 되고 있음.
 - 구동독 체육협회(DTSB)의 유명 트레이너들은 한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함.
- o 구동독의 체육지도자들은 동독체육의 국제적 명성에 다대한 기여를 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도구화 되어 사회주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을 관장한 과거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대두됨.
- 동. 서독 NOC만이 유일한 통일(Vereinigung)을 달성했던 반면 기타 체육단체는 구동독단체가 구서독단체에 가입(Beitritt)한 형식을 취했는데 구동독 NOC의 총재였던 J. Weiskopf (라이프치히시 치과의사)는 통일독일 NOC의 부총재가 됨.

- 구동독의 막강한 체육협회(DTSB)의 청산인으로서 de Maiziere 수상시 정무차관이었던 Horst Joke는 구동독 NOC의 Ewald 총재시 대변인이었으며 구동독 FDJ의 "청소년 세계"라는 단체의 책임자였던 Volker Klige와 함께 전독 NOC의 회원이 됨.
- o 구동독지역에서 체육은 국가체육 중심으로는 더 이상 아무런 특수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제, 문화분야에서 처럼 체육도 집단스포츠만이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사고를 위한 각종 동호단체 성격을 갖도록 대중체육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각종 체육단체의 민주적 체육구조 구축은 구서독에 의한 출발금융지원, 노우하우 이전 및 주단위, 시·군단위, 협회단위로 연대적 파트너쉽으로 실제적으로 지원될 예정임.
 - 구동독지역에는 현재 동호인 스포츠클럽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200만 정도 되는데, 클럽의 50% 정도만이 구서독지역 수준에 상응함.
 - 기초적 스포츠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입한 협회가 자생력이 있어야 하나 인사 및 물질적, 재정적으로 공고한 기반은 아직도 조성되지 않아 생존문제가 매우 심각함.
 - 지금까지 Lotto-Totto (복권) 법규가 없으므로 구서독식 모델에 따른 주립 체육협회의 수입이 조성될 수 없으며, 서독지역의 Lotto 수입에 의한 지원의 가능성 조차 현재 많은 기관들이 신탁청의 관리하에 있어 연대의식적 재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o 소홀하게 방치된 체육시설의 정비역시 전반적으로 재정부담에 시달리는 지자체에게 과중한 부담거리임.
- 구동독정권의 체육도시라는 간판이 붙었던 Leipzig의 경우 중앙구장의 현대화에만 6억 DM이 필요하나 91년도 보수유지비에 겨우 4,000만 DM이 책정되어 있음.

본 보고서는 통독 1주년을 맞아 통독과정을

중간 결산하며 독일연방정부대변인 Dieter

Vogel이 발표한 "3. Oktober 1991 : Ein Jahr

Deutsche Einheit"를 전문번역한 것임.

목 차

서 문 : 독일연방정부대변인 Dieter Vogel

1. 중간결산

- 1.1 경기부양 직전의 구동독지역
- 1.2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재정정책
- 1.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1.4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장
- 1.5 여성촉진, 가정촉진
- 1.6 지불가능토록 주택사정 개선
- 1.7 투자를 위한 우선적 규정
- 1.8 연금평준화への 길
- 1.9 보건분야의 평준화
- 1.10 환경정비와 생태학적 구축
- 1.11 독일연방군 - 구동독 인민군의 해체와 소련군 철수 -
- 1.12 문화, 연구, 체육

2. 과거조명

- 2.1 평화혁명 - 헝가리 국경개방으로부터 국가조약에 이르기까지 -
- 2.2 통일의 길 - 통화통합과 외교정책적 정착

3. 요약

서 분

- 구동독지역인 신설연방주와 베를린시의 동부지역의 재건은 여하한 전례도 없던 개척자적 과제입니다. 경제문제,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와 같은 것은 그 다양성과 정도로 볼때 쉬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며, '89년 11월 장벽이 개방된 이래 "독일통일"이라는 단어와 연계되어 이북되고 있는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볼때 독일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 40년간에 걸친 현실사회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사회복지적 시장경제에의 구조전환은 매일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과정이 아무런 마찰없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꾸준하고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벽을 극복한 후, '90. 3. 18 인민의회선거를 통해 절대다수의 지지와 함께 공산정권을 굴복시킨 구동독 사람들은 국가적 통일로 사회주의적 잔재라는 문제점이 하루밤새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 어느누구도 신설연방주의 적응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문제점은 있기 마련이며,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야지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케 하고 단념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89년에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볼때 경제상태는 더욱 복잡다단했고 환경파괴는 더욱 심각했으며 Stasi 통치는 더욱 깊숙히 침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설연방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들의 사회복지적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은 더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 '90. 10. 3 독일이 재통일된 이래 국가적 통일을 기초로 하여 이제부터 내적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즉, 그것은 독일인 모두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법적, 문화적 생활수준 평준화의 달성입니다. 이와 같은 과업의 달성은 우리 독일국경을 훨씬 초월하는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물론 알바니아, 유고슬로바키아, 소련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신설연방주의 독일인들보다는 훨씬 어려운 출발조건하에 놓여있습니다.

- o 동독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할 수 있게 해준 헝가리의 국경개방일이 최근 그 2주년을 맞았으며 이날은 이미 현대사의 중대한 한날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년간 독일통일을 비롯한 독일통일을 중심으로한 유럽 국제정치적 환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특히 독일연방정부가 독일통일을 전후하여 어떠한 이니셔티브와 대책을 취하면서 독일인의 공동성장이라는 과정을 촉진하였는지를 기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o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이와같이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노력은 그 대종이 예산 재원으로 재정조달되고 있기 때문에 담세자들이 지불한 금액으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볼 권한이 있음은 자명한 노릇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헝가리의 국경개방으로부터 1년전에 독일이 재통일 되기까지의 진전상황을 대강 요약해 제한적으로 표현해 보았으며, 주안점은 지난 12개월간의 각종시책과 실시현황, 그에 따른 결과, 파급효과로 이룩된 변화와 같은 것입니다.

독일연방정부 대변인

디터 포겔

1. 중간결산

1.1 경기부양 직전의 구동독지역

- 신설 5개주는 경제적 침체국면의 최하한선에 도달되어 이제부터 점차적으로 경기가 부양되고 있다는 여러가지 증좌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연방은행의 9월 보고에 따르면 "경기하락이 종착역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내리지고 있다. 그리고 킬의 세계경제연구소는 "구동독지역 전체경제적 생산이 초여름부터 안정된 이래 경기상승 움직임의 징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부양 움직임은 철도와 체신과 같은 공공분야의 투자를 비롯하여 기업의 사유화 및 기업신설을 통하여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 다음과 같은 부분에 걸쳐 긍정적인 진전이 이룩되고 있다.
 - 공업부문의 생산저하는 일단 정지되었다. 5/6월중 공업생산은 3/4월 수준보다 2% 증가하였다. 뮌헨의 Ifo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긍정적 추세는 5/6월 이래 계속 되고 있다고 한다. 미래를 위한 기업체의 생산량 증가에 대한 투자기대 역시 상향조종되고 있다.
 - 건설부문의 경기부양이 시작되었다. 1/4분기와 비교한 2/4분기의 건설발주는 56%나 증가되었다. 6월에 들어 처음으로 주택건설발주가 괄목할 정도로 증가되었다. 독일건설업중앙협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월과 8월중 건설업계의 발주가 계속 신장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힘찬 역동력은 구동독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인 지자체 투자프로그램으로부터 발진되었다.
 - 경제계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지고 있다. 6월중 Ifo의 경기테스트에 따르면 향후 6개월간 가공업분야의 사업예상 기대는 재삼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업예상 기대의 긍정적 추세는 지금부터 6개월간 계속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양호한 수출전망에 그 근거가 있다.

- 기업의 사유화 속도는 대단하다. 현재 신탁청은 매일 평균 20개의 기업체를 사유화하고 있다. 8월말 현재 3,378개의 제조업체가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이전되었는데 이들은 닥아올 수년간에 걸쳐 700억 DM을 투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것은 578,387명의 일자리가 연계적으로 확보되었음을 뜻한다. 외국의 관심 역시 증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156개의 기업체가 113개 외국투자자에게 매각되었다.
- 중소기업이 역동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90년초부터 등록된 47만건의 영입허가신고 뿐만 아니라 광범하게 제공된 투자촉진책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91.8월말까지 지역 투자촉진의 일환으로서 약 585억 DM에 해당하는 투자신청이 있었으며 지자체 용자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130억 DM에 상당하는 용자가 신청되었고 유럽부흥 계획(ERP)의 용자인정과 함께 290억 DM이라는 투자가 실현되었던 것을 실례로 들 수 있다.
- 수공업 생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dp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백화점에서는 구매활동이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구동독 지역 고객들은 처음에 서먹서먹하던 자세를 버렸으며 구서독지역에서도 동독 지역 상품이 잘받아 들여지고 있다. 독일소매업중앙회의 견해에 따르면 동독 지역 상품의 질과 가격은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 노동시장은 성공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그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 노동 시장정책적 대책의 대대적인 실현 - 특히 직장조성대책 (262,000)과 직업계속 교육(금년초이래 500,000명 참가) - 으로 '91년 이래 노동시장은 평균 100만명이나 부담이 줄어들었다. 약 400,000명을 위한 재원이 '91년도 직장조성대책으로 준비되어 있다.
- 충분한 수의 직업훈련교육장의 전망이 밝다. 직업훈련교육장에 관한 구인구직 시장의 최근 자료를 비추어 볼때 모든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교육장이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투자가 강력하게 증대되고 있다. 뮌헨의 Ifo연구소가 실시한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년중 구서독지역 기업체들은 신설연방주에 200억 DM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중에는 240억 DM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설업을 비롯하여 상업분야에 있어서도 '90년말이래 각종 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공공투자가 구동독지역의 경기부양을 촉진한다. 정부는 도로건설로부터 통신시설의 개선 등 환경보호에 이르는 각종 투자목적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고 있다. 실례를 들자면 독일연방체신성의 텔레콤은 '97년도까지 신설 연방주의 통신망 확충을 위해 총 550억 DM을 투자할 것이다. 신형 디지털 시스템의 가동과 더불어 동. 서독지역간 전화회선은 '91. 7. 6현재 26,000회선이 증가되었는 바 '90.10. 3에는 단지 1,640회선밖에 없었다. 이에 추가하여 '91년도에 50만회선 이상이 새로 연결될 것이다. '97년도까지 총 900만회선이 연결될 것인 바, 이는 구동독의 지난 40년간에 이룩했던 능력(190만회선)의 거의 5배가 되는 능력이다.

- 신설 연방주의 실질임금은 33%로부터 45%로 증가되었다. (Ifo연구소의 '89-'91 가을에 걸친 개인가계 예산의 선별조사 결과) 근로자의 가계예산 역시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증가하고 있는 소비수준을 '91년도에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연금수령자의 가정예산상의 구매력은 연금과 주택보조금의 강력한 인상을 통해 임대료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91년도에도 어느정도 안정을 취하게 될 것이다.

1.2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재정정책

- o '92년도 연방예산안과 '91-'95년도 재정계획은 거대한 국내적 도전과 국제적 도전에 직면한 독일연방정부가 책임감있는 재정정책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 o 연방정부는 신설연방주의 경제구조 개편을 촉진하고 통독과정을 사회복지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막대한 초과지출을 해야 한다. '92년도 연방예산의 지출액 4,225억 6,000만 DM중 1/4는 독일통일을 위해 지출될 것이다. 통독과 관련된 지출은 차기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o 통독과정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수단으로서는 "독일통일기금"에 의한 '90-'94년간에 걸친 1,150억 DM과 '91-'92년간에 걸친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책"에 의한 총 240억 DM의 사용이다.
- o 구동독지역 경기부양대책은 중간결산을 통해 성공했음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정부가 '91년도에 지출계획한 120억 DM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할당된다.
 - 지자체 투자총괄이전금 50억 DM. 이와 같은 재원은 신설 연방주가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가 그 세부사항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게 된다. 이미 확정 발주액만 50%에 달한다.
 - 연방정부의 기타분야에 대한 지출액은 660억 DM. 이와 같은 액수는 거의 완벽하게 세부적으로 입안되었다. 이미 총액의 2/3는 수주인가 또는 발주되었다.
 - 세계조치 (투자보조금) 통한 약 4억 DM
- o 이로써 연방정부가 구동독지역 경기부양 대책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 구동독지역의 신속한 고용증진을 위한 교두보는 확보된 셈이다.
- o 독일통일을 위한 지출이외에 재정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여러가지 중점사업이 설정되어 있는 바, 이는 독일주민 전체와 관련된 것이다. 그중 특히 가정부담 경감과 교통분야의 투자 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투자와 직장조성을 위한 세제상의 총체적 조건이 개선되고 이로써 유럽단일시장에의 길이 순조롭게 열릴 것이다.
- o 닥아올 수년간에 걸친 재정정책적 시련은 오로지 지금까지 엄격하게 지켜져온 안정노선이 책임감있게 지속될 때에만 극복될 수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엄격한 지출규정 준수, '95년까지 연간 신용차입금의 반감, 세출증가율의 중기적 제한조치로서 상한선을 2.5%로 설정하는 등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o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안정추구 노선은 주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모두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한다면 사회총생산에 대한 공공예산의 적자비율을 5.5% ('91년도)에서 2.5% ('95년도)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o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국내 및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와 인정이 조성되며, 연방정부는 미래의 과제에 대해 훌륭하게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o 신설연방주의 노동시장은 처음으로 점차적인 호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구동독지역의 8월중 실업자수는 처음으로 100만 63,000명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실업율은 종전과 다름없는 12.1%이며 실업자의 거의 60%는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중의 통계수치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중대한 조치가 양호하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 신설연방주의 경제재건에 대한 막대한 국가적 촉진
 - 연방정부의 책임감있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적용
- o 직장조성, 재교육, 전직교육과 같은 다양한 기회제공은 기존직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전망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다. 즉, 금년초부터 500,000명 이상이나 되는 근로자들이 직업계속 교육대책에 참여했다. 고용창출대책에 있어서 '91년도 목표치인 총 280,000직장은 8월말 현재 이미 262,000명의 고용과 함께 거의 달성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전월과 비교할때 거의 50,000이나 초과하는 것이다.

- o 고용창출 기구들은 직업자질 향상대책과 직장조성대책의 수형자로서 특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집중적 직장폐쇄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과도적 조치로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조기퇴직에 따른 준연금(Altersuebergangsgeld)에 대한 관대한 규정을 통하여 최근 추정에 따르면 금년중에만 194,000명이라는 실업부담절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모든 노동시장 정책적 대책은 '91년도에 연평균 180만명에 달하는 노동시장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 o 8월중 신설연방주의 단축근로해당자는 145만 2,000명이었는데, 7월보다 약 170,000명이 감소되었다. 6개월간을 감안해볼때 구동독지역의 단축근로자수는 약 50만명이나 감소되었다. 따라서 8월중 실업자수에 호전의 추세가 일어나고 있음과 비교해볼때 매우 괄목할만한 사실이기도 하다.
- o 이에 무관하게 이번 겨울에 잠정적이거나 다시한번 실업자의 증가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바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도 해당자들이 광범위한 자질향상 대책을 책임감있게 이용하여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직장에 취업하도록 준비할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수공업중앙회는 이미 오늘날 건설직, 위생직, 난방공, 차량분야 등에서 급성적으로 전문노동력이 결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4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장

- o 신설연방주의 '91년도 직업학교 졸업생 전원 (약 140,000명)에게 직업훈련교육장이 제공될 것이다. 이로써 구동독지역 경기부양 공동대책과 구동독지역 직업훈련교육 촉진프로그램이 약속한 구동독지역 모든 청소년의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보장은 지켜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직업훈련교육장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대책의 결과이다.
 - 연방정부에 의한 2억 5,000 DM의 직업훈련교육 촉진프로그램 및 신설연방주의 보완적 촉진프로그램

- 신설연방주내 연방행정분야의 10,000명에 달하는 직업훈련교육장 제공
 - 10월부터 훈련장이 확보되지 못한 지방자들에게는 기업외적 직업훈련교육장에 투입된다는 연방고용청 (뉴른베르크 소재)의 약속
 - 기존 직업훈련교육시설의 계속 유지와 재정조달 및 기존능력의 범위내에서 직업훈련교육생을 신규채용하겠다는 신탁청의 협력 등
- o 이와 같은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는 경제계, 연방정부, 주정부, 연방고용청, 신탁청과 같은 모든 참여기관이 대대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 요구된다.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 문제점으로서는 신설연방주 직업훈련교육의 자질문제와 직업교육제도인데, 이는 현재 직업훈련교육의 구조 (구동독에서는 인문고등학교 과정으로의 과정이전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음)와 특히 신설연방주에 대한 일반 의무교육 규정의 변경을 통해 '92년에 발생하게 될 직업훈련교육의 양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직장내 직업훈련교육의 질적 결함을 신속하게 매꾸기 위해서는 초기업적 직업훈련 교육시설의 망이 우선적일 구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o 이와 같은 모든 대책은 구서독지역의 직업훈련 교육장의 과잉공급상태와 조만간에 닥쳐올 연방전역에 걸친 유능전문 노동자의 결핍이라는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신설연방주의 직업교육훈련과 자질향상에 기여하게될 모든 대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1.5 여성지원, 가정지원

- o 직장과 가정과 기타분야에 걸친 여성지원은 연방정부의 현회기중 중점적인 과제이다. 여성의 완전한 사회적 동등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는 통합조약에도 규정되어 있다. 통합조약 제31조에서는 동.서독 지역간의 법적, 제도적 출발기점이 부분적으로 전연 상이함을 지적하면서 "남성과 여성간의 동등권이

확보되도록 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조화되도록 하는 관점에서 입법이 추진 되도록" 입법권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 o '91. 1.30 헬무트 콜수상은 그 시정연설에서 여성정책과 가정정책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명확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개진했다. 콜수상은 그 중점사항으로서 유치원 확충, 유치원 자리 확보권한에 관한 법적인 장치화, 현회기중 남녀 평등법의 제출과 같은 것을 열거했다. 연방정부의 방대한 보완적 조치로서는 기업과 공공행정에 있어서의 여성지원, 시간제 고용 촉진, 이미 현재 결정된 고용 연장이 보장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양육휴가의 연장, 자녀보육시설의 확충 및 간호를 필요로 할 경우의 이의 보장과 같은 것이 있다.

- o 신설연방주의 가정과 여성축진은 사회복지적으로 구서독지역과 동일하게 평준화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인 바, 이는 모든 세제상의 특혜, 자녀수당, 출산전후에 걸친 보호기간과 더불어 이 기간에 대한 소득산정에 적용되며 이는 또한 '91.7.1 이후부터 질병중인 자녀의 간호에 대한 면제조치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은 모든 가정정책적 급부능력은 특히 양육휴가와 양육보조금과 함께 독신부모에게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신설연방주에 독신부모가 매우 많다. (혼외 출생율 약 30%)는 사실에 입각해 볼때 매우 의의가 큰 것이라 하겠다. 연방정부는 구동독 지역 자녀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91.6말까지 10억 DM을 마련해 놓았다.

- o 동. 서독지역 노동시장은 각각 독특한 여성문제와 직면되어 있다. 구서독지역의 여성취업율 약 50%는 국제적으로 볼때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반해 구동독지역 여성취업율 90%는 전세계적으로 볼때 최고의 수준이다. 이와 같은 지난 수십년간 동. 서독간의 상이한 발전상태는 구동독지역 여성들이 구서독지역 여성보다 전일근무 직장의 취업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일어난 특징이다. 현재 신설연방주의 실업자중 약 55%-60%가 여성이다.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신설연방주에 대한 고용촉진 대책과 자질향상대책은 여성실업대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6 지불가능토록 주택사정 개선

- o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주택정책과 임대정책은 구동독지역의 건물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건축분야에 있어서 결합투성이의 싸구려 생산을 조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거의 희망이 없는 주택상태를 야기하고 말았다. 임대료 수입전액의 약 4배에 달했던 국가보조금은 주택비 (구동독지역의 난방비 제외 1평당비터당 임대료는 월평균 0.90 DM이며 구서독지역의 난방비 제외 1평방미터당 임대료는 월평균 7.50 DM - 8 DM이었음)를 극도로 저렴하게 유지할 수도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파국상태나 다름없는 잔재를 주택시장에 남겨놓고 말았다. 따라서 북부동독의 슬트릴순트로부터 남부동독의 플라우엔에 이르는 전구동독지역에는 엄청난 주택 정비, 주택현대화, 주택수리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 o 연방정부의 주택정책은 직접적인 지원책의 제공과 주택임대차법률의 개정을 통해 신설연방주의 현대화 과정을 전력을 다하여 지원함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임대료가 운영유지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한 소유주를 통한 임대주택의 적절한 수준의 수리는 불가능 하다.
- o 따라서 '91.10. 3을 기해 기본임대료는 주거지를 고려하여 1평방미터당 월평균 1DM씩 인상되었으며 난방비용과 온수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을 포함한 유지비는 1평방미터당 월평균 3 DM씩 인상되었다. 구서독지역 수준과 비교할때 약 50% 정도에 달하는 평균 임대료 수준은 신설연방주의 주택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 하기 위하여서 불가피한 전제조건적인 단계가 아닐 수 없다.
- o 이와 동시에 사회복지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대차 규정과 함께 특수한 일괄 주택보조금제도가 발효한다. 이에 덧붙여 주택보조금 지급절차가 간소화 되고 구동독지역 임대주택 거주자와 주택임대자를 위한 주택보조금부 제도가 개선 된다. 구서독지역과는 달리 일정과도기간 동안 주택보조금 책정시 난방비와 온수비가 일괄적으로 고려된다.

- 연방정부는 이율이 저렴한 용자와 보조금과 같은 막대한 재원과 함께 임대주택과 자체사용 주택의 현대화와 수리보수를 위한 재원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택현대화를 위한 총 100억 DM에 달하는 광범한 용자프로그램중 60억 DM 이상이 이미신청되었으며 이미 지불된 액수와 함께 100,000동의 주택에 대한 현대화와 개축이 착수되었다. 또한 연방정부는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고액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가능한한 대다수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주택소유자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인 바, 내집일때에야 비로소 내집을 수리하고 현대화하는 특별한 매력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구입시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가격의 2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은 최고 7,000 DM, 나머지 가족당 1,000 DM씩 보조금을 받게 된다. 즉, 4인 가족일 경우 주택구입시 최고 10,000 DM 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불때 신설연방주에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될 사람들이 더 많아 질 수 있을 것인 바, 통화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이 발효된 '90. 7. 1이래 '91. 6. 30 까지 구동독지역에서는 총액 300억 DM에 상당하는 90만건 건축청약 적금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1.7 투자를 위한 우선적 규정

- 연방정부는 미해결 재산권 문제해결에 각별한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미해결 재산권 문제는 투자계획을 위한 적정한 총체적 조건의 조성과 그 촉진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미 동.서독 정부가 통합조약에 관하여 회담을 개최할 당시에 원소유자의 반환청구권이 투자촉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에 합의한 바 있다.
- 그래서 통합조약의 작성과정중 특별투자에 관한 법률이 입안되었는 바, 그 내용중에 부동산 분야를 위한 제1차적인 "투자우선규정"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미해결 재산권 문제의 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100만건이 넘는 이전재산권 반환신청권이 등록되었는 바, 그중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 긴급을 요하는 즉각적인 투자란 직장의 확보와 조성,

그리고 주택난 극복에 결정적인 부동산 거래, 즉 기능이 훌륭한 부동산 시장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1차적 "우선규정"이 충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입증되었다.

따라서 투자우선의 추가적인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다. 물론 특정의 경우에도 이전 소유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투자가 촉진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 경우도 현싯가에 기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또한 이전 소유자 자신이 투자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되고 있다. 즉, 제3의 투자자와 이전 소유자가 경합할 경우 이전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에서 투자가 촉진되도록 고려하고 있다.

.8 연금평준화에의 길

동, 서독 지역간에 동등한 생활수준이 달성되기 위하여서는 연금평준화가 중대한 의의를 차지한다. 구동독지역 사람들에게도 연금이 적극적인 직장생활에 대한 임금(보상)으로서 노후에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연방주에서 임금수준의 인상에 알맞게 지불되고 있는 연금의 연동화는 사회통합의 중대요소중의 하나이다. '90. 7. 1을 기해 발효된 연금의 변환과 최초의 평준화 조치로 연금은 평균 30% 정도 인상되었다. 이에 긴급한 생계수요가 신속하고 간소한 행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과도기적으로 사회복지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91. 1. 1자에 15%에 달하는 연금인상과 또한 '91. 7. 1자의 15% 재인상 - 두번의 인상은 모두 사회복지보조금에 가산되지 않음 - 을 통해 표준연금은 현재 구서독지역 비교대상 연금의 거의 50% 이상에 도달하게 되었다. '92. 1. 1을 기해 전독일에 걸쳐 법정연금 보험에서는 법적 동등성이 확보될 것이며 퇴직연령한계, 유가족연금, 산재연금 제도 역시 이에 준해 계속 개선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연금과도기법의 일환으로 구Stasi 요원을 비롯한 과거 동독의 독재 기구에서 근무했던 자들에 대해 애당초 계획되었던 특수연금제도와 같은 특권이 상실되도록 조치하였다. 과거의 불법은 현재나 미래를 막론하고 연금법상 더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o '91. 7. 1자 인상과 더불어 신설연방주의 평균연금은 현재 864 DM에 달한다.
 약 900,000명에 이르는 정년퇴직 연금수령자와 산재연금수령자는 7. 1자로 평균적으로 1,010 DM에 상당하는 연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정년퇴직 연금수령자 200만명은 평균적으로 798 DM을 받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근속연도의 차에 근거하는 바, 남성은 평균 47년간, 여성은 평균 38년간 근속한 것으로 나타남.)
- o 화폐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이 발효되기 이전인 '90. 5. 1자, 남성에 대한 보험가입 연금은 평균 583 DM이었는데 '91. 7. 1자로 73%의 인상 즉 427 DM이 증액되었다. 여성은 '90. 5. 1자로 455 DM을 받다가 '91. 7. 1부로 75%가 증가하여 343 DM가 증액되었다. 동일기간중 미망인 연금은 419 DM으로부터 349 DM이 증액되어 768 DM을 받게 되었는데, 83%가 증가된 셈이다.
- o 뮌헨의 Ifo 연구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신설연방주의 각종 가계형태의 가처분소득 즉 공제금 일체와 주택보조금과 같은 추가적인 사회복지소득을 제한 소득에 따른 구매력은 '91년 가을 현재 국가보조금의 철폐와 공제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변혁이전보다 훨씬 높는데 그중 연금수령자들의 구매력이 가장 높다. 연금수령자들의 소득에 따른 구매력은 주택임대료의 인상과 에너지비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91.10 현재 '89년 상태보다 45%나 증가되었다.
- o '92. 1. 1부터 전독일에 걸쳐 통합조약에 부응하여 단일한 연금법이 적용된다. 이로써 신설연방주의 나이많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개선조치가 단행된다.

정년퇴직 연금

- 앞으로 구서독 연금제도의 정년퇴직 연한이 신설연방주에도 적용되게 된다. 일반적인 정년퇴직 연한은 더이상 65세가 아니고 63세 내지 60세가 된다. 이로써 200,000명의 보험가입자들이 조기에 연금수령생활을 하게 된다.

유족연금

- 92년도부터 남녀 미망인으로서 최소 45세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직업수행 불능 내지 자영업 수행불능인 자는 신설연방주에서도 사망한 부(부)의 연금의 60%에 상당하는 유족연금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 기타의 경우

사망한 부(부)의 연금의 25%에 상당하는 소액유족연금 신청권한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것은 미망인들에게 대단한 개선조치이다.

'92. 1. 1부터 유족연금법 신청권한은 부(부)의 사망일이 이 시점이전일지라도 적용된다.

자영업 수행능력의 제한에 따른 연금

근무수행 제한을 2/3로 전제하는 균일한 산재연금 대신 이제부터 일종의 직업수행 불능연금 및 자영업 수행 불능 연금이 도입된다.

직업수행 불능연금은 이수한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비록 직업수행불능연금은 자영업 수행불능 연금보다는 적지만 이에 가산하여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자영업 수행불능 연금은 여하한 직업수행도 허용치 않는다.

과거 동독 연금법과 반대로 '92. 1. 1부터 전독일에 걸쳐 직업수행불능 연금 및 자영업신청연금 신청권은 5년간의 보험가입기간이면 충분하다.

자녀양육에 대한 고려

'27년 이후에 출생한 부모의 경우 매자녀 1명당 보험가입자의 평균지불액의 75%에 기준하는 보험가입연도가 연금보험에 가산된다.

이미 자체의 연금을 받고 있는 자모의 경우 구동독법에 따라 자녀양육이 이와 같은 보험에 고려되었다. 이와 같은 것은 보험가입 연도 환산시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연금 산정

'92년도부터 연금은 신설연방주에서도 원칙적으로 실제적인 개별수령액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독일전역에 걸친 균일한 소득상태가 실현될때 까지 일종의 현실적 구동독지역 연금기준이 도입되며, 이와 같은 현실적 구동독

지역 연금기준은 구동독지역의 소득의 발전상태에 부응하여 순수연금 수령액이 구서독지역처럼 노동소득과 동일한 상태에 적응될수 있도록 한다.

연금신청 기득권

- 신설연방주의 연금이 지금까지 통용되는 법과 관계되는 한 지금까지 지불된 연금의 환산은 이미 수행한 노동연한의 연도와 최종 20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하여 산정된다. 환산된 연금이 지금까지의 수령액보다 낮을 경우, 당분간 차액은 불변한 상태로 추가적으로 계속 지불되며, '96년도부터 비로소 차액지불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득권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보장된다.

연금보험의 재정조달

- '92년도부터 구서독 연금보험과 구동독 연금보험간에는 재정결합이 형성된다. 이는 신설연방주의 보험가입자나 연금수령자 역시 구서독 연금보험에 있는 것과 동일한 안정에의 권한과 승계권이 보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적 보조금

- 지금까지 우수하도록 입증된 사회복지적 원칙적으로 '96.12.31까지 계속 지불된다. 이에 무관하게 이와 같은 사회복지적 보조금은 '92. 1. 1부터 '93.12.31까지 연금수령 도입자에게도 보장된다. '92년도 사회복지적 보조금은 독신자의 경우 매월 600 DM, 기혼자의 경우 매월 960 DM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만큼 지불된다.

기타 연금

- 구동독 특수연금제도 및 추가연금제도에 의해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총 수령액이 2,010 DM으로 제한되다. 구Stasi 특수연금 제도에 의한 지불은 최고 800 DM이다.

1.9 보건분야의 평준화

- 동. 서독 국경이 개방된 직후, 동독 보건분야 공급상태 열악함이 드러나자 연방 정부는 이미 '89년 가을에 의료공급개선을 위한 즉각대책에 착수했다. 5억 2,000만 DM의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0년도에 종합병원 등에게 응급치료 분야를 위한 의료기술 기자재 및 의료용 소모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지원능력중에는 장애자 운반에 적합한 차량, 휠체어, 승강기, 취학전 아동 및 취학 연령의 아동을 위한 보청기 등이 포함되었다. 기타 중요사항으로서는 양노원과 간호병원에 대한 공급자재와 운영기술재의 공급을 비롯하여 양노원, 간호병원 및 종합병원을 위한 구급차 제공 등을 들수 있다.
- 이와 같은 것은 관계없이 동독의 의료기관은 구동독환자 치료비를 부담하였는가 하면 사회복지 단체들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지원하였다. 특히 만성신장염 환자의 치료개선이 시급하였다. '89년말까지 구동독 신장염 환자중 2/5만에 담석제거병동의 입원실이 배당되었다. 그들에게 적절한 의료공급은 제1단계 조치로서 우선 '92년 중반까지 확보될 예정이다.
- 그동안 구동독지역의 의료보건시설은 대체적으로 훌륭한 성능이 입증된 구서독 시스템에 적응되어야 한다. 현재 1,200만명의 보험가입자와 가족으로서 공동 가입된 400만명이 전역을 망라하면서 도입된 지역보험, 기업보험, 협회보험, 추가보험 등 기타 질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91.12.31을 기해 이들 가입자들은 임금의 12.8%라는 일률적 공제액이 적용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법정 질병 보험제도는 아무런 마찰없이 성공리에 구축되었다.
- 기존 국영 응급병원과 종합병원이 제공하던 치료시설의 공급을 이제 개업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예상외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미 11,000명의 의료수가 징수일반의와 7,000명에 달하는 의료수가 징수 치과의를 개업하였다. 이에 연방 정부의 지원이 따랐는 바, 개업의들은 유럽개발 계획에 의한 용자프로그램은 물론 자기자본 본조프로그램 역시 이용하고 있다.

- 연방정부는 종합병원의 건물과 의료시설의 개선을 다음과 같은 2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책이 일환으로서 50억 DM의 일괄금 뿐만 아니라 150억 DM에 달하는 지자체 지원용 용자프로그램을 통해 종합병원 보수유지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 약 40억 DM이 작년도와 현년도에 보건분야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승인되었다. 간호원과 의사뿐만 아니라 마약상담사와 식품감독 전문가 역시 이와 같은 직업 계속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다. 이에 또한 구동독 보건제도의 결함이 인력의 무능이나 태만한 근무태세에 있지 않았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 반대로 수십 년간에 걸쳐 의사와 간호원과 간호사들은 엄격한 규정과 외형만 번지르한 통계치와 노후한 의료시설을 가지고 거의 소모적이고 절망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 또한 구동독 보건제도의 어려운 상태는 일련의 모델계획에 그 책임이 있다. 즉, Leipzig, Jena, Magdeburg, Rostock의 4대 암연구센터 구축과 Cottbus, Zwickgau의 2대 배양프로그램을 위하여 금년중에 3,000만 DM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암환자 진료개선을 위한 이와 같은 모델프로그램의 중점은 우수한 골수이식센터의 구축 및 연방전역에 걸친 골수이식수술에 필요한 헌납자 명단 확보와 같은 것이다.
- 이미 작년도부터 착수된 "이동식 마약방지 대책"은 신설연방주에도 도입되었다. 베를린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주에 각각 2개 방지센터, 그리고 작센주에 3개 방지센터 설립이 금년중에 우선 70,000 DM, 그리고 차기연도에 각각 100만 DM씩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종합 중독환자 상담센터의 설립을 위해 우선 100만 DM ('91년도), 그리고 차기연도에 각각 200만 DM씩 사용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 최초의 모델 프로젝트로서 뵐하우센 튀링겐 주립 전문병원에 응급치료시설이면서 정신병 치료시설의 확충시설의 부설이 착수되었다. 이로써 정신병치료소의 파국적 상태에 대한 대책이 착수된 것이다.
- 구동독지역 의약품 공급상황은 특히 현대의약품 부족과 만성적인 전반적인 공급 결핍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통독이후 즉각적으로 유통되는 일체의 의약품

이 신설연방주에도 확보되도록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존재고품에 대한 의약품 안전기준의 보장이 검토되었다. 2,000여 기존 약국중 현재 75%는 사유화 되었다. 구동독 국영의료 도매상의 사유화를 통해 14일간의 주기로 이룩되던 의약품 공급제도가 일간 수회에 걸친 의약품 공급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 음료수와 식품감독의 개선이 또한 매우 긴급한 것이었다. 현재 착수되고 있는 "음료수 긴급프로그램"을 위해 내년말까지 1,100만 DM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이로써 오염된 지역에 대한 수질분석과 모델에 따른 수도국의 정화 시설이 필요로하는 재정이 조달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식품감독분야에 있어서 총 320만 DM을 잔류검사 분야의 기자재에 필요한 최소액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10 환경정비와 생태학적 구축

- 40년간에 걸친 사회주의 명령경제의 유산에 대한 비관론자들의 예상마저 훨씬넘어 환경오염 잔재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래, 이 분야는 지극히 예민한 분야로서 거론이 되고 있다. 즉 과거의 동독공산정권은 구동독의 자연이 상상할수 없는 정도로 오염되도록 방치하였던 것이다. 수십년간에 걸쳐 자연을 무자비하게 남벌하고, 손실을 무릅쓰고 경영하여 그야말로 미래에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공기오염, 하천오염, 토양오염, 그리고 이로써 연계된 대규모의 문제지역의 생성과 생태학적인 위기지대를 양산했는 바, 이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다. 환경오염의 제거는 오로지 단계적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급성적 위험에 대처하는 우선 긴급대책의 설정을 통해 자연적인 생활환경이 점차적으로 새롭게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정책이 구분되어야 한다.

- 주민의 보건을 위한 위험방지 즉각 대책
- 중장기적으로 설정된 방안

o 이미 통독이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착수됨으로써 그 결과, (음료수로부터 쓰레기 적치장 확보에 이르는) 위협방지대책이 도입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지원대책이 없었더라면 신설연방주의 환경행정당국은 정확한 자체 행동전략을 모색할 능력이 전연 없었을 것이다. 이미 '90년도에 연방예산에 의한 14억 DM이 급성 위협제거와 파일럿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o '90/'91년도 초기단계의 성과

- 구동독 환경부담과 생태학적 위협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눈에 띄는 개선을 위해 이미 '90년 전반기에 특히 환경오염과 직결된 기업체의 생산량 감소 내지 생산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90. 7. 1 경제통합, 화폐통합, 환경통합, 사회통합의 실시와 더불어 이와 같은 과정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 오늘까지 아황산가스 방출량은 '89년 방출량보다 10.5%, 분진방출량은 '89년의 13.5%가 감소될 수 있었다. 비터펠트지역에서는 유해물질 방출이 이미 '91년 중반기에 막대한 양이 감소될 수 있었는 바, 이와 같은 양은 원래 '91년 말에 달성된 예산계획이었다.
- 신설연방주의 도처에서 음료수용으로 채수하고 있는 엘베강에의 유해물질 배출은 '89년도 배출량보다 약 20%가 감소되었으며 베라강에의 염분배출은 '89년도 배출량보다 12%나 감소되었다.
- 신설연방주의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변환에 병행하여 심한 유황가스가 함유된 갈탄대신 유해가스 방출이 약한 석탄, 석유, 지하가스과 같은 연료의 대치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지금까지 단위지역의 유해가스 배출의 50% 이상을 점유하던 개별화력 발전시설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공업계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다. '90년 전반기중 구동독지역 갈탄사용량은 33%나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갈탄은 구동독지역 기초에너지 공급량의 2/3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에너지는 구동독지역 핵발전소가 안전관계로 조업중단에 처하게 됨으로써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쓰레기 처리시설과 적치장은 그 계속가동이 보건을 위해하고 환경을 위해하는 한 폐쇄된후 안전조치가 취해졌다. 특수쓰레기는 더이상 가정쓰레기와 함께 적치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90년 하반기에 4억 9,600만 DM에 상당하는 596개의 환경보호 즉각 프로젝트가 촉진되었다. 이와 같은 재원은 음료수 공급, 폐수처리, 쓰레기 처리산업, 대기정화와 같은 대책에 투입되었다.
- o 90년중 급성적 문제점 해결과 주정부의 계획수립에 기초연구가 얼마나 중대한지 판정된 이래 91년도 환경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다시한번 강화되었다. '90/'91년도에 총 88개 연구계획과 함께 생태학적 구축을 위한 기초가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연구는 정확한 계속지원을 위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생태학적 구축이 어떻게 행동프로그램에 마련되어 있고 어떻게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책과 함께 소규모 부분적 단계로서 실현될 것인지를 제시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60,000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신설 연방주의 생태학적 정비분야의 직장 조성대책이 잔재정비로부터 자연보호에 이르기까지 유용하게 수행될 전제조건이 조성될 수 있었다.
- o 그러나 신설연방주의 체계적인 생태계 정비는 신속한 경제부흥의 중대한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특히 낙후공업지역의 생존능력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신설연방주의 환경정화와 발전에 관한 기본방침"과 함께 '90년말이래 생태위기로부터 벗어날 근본방안이 있는 바, 그 목표는 서기 2000년까지 독일전역에 걸쳐 고도의 균일한 환경조건을 조성함에 있다. "기본방침"를 기본으로 하여 신설연방주는 환경문제에 집중적인 다음과 같은 연구가 발주될 것이다.
 - 라인치히 / 비터 펠트 / 할레 / 매어세 부역 대규지역 (화학공업)
 - 만스펠트지역 (광산, 제련)
 - 니더 라우시츠 (광업, 에너지 생산)

- 이에 신설연방주의 학자와 학술연구기관이 가능한한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미 현재 중대 연구결과는 위험방지 대책을 위한 발상점 이외에 당면지역의 오염 상태에 관한 신뢰할만한 전체적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론과 함께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한 계속 투자가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 환경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물, 공기, 토양과 같은 각 분야에 걸쳐 생성된 환경오염이 집중적으로 철거될 것을 요한다. 하천과 호수의 오염, 해안과 지하수의 오염상태는 도처에 걸쳐 심각한 정도이다. 불량한 지하수질과 정수시설의 결핍은 구동독 주민중 약 2/3가 항구적, 내지 시기적으로 불량한 질의 음료수를 공급받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작년이래로 체계적인 음료수 검사가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미 환경보호 즉각프로그램의 긴급대책으로서 전환되었다.
- 폐수처리상태에 관한 현황파악에 따르면 서기 2000년까지 중도시 및 대도시를 위해 300개의 정수장이 완성되거나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1/'92 즉각프로그램은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책의 일부로서 투자재원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재 기준 1,100개의 정수시설이 가능한한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엘베강과 그 지류에 관한 정비에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준하는 오더강과 발틱해에 대한 정비 역시 착수되었다.
- 노후시설 (예 : 아황산가스 생산시설)중 대다수가 그 생산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연방주의 대기오염도는 구서독지역 수준과 비교할때 무려 몇배가 넘는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 분야는 물론 쓰레기처리와 오염된 토양의 정비에 있어서도 수많은 파일럿 프로젝트가 착수되어 모범적인 문제해결을 모색중에 있다. 이미 전술한 바 있는 '91/'92를 위한 각각 4억 DM은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분야를 이해 즉각 대책으로서 투입된 것인데 음료수 공급 프로젝트 이외에 폐수처리, 적치장 확보는 물론 연료전환, 단기적 위험방지 등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프로젝트의 선정은 계획된 환경보호 효과가 가능한한 빠르게, 늦어도 '92년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수행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대책은 동시에 직장을 조성하고 유지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 o 지자체와 란트크라이스의 행정을 비롯하여 사경제적 기업체에 막대한 상담욕구가 있음을 감안해 볼때 환경성의 파견관실내에 상담팀이 구성되어 주정부 관련부처와 노동행정기관과 신탁청과 긴밀한 협력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담팀은 직장조성 대책을 위한 전제조건 설명으로부터 재정조달 문제에 관한 상담과 해당 프로젝트의 조직에 이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o 최종적인 특수문제점은 지금까지 소련주둔군이 사용하던 지역에 있다. '91년초에 이와 같은 지역으로서 점차로 소련군이 넘겨주는 지역에 대한 잔재에 관한 조사 및 대강치를 보고하도록 하청되었다. 연방재무성 예산으로 충당되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의 비용은 7,000만 DM이다. 발주량의 2/3가 역시 신설연방주의 수주인에게 하청되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동독 기업체의 노우하우가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이 확보되거나 새롭게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1.11 독일연방군 - 구동독 인민군의 해체와 소련군 철수

- o '90. 10. 3 독일통일 이래 일련의 의문사항과 문제점이 거의 여론에 가린채, 그리고 아무런 잡음없이 해결되었었다. 그와 같은 것은 거의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신설연방주내 독일연방군의 신설 내지 구동독 인민군의 해체문제였다. 구동독지역 주둔 소련군 철수문제도 이와 맥락을 함께 한다.
- o '90. 10월초에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설치된 연방군 동부사령부는 그 임무를 완료한후 '91. 7. 1자로 이미 그 임무를 중단하였다. 그 이래로 신설연방주와 베를린 동부 지역에는 구서독지역에서나 마찬가지로 병력단위로 관계되는 연방군의 구조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 o 통합조약과 함께 독일의 병무헌장 일체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한 병역법 일체와 함께 신설연방주에서도 유효하게 되었다. 신설연방주의 의무병이 이미 '90.10이래 구서독 의무병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병 봉급을 받게된 이래, '91. 6.30자로 전역금과 성탄절 특별상여금 역시 완전히 적용되고 있다. 작년 가을 신설연방주의 전역금은 150 DM으로부터 우선 500 DM으로 인상되었다가 현재 균일한 2,500 DM을 받게 되었으며 성탄절 특별상여금은 390 DM으로 균일화 되었다.
- o 이에 병행하여 독일전역의 모든 의무병과 그 가족은 고액의 균일한 생계보조비를 받고 있다. 즉 자녀가 없는 가정의 부인은 매월 650 DM,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인은 매월 960 DM을 받고 있으며, 의무병 전역시 부인에 대한 과도기 보조금은 700 DM으로 인상되었다. 동.서독 지역간 의무병의 평준화를 위한 이와 같은 괄목할만한 개선대책은 신설연방주내 민간인 근무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 o '90.10. 3 통독과 함께 2,000명 이상의 장교와 하사관과 민간인들이 동부군 사령부에게 근무를 개시할 당시에 동독인민군 병력은 90,000명이었으며, 그중 39,000명이 의무병이었다. 그 이외에 이중에는 15,000명의 국경수비대원과 47,000명이나 되는 민간인 근무자가 있었다. 무기와 장비의 재고량은 다음과 같이 엄청났다. 전자 2,400대, 장갑차 7,800대, 대포 2,500문, 전투기 400대, 헬기 50대, 차량 100,000대, 개인화기 120만정, 탄약 300,000톤. 또한 900개의 진지에 걸친 2,000여 부동산을 인수하였다. 그동안 동부군 사령부가 처리한 군사행정과 민방위 행정상의 엄청나고 다양한 임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명백해 진다.
 - 구동독 인민군의 조직형태의 해체, 이는 수만명에 달하는 직업군인, 한시근무병, 민간근무자의 해고와 관계되는 것이다.
 - 수만명의 구동독 인민군이 연방군의 새로운 구조에 인수되어 통합되었다. 약 20,000명이 우선 한시근무병으로, 20,000명은 애당초부터 한시적으로 그리고 35,000명은 의무병으로 인수되었다.

독일연방군에서 근무하기를 지망한 10,000명의 구동독 인민군 출신은 그이래로 연방군내에 있는 교육과정이나 세미나를 이수하면서 독일의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와 내적지휘의 원칙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구동독 인민군 출신으로서 전역해야 할 장교와 하사관은 원하는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민간인으로서의 직업수행을 할수 있도록 직업 촉진시설의 10개 기구에서 매 200명씩 지원받고 있다. '90년 가을부터 금년도 중반까지 12,000명의 구동독 인민군 출신이 직업적 승진교육과 직업전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구서독지역 직업전문학교에도 이들을 위해 700여 직업교육훈련장이 마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무기와 탄약은 중앙수거장으로 수거되어 관리중에 있다. 그중 독일연방군이 계속 사용할 것과 폐기할 것에 대한 결정과정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잉여품에 대한 폐기처분은 시작되었다.

작년 가을 이후 '91. 7월까지 이미 1,380건의 부동산 (총면적 60,000 ha)이 독일연방국방부로부터 매각 처분되었는 바, 이는 독일연방군이 신설연방주에서 인수한 총 2,250건의 부동산의 60%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부동산은 무기, 장비, 탄약이 제거된 후 독일연방 부동산 관리처가 인계하였다. 이같은 매각 처분의 목표는 신설연방주의 경지사용계획을 개선하고 용지면적과 건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경기부양 촉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시설이 노후한 병영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이미 현행연도에 4억 DM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 투자액은 1억 DM이 증액될 것이다.

신설연방주에는 우선 50,000명의 현역군인이 주둔하고 '94년 이후 최종적으로 현역군인의 수는 66,000명이 될 것이다. '95년부터 소련군이 동부독일에서 철수하게 되며 그때까지 독일의 지휘를 받고 있던 병력부대는 NATO의 구조하에 통합될 것이다.

- o 현재 구동독지역 주둔 소련군의 철군은 점진적이면서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다. '90.10초까지 구동독과 동베를린의 340,000명의 병력과 210,00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련군중 '91. 8초에 80,000명 이상의 군인과 25,000명의 가족이 철수하였는 바, 이는 '91년 달성치의 70%에 해당한다. 물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총 445,700톤 (63%)가 소련으로 이송되었는데 그중에는 탄약 200,000톤 (84%), 1,240대의전차, 1,800대의 장갑차, 대포 714문, 차량 12,000대가 포함되었다. '91년말까지 총 150,000명이 철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 o 소련군 철군은 원칙적으로 '90.9에 체결된 독.소간 합의에 따른 두가지 협정인데 '90.10에 서명된후 현재 양측에 의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주둔협약과 철수협약에 따라 소련군은 독일에게 정기적으로 주둔병력수와 철수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독일관청은 소련병력의 법적지위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인수과정 협약을 통하여 독일은 병력의 유지와 철수에 필요한 30억 DM을 특별 DM - 인수기금에 지불하고 30억 DM에 이르는 무이자 차관(이자지불 총액 10억 DM은 연방정부 인수)을 제공하며 철수에 따른 수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0억 DM을 지불하도록 확정되어 있다.
- o 그 이외에 독일은 소련에게 소련의 유럽주둔 병력중 철조병력을 위한 주택건설 프로그램의 재정조달에 78억 DM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의 수행에는 독일기업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 특히 신설연방주의 기업과 공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초월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철수병력과 그 가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생활에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94년도까지 총 2억 DM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o 구동독 주둔 소련군 민간인의 완전철수는 94년말까지 완료될 것이다.

1.12 문화, 연구, 체육

- 40년 이상에 걸친 역사와 문화의 공동의식은 분단독일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와 다름없었다. 국가적 분단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문화는 민족통일이 존속되는 중대한 기본요소였다. 신설연방주는 통일독일과 유럽의 공동성장에게 필요한 문화적 유산, 전통적 경관, 중요한 연구소와 강좌, 국내외에 유명한 연극, 컨서트, 박물관을 제공하고 있다.
- 교육, 예술, 문화의 축진은 독일 기본법에 따라 주정부와 지자체의 관할하에 있다. 그렇지만 신설연방주와 그 지자체가 이와 같은 과업을 완전히 인수하게 될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요할 것이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장벽이 무너진 이후 구동독지역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막대한 책임의 일부를 인수하였다. 왜냐하면 자체 생활공간의 정체성 확보에는 문화시설과 문화유산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40년간 이상에 걸친 사회주의의 결과, 신설연방주는 문화의 황무지나 다름없는 바, 이와 같은 현실은 즉각적인 지원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 '90년중에 이미 연방정부에 의한 내독간 발전의 일환으로서의 약 2,000만 DM이 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해, 붕괴상태에 처한 문화재 보존을 위해, 영화제작 지원과 문화시설의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재원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시설이나 건물이 손상직전에 보존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재원으로 신설 5개주내 26개의 극장이 재정난으로 폐쇄직전에 보전될 수 있었다.
- '91년 연방예산에 이와 같은 과도기 재정조달을 위한 지출로서 총 9억 DM이 준비되어 있다. 그중 2/3는 원형보존에, 1/3은 문화적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로써 각종 시설이 특히 독일국내적은 물론 유럽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적 연결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이 있다.

- 문화적 유적, 역사적 건조물, 도시의 심장부는 모두 붕괴직전의 위협에 처해 있다. 총 1억 DM의 특수프로그램이 '91년도와 '92년도에 문화재 보존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나아가 '91년도에 2억 9,000만 DM이 특히 기존문화시설 촉진을 위해 계획되어 있다. 그 이외에 신설연방주는 도시건설 촉진이라는 일반프로그램, 촌락미화계획, 교회건축, 문화재에 대한 공해척결 등에 구서독 지역에서의 마찬가지로 참여하고 있다.
- 연방정부는 '91년도에 총 12억 DM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설연방주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바, 이로써 연방정부는 문화예산의 엄청난 적자를 메꿀수 있도록 기여했다. 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조기결정과 함께 중대문화재의 계속 보존을 위해 괄목할만한 징표를 설정함으로써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신설연방주의 문화정책적 관할권을 침해함이 없이 이와 같은 대책은 긴요한 곳에 지금까지 그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책의 도움으로 구동독지역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은 금년중에 4억 DM을 대학건물과 대학생 기숙사 수리 보수할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연방과 주정부의 대학건설 프로그램에 대한 정규적인 할당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액이다. 대부분의 대책은 일정한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늦어도 '91/'92 겨울학기가 시작되기전에는 착수될 것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90년도중 1,500만 DM을 대학컴퓨터 시서 확충에 현대식 자료처리시설에 320만 DM 등을 연방교육학술부 예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이로써 '91년 4월초부터 19개 대학도서관이 서로 컴퓨터에 의해 결합되었다.
- 신설연방주에도 국가의 지원과 함께 점진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서독지역에서 입증된 바 있는 광범한 대학의 연구시설이 생성되게 되었는데, 그중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3대 대형 연구시설

- 9개의 대형연구시설의 연구분실
 - 소위 "청색목록"에 따른 25내지 30개의 연구소
 -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푸라운호퍼 연구소에 의한 35내지 40개의 신설연구시설 및 연구기관
- o 새로운 연구시설은 구서독지역에서 착수하지 않았거나 겨우 경미하게 착수하였던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착수하게 될 것인 바, 실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베를린 분자의학센터, 이곳에서 475명의 연구인들이 현대적 생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독일에 없던 조건하에 그 임상적용 가능성을 연구
 - 포츠담 지구물리학 센터, 125명의 연구인이 지구표면 활동을 연구
 - 라알치히, 칼레 환연구센터, 약 400명의 연구인이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특히 신설연방주의 문제점을 주로 연구
- o 신설연방주에 대한 연구체제의 재정비 이후 12,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연방과 주정부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에서 새롭고 미래가 약속되는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었다. 그중 10,000명 이상의 남녀 종업원 (현재 17,000명중)이 구동독 과학 아카데미 출신이다. 과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던 건설아카데미의 4,000명 근로자중 약 2,000명이 이미 건설업계에 진출했으며 나머지 1,200명은 주립기관이나 기타 연구시설에서 연구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신설연방주의 연구시설과 그에 종사하는 학자들을 위해 광범하고 문제점에 입각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 주정부와 함께 재정지원할 연구시설을 위해 '92년도에 5억 8,500만 DM을 연방연구기술성의 예산으로부터 확보해 놓았으며 기타 연방부서의 예산중 1억 DM의 재원을 구건설 아카데미와 농업연구 아카데미와 같은 연구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현행연도에 약 1억 3,000만 DM의 투자재원이 구과학 아카데미 과도 운영기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연구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프로젝트 촉진재원이라는 제하의 재원으로부터 연방연구학술부의 7억 5,000만 DM의 재원중 92년도를 위해 이미 2,100만 DM이 대학 신설을 위해, 그리고 8,000만 DM이 대학과 산업을 위해 인정되었다.
 - 닥아올 연도를 보완적으로 각각 2억 DM이 과학자들의 대학연구기관 편입에 계획되어 있는 바, 그들은 지금까지 구동독 아카데미에서 활동하여 왔다.
- o 통일독일의 체육 역시 공동성장해야 한다. 이에 과거의 명령구조적 체육과 국가체육적 구조는 철폐되어야 하고 민주적 구조의 체육건설에 지원이 따라야 한다. 체육분야중 트레이닝센터와 트레이닝 연구소 유지를 지원하고 정상급 체육선수에 대한 사회복지적 안정이 확보되어야 함에 추가재원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91년도 연방내무부 예산중 체육재원으로 할당된 2억 4,800만 DM이 확충되어 있으며 그중 1억 3,500만 DM은 신설연방주 대학 체육장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과거 조명

2.1 평화혁명 - 헝가리 국경개방으로부터 국가조약에 이르기까지 -

- o '89년 여름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시작된 극적인 과정은 단 몇주일만에 급속도로 진전되어 중유럽의 전후질서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 극적인 과정이란 바로 동독의 붕괴를 말한다. 독일민주공화국 (이하 편의상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식을 기해 정권 담당자들이 환호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을때 이미 평화혁명을 통해 40년간의 독일통일사회주의당 (SED : 이하 편의상 동독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완전 붕괴시킬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공산당 기관지 "노이에스 도이칠란트"는 8월13일 베를린 장벽 구축 28주년을 맞아 "제국주의가 우리를 망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와 함께 동독공산당의 정당성과 논리를 찬양하였지만, 그날 부다페스트 주재 독일대사관은 180명의 동독난민들이 몰려들자 폐쇄하고 말았다.
- o 이미 그 5일전에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도 문을 닫았는데 서독으로 출국 여행을 강행하려던 130명의 동독난민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서독대표부는 인도적인 견지에서도 주민의 수용을 더이상 허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동독측을 대변하는 변호사 포겔은 출국희망자들의 숙명에 관한 회답에 단지 "제한적 권한"밖에 위임 받지 않았으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무죄석방만 확인할 수 있으나 출국 여행 신청에 관한 "적정한 검토"는 더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 o 8.18 총리실의 루돌프 자이터스장관도 출국여행희망자에 관한 회답차 동베를린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와 비슷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 다음날 "범유럽연맹"의 행사에 참가했던 661명의 동독주민들이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 피난에 성공하였다. 그 3일후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 역시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었다.
- o 8.25 헬무트 콜 총리와 한스 디트리히 쾨서 외무장관은 헝가리의 미클로스 내메트 총리와 귄라 호른 외무장관을 본에서 맞아 피난민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9.10 헝가리정부는 동독출신 피난민 -

헝가리의 긴급수용시설에는 6,000명 이상이 대피상태에 있었음 - 에게 동베를린측의 허가없이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ADN통신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의 십자군 원정"이라고 비난했다. 9월말까지 이와 같은 경로를 타고 서독으로 온 동독주민수는 25,000명에 달했다. 그 이후 프라하 및 바르샤바 주재 독일대사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 o 9.30 쾰른 외무장관과 자이더스 총리실 장관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운집한 피난민들에게 서독으로 출국여행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찬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다. 특별열차편으로 바르샤바로부터 800명, 프라하로부터 5,500명이 동독을 가로질러 서독의 헬름슈테트로, 호프시로 왔다. 그러나 이들이 지난후 바르샤바와 프라하의 독일대사관에는 다시금 수천여명의 동독출신 피난민들이 운집하였다.
- o 이날밤, 즉 '89.10. 2 라옌지히에서는 니콜라이교회에서 평화기도를 마친 20,000명 이상이 동독의 개혁을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공안요원들과 격돌하던 부상자와 체포사태가 속출했다. 동독 국영철도의 빗장이 굳게 잠긴 특별열차편으로 수천명의 동독피난민들이 서독으로 운송되고 있는 동안,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동독의 건국 4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3일간의 여행출발에 막 발걸음을 내디려던 중이었다. 고르바초프가 동독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며 동독국가평의회 의장이자 국가보위 평의회 의장이기도 했던 에리히 호네커에게 행한 예언자적 촉구, 즉 "너무 늦게 오는자는 인생의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은 곧 모든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하게 되었다.
- o 호네커는 그 몇주전 "통일" (Einheit)이라는 당기관지 9/10월호에 동독을 "기능이 우수하고 효율적인 사회주의적 사회체제"의 국가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사회주의와 함께 실현된 인권은 90년대의 도전에도 입증될 것이다"라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손실은 명명백백했다. 고르바초프가 동베를린을 떠난지 10일후인 10.18 호네커는 모든 직위를 상실해 버렸다. 에곤 크렌츠가 그의 후임자가 되었다.
- o 40년동안이나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던 동독공산당의 권력은 마치 종이상자로 만든 장난감 집처럼 붕괴되었다. 동독의 통치자들은 건국축제 행사때만해도 동독이

”유럽의 평화와 사회주의의 전초병”이라고 자찬했지만 지난 40년간의 존립기간이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여실히 증명해줄 뿐이었다. 동독은 법과 자유가 없던 나라로서 시민의 절대다수로부터 거부를 당하면서도 단지 전체적인 통제와 모든 분야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생존이 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이와같은 것들은 다음과 같은 유일한 원칙을 근거로 하는 것이었다. 즉, 무자비한 테러로부터 매우 주도면밀한 압력이 각양각색으로 행사되거나,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격명령으로부터 강요된 자체검열에 이르기까지, 죽음과 상급학교 진학금지 등의 불이익을 수반하는 폭력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원칙이었다.

- o 스스로 장벽을 둘러싸던 국가에게 신의 계시는 마치 번개불처럼 닥아왔다. 황급히 날조된 개혁의 약속이 공포되었으나, 역사적 ”오류”에 대한 자민, 미래에의 약속 따위는 더이상 체제를 안정시켜 줄 수 없었다.
- o 따라서 동독공산당의 지도층에게는 '89.6 중국의 민주화운동 발생시 무자비한 진압장면에 동조하면서 환영조의 견해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겠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무자비한 사태와 이에 보여준 동독의 공식적 반응일체는 동독사람들에게 '89년 늦여름과 가을의 상황이 점점 더 돌파구가 없도록 만들어 버린 사태였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o 또다른 파급효급을 불러일으킨 사태가 5월초에 실시된 동독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였다. 엄청난 선거부정에 대한 비난, 이는 후일 실증되었고, 무엇보다도 소련 공산당수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을 반대하던 완고하고 교만한 ”콩크리트 괴물들”(공산당 지도층 지칭)의 저항 등 모든 것은 그러지 않아도 침체일로에 있던 동독의 패배, 신뢰감 상실, 절망감과 같은 현실적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켜줄 따름이었다. 그들에게는 더이상 미래에의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 o 수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피난하고 있을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 숫자는 엄청났다. '89.7말까지 이따 46,343명이라는 사람들이 동독을 합법적으로 떠나버렸는데 '88년도의 총 39,832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프라하

주재 독일대사관을 통해 11월초 단 며칠동안에 서독으로 온 사람들의 수는 40,000명을 넘었다. 11.9까지 동독출신 이주민 총수는 225,233명을 육박하게 되었으며 지난 12개월동안 동독을 등진 사람들의 총수는 89년말에 343,854명이나 되었다.

- o 10.2 라임치히에서 시위했던 20,000명은 한주일이 지나자 이미 70,000명에 달했고 10.16에는 120,000명이나 되는 시위대가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거리에 뛰어나와 동독의 개혁과 민주적 혁신을 주장했다. 그리고 에곤 크렌츠를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하려고 계획되었던 전날밤인 10.23에는 라임치히의 "월요시위대"의 참가자는 300,000명이라는 그때까지 최고의 기록을 수립했다. 이때에 드레스덴, 막테부억, 츠비кау, 동베를린, 슈베린에서도 수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으며, 11.4 동베를린에서는 50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독의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감행했다.
- o 11.9 동독은 서독과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모든 국경통과소를 개방하였다. 콜총리는 폴란드 방문을 중단하고 '89.11.10 수십만 베를린 시민앞에서 연설했다. 그날 20시 30분 본의 독일연방하원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의원들은 모두 기립한후 자율적으로 독일국가를 열창하였다. 그날밤 자정이 넘도록 베를린에서는 수천군중이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채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서독 국경을 넘나들면서 환호했다. 장벽이 무너진지 한주일동안 900만이라는 동독사람들이 서독과 서베를린으로 여행을 단행했다. 한스 모드로가 빌리 슈토프의 후임자로 동독 각료이사회 의장 (총리격)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1.17 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주적 개혁추진을 주된 임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독일연방정부측에게 일종의 방대한 "계약 공동체"를 제안하였다. 11.27 재차 200,000명이나 되는 군중이 시위를 벌였던 라임치히에서는 현수막과 구호속에 재통일이 촉구되기도 하였다.
- o 그다음날 콜총리는 독일연방의회에서 독일정책에 관한 10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국가연합적 구조"를 열거하면서, 그 목적은 하나의 "연방국가, 즉 독일내에

하나의 연방주의적 질서”가 조성됨에 있다고 말했다. 콜총리는 독일의 통일과정이 전유럽적 발전과정에 기초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연설 마지막 부분에 재통일을 논했다. 그는 ”독일의 국가적 통일을 되찾는 것”이 콜정부의 정치적 목표라고 선언하였다.

- o 국내외적 반응은 상당한 놀라움 그것이었는데 10대 방안에 대한 국제적 반응은 우방국과 동맹국을 가릴것 없이 처음에는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피 콜총리는 그의 이번 연설을 통해 대외정책 행동기준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독일 재통일의 방법과 일정을 적절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혔다.
- o 12.1 동독헌법 제1조의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사실상은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행동에 불과했을 뿐이었다. 동독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가 형성되고 있었다. ”원탁회의”라고 잘 알려진 각종 사회세력의 대화의 광장이 동독의 정부정책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구축해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구 제휴정당들은 독자적 노선을 고수하려고 진력하고 있었다. 동독 공산당은 - 신임당수인 에곤 크렌츠가 모든 관직을 상실해 버렸는데 - ”민주사회주의당”이라고 당명을 개정하였으며 '90. 5. 6에 비로소 최초의 자유선거, 비밀선거제도에 의한 인민의회선거가 실시되도록 결정되었다. 동독전역에 걸쳐 연일 일어나고 있는 군중시위대는 독일재통일의 가능성에 관한 테마가 점점더 전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12.19/20에 콜총리와 모드로 총리는 드레스덴에서 만났다. 드레스덴의 여성교회의 폐허앞에서 행한 콜총리의 연설에 수만명의 시민들이 환호성을 울렸다. '89.12.22 브란덴부르크 문은 다시 개방되었다. 성탄휴일과 연말연휴에 걸쳐 베를린시는 온통 잊지못할 감동적 장면이 전개되었다.
- o 신년도를 접어들어 동독의 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경제상태는 절박해질대로 절박해졌으며 국가의 권위는 실추되어 버렸고 물질공급상태는 악화되어갔다. 고위직의 직권남용과 부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점점 새롭게 그리고 국가보위부 슈타시의 조작내용에 관한 새로운 세부사항이 점점더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출국여행자의 숫자는 재삼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1.15 시위대는 동베를린에 있는

국가보위부 본부를 점거해 버렸다. 바로 이날 라임치히에서는 150,000명의 군중이 "통일조국 독일"과 "우리는 한 국민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독일의 재통일을 촉구했다.

- o 모드로 총리는 과감하게 정면도전을 감행하였다. 그는 야당대표들을 규합, "거국적 책임정부"를 구성한 후 "통일조국 독일"이라는 모토를 사용하면서,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회담한후 그의 계획을 제시하였는 바, 이 계획에 의하면 단일한 독일국가에로의 중간단계로서 "독일 국가연합의 형태 또는 독일 연방의 형태"를 거친다는 것이었다. 인민의회 선거일은 3.18일로 당겨졌다.
- o 사태의 진전속도는 점점더 가속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태들은 모든 사전계획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는 바, 예정기일은 결정되자마자 다시 폐기되어 버리는 것이 당시 몇개월간의 특징으로서 전혀 사태를 예상할 수 없었다. 11월말에 공표된 콜총리의 10대방안 마저 - 처음에는 우방국은 물론 적국들마저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긴 했지만 - 중첩되는 사태의 진전으로 더이상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 o 2.10 콜총리와 쾨서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대통령으로부터 독일사람들이 한국가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결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는 그의 약속을 받아주게 되었다. 즉, 독일문제는 "통합유럽의 형성과 동.서관계의 전체적 과정속"에 굳게 자리잡아야 한다는 사실에 합의점이 모색된 것이다.
- o 그 3일후 모드로총리는 본으로 찾아왔다. 양측은 통화통합과 경제공동체 준비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으나 모드로총리는 급속한 통화통합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o 서독의 모든 정상급 정치가들이 동독의 선거전에 참여하였다. 콜총리는 3.14 라임치히의 300,000만 군중앞에서 마지막 선거유세를 통해 신속한 동.서독간의 통화통합, 경제통합, 사회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와 동시에 콜총리는 폴란드 서부국경의 지속적인 보장에 관한 확언을 재차 강조하였다. 바로 이날 본에서는 독일통일의 외적측면을 해결할 4대 전승국과 동.서독간의 "2 + 4" 회담의 준비회담이 개시되었다.

- o 동독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90. 3.18 자유선거는 예상을 뒤엎고 기민당, 독일 사회연맹, 민주동진당으로 구성된 "독일동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 이후 수주일안에 동독 기민당수 로타 데메지에는 기민당, 독일사회연맹, 민주동진당, 사민당, 자민당으로 구성된 대연정 구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자신은 동독 총리로 선출되었다.
- o 동독의 민주정부와 서독정부는 90년 여름중에 경제통합, 화폐통합, 사회통합을 실현한다는데 양측 공히 합의하였다. 동.서독 정치가들중 점점 많은 정치가들이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동독의 서독에의 가입을 통한 통일독일의 조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와 같은 가능한 시점에 관하여 데메지예 총리는 "91년 가을"이라고 지칭했다.
- o 동독탈출 이주민수는 점점 지리멀려지면서 감소되었다. '90 한해동안에만 58,043명의 이주민이 서독으로 왔으며 3.15까지 이주민수는 141,772명에 이르렀으나 (동독 인민의회 선거실시전 한주일동안만도 약 12,000명),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 o 6월초까지 동독을 떠난 사람은 모두 184,361명에 달했다. 동독의 신정부 출현과 독일통일이 실현되리라는 현실적인 가정하에 동독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난 고향에 머물고자 하는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되었다. 4.24 본에서 개최된 골총리와 데메지예 총리간의 업무회동에서 '90. 7. 1에 경제통합, 화폐통합, 사회통합에 단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 o 5.6에 실시된 최초의 동독 지자단체 선거에서는 기민당이 경미한 약세를 보인 이외에 거의 지난번 인민의회 선거와 비슷한 결과가 반영되었다. 동독 지자단체 선거 전날 본에서는 외무장관 차원의 "2 + 4"회답이 개시되었다. 5.16 본에서 회동한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독일통일기금" 조성에 합의하였다. 즉, 90. 7. 1부터 '94.12.31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동독에게 1,150억 DM을 사용할수 있도록 준비하며 그중 220억 DM이 90년도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 0 이와 같은 독일통일기금과 병행하여 신탁청 역시 공법상의 특수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었다. 신탁청은 동독에서 그때까지 "인민공유 기업"으로 되어있던 약 8,000개의 기업체를 각각 그 경제적 창출능력에 따라 사유화하거나 정비하거나 폐쇄한다는 엄청난 임무를 갖고 있다. 그 이외에 유럽개발계획 (ERP)의 프로그램으로부터 기업신설 및 자영업신설을 위한 융자와 현대화 투자를 위한 융자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융자액은 현행연도에 여러번 증액되었다.
- 0 5.18, 테오바이겔 연방재무장관과 발터 롬베익 동독재무장관은 헬무트 콜총리와 로타 데메지에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총리공관인 팔레샤움부익궁의 초대총리 콘라트 아데나우어가 사용하던 책상위에서 동.서독간 국가조약에 서명하였다. 헬무트 콜총리는 "자유스럽고 통일된 독일이 출생되는 시간"이라고 말했으며 로타 데메지에총리는 "우리들과 너희들, 이쪽과 그쪽, 서독사람과 동독사람과 같은 용어는 하루빨리 언어사용상 사라져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 0 국가조약과 함께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 환경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평준화への 첫걸음이 내디뎠다. 그 이후 수주일동안 서독에서는 국가조약 세부사항에 관한 국내정치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와 동시에 동.서독에서는 제1차 전독총선에 관한 시기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 0 헬무트 콜총리는 성공적인 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독일통일의 외적측면이 가을까지 해명될 것이라는 그의 공고한 확신을 얻은후 6.9에 전독총선을 12.2에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는 바, 이 기간은 구서독의 독일연방의회 선거로 예정되었던 기간이었다. 그 2주일이 지난후 동.서독 사민당 역시 90.12월중에 전독 총선실시를 주장하였다. 국가조약은 서독정부와 야당간의 협의를 거친후 6.21 독일연방 의회의 절대다수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바로 이날 동독인민의회 역시 국가조약을 최종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날인 6.21 동.서독의회는 오더나이센션을 폴란드 서부국경으로 최종적으로 인정할 것에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 o '90. 7. 1. 화폐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은 그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동독에서는 독일 마르크를 손에 쥐기 위해 일요일이었던 7.1 밤에 이미 10,0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베를린의 알렉산더 광장에서 은행문이 열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서독 마르크의 교환율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76. 7. 1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서는 2,000 DM, '31. 7.2부터 '76. 7. 1간에 출생한 사람은 4,000 DM, 그 이전에 출생한 늙은 사람들은 6,000 DM까지 1:1로 교환할 수 있었다. 이 이상에 달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2:1의 환율이 적용되었다.
- o 국가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그때까지 수행되던 동.서독 국경상의 검문도 폐지되었다. 그날 자정을 기해 독일인들은 동.서독간 국경과 동.서베를린간의 국경의 어떤 통과소도 하시를 막론하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89.11. 9 장벽이 개방된지 꼭 233일 경과되었던 것이다. 40년동안이나 유럽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동.서군사블럭이 증무장하고 대치하던 "세계에서 가장 위험스럽던 국경"은 겨우 8개월만에 정치적 기적으로 돌변하였는 바, 그야말로 인간의 꿈이 현실로 되어버린 것이다.

2.2 통일에의 길 - 통화통합과 외교정책적 정착

- o 국가조약과 통화통합, 그리고 폴란드에 대한 국경보장에도 불구하고 90년 중반까지 독일 통일에의 마지막 초석은 세워지지 않았다. 아직도 새로운 통합통일의 미래의 유럽이라는 설계도에의 정착은 완벽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단 몇개월동안에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일어났다. 즉, 1년전까지만해도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승국들이 합의했던 알타체제가 그토록 평화적인 합의에 의해 철폐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 o '89.12초 조지 부시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몰타회담을 진행할때만 하더라도 두개의 독일이라는 분단국가성을 철폐한다는 것은 유럽안정에 저해를

초래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동안 소련의 입장이 특히 2월중 콜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으로 명확하게 되었듯이 결정적으로 변화되기는 하였지만 미래의 독일의 동맹소속 관계는 계속 미해결 상태였으며 걸림돌이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 o 콜총리와 겐서외무장관이 우방국과 동맹국의 우려와 유보를 대체적으로 경감시킬수 있었음에도 - 콜총리는 부시대통령을 "우리독일을 위한 행운"이라고 공공연하게 역설하였음 - 불구하고, 그리고 콜총리와 겐서외무장관의 끊임없는 여행외교와 대화외교가 - 6월말/7월초 더블린의 EC 정상회담, 런던의 NATO 정상회담, 휴스턴 G7 회담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명백한 결실을 거두기는 했지만, 아직도 독일통일을 위한 한개의 열쇠는 모스크바에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은 6월초 조지부시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간의 워싱턴 회담에서 보여주었듯이 방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의 동맹소속 문제에는 아직도 심대한 견해차가 있었다.
- o '90. 7.16 콜총리는 겐서외무장관과 바이켈 재무장관과 함께 모스크바로 여행했다. 모스크바에서의 회담과 고르바초프의 고향인 코카서스에서의 회담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회담결과는 기대를 훨씬 초월한 엄청난 것이었다. 즉, 그 내용은 독일통일의 달성과 함께 독일전체와 베를린에 대한 4대 전승국의 권한과 책임은 종료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일과 함께 독일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며, 독일은 어느 동맹체제에 소속할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로써 콜총리는 통일독일이 NATO 회원국으로 잔류할 수 있다는 그의 확신에 조금도 의문의 여지를 갖지 않게되었다. 소련은 3-4년안에 동독주둔 소련군을 철수하게 될 것이며, 통일과 즉시 동독지역에는 NATO에 소속되지 않은 독일연방군 예하부대가 주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군의 철수이외에도 동독지역에는 외국군이나 핵무기는 주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일독일의 병력수는 3-4년안에 370,000명으로 감축시키며 통일독일은 화생방 무기의 생산, 보유, 사용을 사양하며 확산금지조약의 가맹국으로 잔존한다는 것이다.

- o 코카서스의 중대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콜총리는 동맹국들에게 회담결과를 보고하면서 서독은 결코 독자노선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독일통일과 유럽통일은 상호 분리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강조하였다. 전세계의 옴서버들은 콜총리의 모스크바 방문 (코카서스 회담 지칭)을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모두 전후체제의 종결, 냉전의 종결, 독일통일을 훨씬 초월하는 유럽전체의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을 열망하였다.
- o 이로써 독일통일에 관한 모든 외교정책적 문제에 궁극적인 방법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90. 9.12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서독, 동독의 외무장관들은 "2+4"회담의 최종본서에 서명했다. 이 조약에는 기존국경의 불변성을 확정하면서 통일독일의 국내외적 완전주권을 부여하므로서 45년간에 걸친 전후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90.10. 3 독일통일의 완성되는 길은 열리게 되었다.
- o 독일과 소련은 소련군의 동독지역 주둔에 관하여 2개의 조약으로 규정하였는 바, 이는 '94년말까지 소련군의 완전철수와 이에 연계된 재정적 문제점에 관한 것이었다. '90. 9.13 겐서외무장관과 에두아르 세바드로나제 소련외무장관은 각 분야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비롯하여 무력사용 금지 및 영토에 관한 권한주장을 사용하겠다는 방대한 독.소간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와 같은 "거대한 조약"은 7월중순 콜총리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코카서스에서 회담할때 합의하였던 것이다.
- o 독일통일 이후 국경문제 뿐만 아니라 미래의 독일-폴란드 관계의 중요한 분야를 다룰 독일-폴란드간의 조약체결을 주장한 독일측의 제안은 드디어 '91.7 독일-폴란드 선린.우호 협력 조약이 서명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나아가 독일-폴란드 청소년 기구에 관한 협정, 지역간 협력 및 국경지역 협력에 관한 합의, 독일-폴란드 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것이 체결되었다.
- o '90.11.19-11.21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CSCE 34개 회원국 정상회담과 더불어 지난 수개월간 유럽의 외교적 변천사에 종지부가 찍혔다. NATO 가맹국과 바르샤바조약 기구간의 무력사용 금지선언은 냉전을 종식시켰으며, 빈에서 서명된 유럽 재래식 전력감축 협정 (VKSE)과 더불어 유럽최초의 재래식 무기체제에 관한 광범한

군축이 성사되었다. "새로운 유럽헌장"에 서명한 모든 참가국의 대표들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존중, 완전한 시장경제라는 가치공동체에 헌신할 것을 약속하였다. 파리헌장은 "민주주의, 평화, 통일의 새로운 시대"라는 21세기 유럽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던 것이다.

- o '90년 여름의 동베를린과 본은 국내정치적으로 볼때 선거전과 동독의 서독에의 가입시기를 비롯하여 최초의 전독선거를 둘러싼 의회진출 차단 조항과 연합공천과 같은 것들이 주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전독총선이 더이상 불가피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지자 사회 각층은 그들이 차지할 몫을 냉철히 계산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동독의 대연정은 한주일에 걸친 논쟁끝에 8.19일 드디어 내각이 해산되고 말았다.
-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결단은 속속 취해졌다. 7.22 동독인민의회는 52년 동독공산당이 철폐시킨 주정부를 재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중앙집권적으로 통치되던 동독은 연방식으로 분할된 연방국가로 변천되었다. 10.14에 메클렌부르크 포퓰먼주, 브란덴부르크주, 작센 안할트주, 튀링겐주, 작센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실시될 것이 결정되었다.
- o 8.2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내무장관과 귄터 크라우세 동독 내무부 국무차관은 동베를린에서 동.서독간 선거협약에 서명하였다. (이 선거협약은 연방의회에 의해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고려에 따라 판결문을 통해 변경 - 50% 의회진출 차단조항의 동.서독 지역 분리적용, 구동독지역에 경쟁정당의 연합공천 허용 - 되었음). 8.18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대통령은 독일연방 관보의 공지사항을 통해 '90.12.23 최초 전독총선일로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했다.
- o '90. 8.23 동독 인민의회는 야간특별회의를 거쳐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동독의 서독에의 가입을 '90.10.3로 결의하였다. "방금 의회는 10.3자로 동독의 소멸을 결의했다"고 동독 공산당 후계정당인 민사당의 그레고 기지당수가 비아냥 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환호에 넘치는 만세를 열창해 대조를 이루었다.

- o 독일통일이 단 몇주일전까지만 해도 그저 가능하려니 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르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외교정책적 과정상의 상례를 초월하는 역동력 뿐만 아니라 동독내 국내정책적 상황에도 기인하는 것이었다. 동독의 경제적, 사회복지적, 정치적 구조가 붕괴되는 정도와 꼭 마찬가지로 신속한 결단을 취하라는 압력이 동독인민의회 의원들에게도 내려졌었던 것이다.
- o 동독이 서독에 가입하기 33일전인 8.31, 쇼이블레 연방내무장관과 크라우세 동독 국무차관은 동베를린의 운터덴린덴 필레궁에서 동.서독 통합조약에 서명하기 위하여 회동하였다.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통합조약은 일련의 별첨문서와 함께 동독의 가입과 연계된 문제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에는 베를린을 동독수도로 할 것 등이 결정되어 있다. '90. 9.20 통합조약은 독일 연방의회와 동독인민의회로 부터 결의에 필요한 2/3 지지를 받았다. 그 다음날 독일 연방 상원 역시 비준법안에 동의하였다.
- o 시민당과 기민당이 각각 전독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도중 (자민당은 이미 '90.8에 통합전당대회를 수행)에 동독은 국제무대로부터 물러나기 시작했다. 동독은 9.24 바르샤바조약 기구로부터 탈퇴하였으며, 10.2에는 동독인민의회가 해체되었다.
- o 10.3을 기해 그 전날밤 수십만 군중들은 베를린 제국의사당 앞에 모여 축제를 올렸다. 자정을 기해 자유의 증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흑.홍.황색의 독일 국기가 계양되었다. 드디어 독일은 통일되었다.
- o 독일전역에 걸쳐 사람들은 폭죽을 터뜨리면서 노상에서 축제를 벌였다.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거행된 경축행사에서 바이체커 대통령은 "처음으로 우리 독일인들은 유럽의 의사일정에 쟁점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통일은 그 어느누구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라 평화스럽게 합의된 것이다. 독일통일은 전유럽 역사 과정의 일부로서 각민족의 자유와 우리 유럽대륙의 새로운 평화질서의 목표의 일부이기도 하다. 우리 독일인들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억압과 전제를 반대하고 봉기했던 동독의 독일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콜총리는 ”이제부터 독일이 경제적으로 사회 복지적으로 가능한한 신속하게 통일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요구되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선언하였다.

- 0 국가적 통일의 성취는 단지 모든 후속조치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적통일이란 경제적, 사회복지적, 생태학적 조건의 단계적 균일화와 능률적인 법치국가 제 기관의 구축과 공통된 문화적 유산의 보전을 가능케 하는, 즉 모든 독일인들의 평준화된 생활상태의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0 그러나 40년간에 걸친 동독 공산당 통치가 공공분야와 사생활 분야에 남겨놓은 잔재는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질서가 신설연방주에 아무런 준비없이 엄습해 왔다하더라도 너무 깊은 것이었다. 그리고 동.서독이라는 독일의 공동성장은 결코 물질적 문제만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었다. 상이해져버린 생활습성, 문화영역과 사회영역의 상이한 요구사항, ”사생활에 있어서의 조그만한 지하경제”와 같은 전연 다른 생활 체험과 같은 것은 서로의 이해를 요구하며, 또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의식적인 단절 등 상호 존경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 0 물론 법률질서는 약간의 부수적 예외를 빼고 연방전역에 걸쳐 단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90. 7. 1자 급속한 통화통합, 경제통합, 환경통합, 사회통합의 도입은 독일전역에 걸친 평준화된 생활수준의 초석을 세웠던 것인데 동독출신 이주민의 끊임없는 물결을 막아버리는데에만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구호 : ”도이체 마르크가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이체 마르크를 찾아가련다”). 그리고 동독사람들은 그토록 선망하던 서독마르크만 받아권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단숨에 사회복지적 시장경제가 적용되었으며 사회복지적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와 함께 구서독 지역과 동일한 노동법 질서의 기본원칙이 도입되었다. 그때부터 사회복지적 시장경제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조성되었다. 사유재산제도,

자유스런 가격형성, 영업자유, 재화와 자본과 노동의 자유스런 교류, 시장경제 제도에 부응하는 조세제도, 재정제도, 예산제도, 농업의 EC 농업 체제에의 단계적 접합 등이 도입되고, 동독은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서독제도에 준하는 연금보험, 질병보험, 실업보험, 사회부조규정을 도입하였다.

- o 이와 같은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던 가는 국가적 붕괴가 달성된 몇개월후에나 비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멘콘 시장의 전면적인 붕괴는 구인민공유 기업체의 고객이었던 수출시장을 박탈해 버렸고 동독의 생산품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었다. 심지어 양질의 상품마저 그 생산에는 장기적으로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기업체가 폐쇄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 o 대부분 대규모 기업에만 집중하였던 동독의 국영기업체는 대체적으로 낙후되었다. 현대적 경영방법은 공해방지에 적합한 생산방법처럼 거의 도입된 바가 없었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정화시설이 없이 도시에 텅비어 있는 주택, 쓰러지기 직전에 처해있어 수리와 보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건물, 형편없는 에너지. 급수 공급관, 불충분 상태의 전화와 커뮤니케이션, 예상을 훨씬 초월하여 오염되고 파손된 자연환경 등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 o 그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분야에 걸쳐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다. 공공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무엇보다도 사법기구 전체에 걸쳐 과거 국가보위대에 밀고와 비방을 통해 봉사하던 자들이 곳곳에 있었다. 고난스러웠던 가혹행위, 부역으로 유죄판결된 사람들, 구금되었던 사람들,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들, 인생의 계획과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과 복권은 불편부당한 법원조직과 검사가 충분히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 o 냉철하게 관찰해 볼때 연방정부와 구서독의 연방주들은 구동독지역의 경기부양이 달성될때까지 다년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90년도에서 3회에 걸친 추가 경정 예산이 결의되었다. 10.3 통합조약의 발효와 함께 동독의

부분예산은 '90년 하반기 연방정부 예산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이 곧 제1차 전독예산이 되었다. 수요증액의 대부분은 신설연방주의 사회 보장보험에 할당되었으며 그 이외의 중요분야로서는 산업촉진, 주택현대화 프로그램, 소련군 철수지원 등이었다.

0 막대한 재원이 환경보호에 흘러들어가고 있다. 동독은 이미 국가조약과 함께 서독의 주요 환경보호규정을 유효법률로서 인수하였다. 동.서독 환경통합은 "환경보호 총괄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바, 이 법률 역시 동독인민의회의 결의에 따라 '90. 7. 1자로 법적효력을 얻게 되었다. 이 법률에는 유독성가스 방출보호, 핵에너지, 방사능 보호, 수력산업과 폐기물 산업, 화공약품법, 자연보호, 새로운 계획에 대한 검토 등이 내포되어 있어, 이 법률에 따라 동독에서는 서독에서 적용되는 고도의 안전규정과 환경보호 규정에 부응하는 공장이나 시설만이 가동될 수 있다.

0 이와같은 것은 신설연방주의 환경상태가 경제상태 못지않게 파국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매우 긴급히 필요한 것이다. 사회복지적 시장경제의 빠른 구축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은 더이상 환경을 훼손하며 발전해가는 "싸구려 나라"가 되지 않아야 되며, 인간은 발전에 따르는 환경적 부담을 결코 면제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다시한번 해야 한다. 2000년까지 구동독지역을 구서독지역의 높은 수준으로 올려 놓는 것이 그 목표이다. 동독의 긴급한 환경잔재 총정비는 90년도에 공기오염도, 적치장, 토양오염, 하천오염에 관한 잔재의 광범한 조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파일럿 프로젝트와 함께 착수되었다.

0 '90년 여름이래 농업분야 역시 많은 문제가 있다. 서방측으로부터의 수입을 통한 경쟁력의 증가,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되던 국가지원제도의 철폐로 인하여 동독의 농산물 국내시장은 잠정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다. 통화통합과 경제통합의 실시와 더불어 그때까지 국가가 책정해 놓았던 고액의 농산물 생산원가는 아무런 판매시장에 대한 보장없이 하락해 버렸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기업체는 전반적으로 지불 불능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농업경영인과 농업생산분야의 종사자들중 대부분이 "농장의 완전 매각"에 반기를 들고 시위에 돌입하였다.

- o 데메지에 총리 집권시에 급성적 판매애로에 따른 악영향을 우선적으로 극복 지원하고자 16억 5,000만 마르크의 차관이 허용되었다. EC 각료이사회는 8. 1부터 동독의 모든 농산물이 일단 EC 위생규정에 부응한다는 조건하에 무관세로 모든 회원국으로 수출할 수 있음을 결의하였다. 그동안 농업현황은 매우 호전되었는 바, 이는 "내고장"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증가함으로써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 o 전반적으로 볼때 엄청난 문제점 해결을 위한 90년도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노동 시장에 관한 반갑지 않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과가 잇따랐다. 각종 이니셔티브, 국가적 지원, 자영농장 경영에의 용기와 더불어 90년도에만도 25만개 이상에 달하는 새로운 기업이 신설되었으며, 약 50만에 달하는 새로운 직장이 조성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대대적인 구조변천은 구동독지역이 매우 긴급하게 필요하는 것이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생산적인 직장이 사라지는 속도만큼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직장이 그리 신속하게 조성되지 않음은 자연적인 이치라 하겠다: 연방정부는 실직수당, 구서독지역에서 적용되는 것 보다 훨씬 유리한 단축조업에 관한 규정, 직업전환교육, 광범한 직업승진교육 및 직장내 승진교육, 신설연방주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매우 유리한 직장조성대책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
- o 이미 90년도의 서독마르크에의 전환으로 신설 연방주의 가정예산의 실질소득이 증가되었다는 사실 역시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임금과 연금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구동독지역 가정경제의 재산을 올바르게 보았을때 비로소 그들이 노력하여 쌓아온 돈과 재산으로 분자 그대로 처음으로 무엇인가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 o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우려와 문제점, 그리고 아직도 지지부진한 사회주의 잔재의 척결 때문에 헝가리 정부의 국경개방 조치로부터 동독이 달성되기까지 수개월간에 세계역사상 유일무이한 평화혁명을 성취했던 동독사람들이 추구한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욕구였다고 쉽게 망각되어 버리고 있다. 그것은 자유에의 열망이었고 검열이나 감독이 없고 조롱과 밀고가 없는 인생살이에의

동경이었으며 장벽과 철조망과 사격명령이 없는 자기결정에 의한 인생의 동경이었다.

- 0 즉, '90.10. 3이야 말로 단순히 성취된 것에 대하여 환호만 할 날이 아니라 희생자를 추모해야 할 날이요, 40년간의 쓰라린 불법이 횡행하는 가운데 수많은 개인의 운명이 파멸되어 버린데 대한 총결산이 필요한 날이기도 하다. "독일통일의 날"에 즈음하여 행해진 바이체커 대통령과 콜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가들의 의미심장한 연설문에는 이와 같은 관점이 표현되어 있다.
- 0 이와 같은 근거하에 10.3 바이체커 대통령은 강요된 부자유와 거짓을 회고하면서 "지난 수십년간에 걸친 가장 악랄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간의 가장 고귀한 재산인 진리에의 자유를 자신의 용기와 함께 봉기하여 쟁취하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구서독지역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시험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단지 존중하면서 통독과정에서 실증해 보일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경로의 과정에서 가장 요구되는 말은 "독일내 모든 사람들은 서로 연대의식을 지녀야 한다는"것이다.
- 0 그러나 독일인들이 어떻게 상호 교분을 나누는가라는 사실은 우리 독일의 미래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공동성장의 성공내지 실패 여부는 독일을 훨씬 초월하는 파급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더이상 국경이 불필요하고 제한 조치가 무의미하게 되는 새로운 유럽의 형성에 연계되어 있다.
- 0 주권국가 독일은 미래에도 정치적 책임을 더 많이 떠맡아야 한다. "독일은 우리의 조국이다. 통일유럽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통독의 날 90.10. 3 콜 총리는 복음을 전파한 바 있다.

3. 요약

- o '90. 7. 1을 기해 통화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을 단행하기로 한 독일연방정부의 결단, 그리고 그 3개월후에 독일통일이 성취되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다. 심지어 비판자들은 이와 같은 정치적 결단성은 물론 경제적 결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가지 문제제기를 통해 연방정부는 더욱 책임이 막중해 졌다. 그러나 독일을 동서로 가로 지르고 있는 화폐경계와 경제경계가 통일이전에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았다.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해 볼때 당시 서독마르크의 단계적 이전, 경제적 통합의 점진적 추진을 주장하던 모든 건의는 아무런 결실을 볼수 없었을 것이다.
- o '90. 초 구서독 연방주로 이주하는 구동독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자 통화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은 자체결정, 자체발의, 경제적 상승, 사회적 안전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복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것은 엘베가과 오더강 사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부터도 폭같이 이해되었다.
- o 서독마르크와 사회복지적 시장경제의 급속도입으로 일부 적응과정상의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분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통화통합이 실시된지 15개월, 국가적 재통일이 달성된지 12개월이 지난 바로 오늘날에도 그 당시의 정책을 현실적으로 대처할 만한 대안은 전연 찾아볼 수 없다. 불가피한 구조변천은 단지 더 오랜시간만 요했을 것이며, 이주로 인한 구동독의 인구감소 현상은 계속 진행되었을 것인데,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망각해서도 안될 것이다. 최초의 자유선거에 의해 동독정부가 구성되도록 지지했던 동독 사람들은 통일을 원했는데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달성될 것을 원했다. 따라서 작년 여름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는 동독이 해체되도록 조성되어 갔다.
- o 이와 같은 원천적인 정치변혁은 - 우리는 '89. 가을이래 그 증인인 바 - 50년대에 그 초석을 공고하게 했던 콘라드 아데나우어의 정책이 우리 독일인에게 올바른

정책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아데나우어의 정책은 곧 독일통일과 유럽통일이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부단하게 확신케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자유스런 통일독일과 자유스런 통일유럽에 대한 전망이었다.

- 0 이와 같은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2년전까지만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독일통일은 동서를 막론한 독일의우방, 파트너, 인접국 모두가 동의하는 가운데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독일통일의 구조는 중유럽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에게 결코 있어 본 적이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기회를 수수방관만 하고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만저만한 실수가 아니었을 것이다.
- 0 동독 공산당 정권하에서 물질적 궁핍을 비롯하여 국민경제적 저력과 환경에 대한 훼손이 그토록 심각했던 것과 전연 다름없이 감내할 수 없던 국가의 임의 처분, 밀고, 우선권 부여를 통한 인간의 부담감과 개인적 자유의 박탈, 그리고 모든 창의성, 발의성, 능력 발휘 상태의 말살 역시 매우 심각했다. 공산통치의 증식과 '90. 3.18 58년만에 실시된 최초의 자유선거, '90.10. 3의 재통일과 함께 부자유와 불법 및 국가적 자의 행동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 0 오늘날 독일에서는 자유와 인권이 자명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동독 지역 사람들이 과연 오늘이 호네커시절보다 더 나아졌는지에 관한 문제제기를 일삼는 대부분 비평가들은 공공연하게 시종일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해 버리지, 되찾은 자유와 권리는 약삭빠르게 못본척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지 않을 수 없다. 즉 순수한 물질적 상태 역시 이미 분명하게 개선되었다. 근로자가계와 연금수령자 가계의 소득과 구매력에 관련된 수치가 바로 이를 명확하게 역설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진부한 표현을 빌어 보자면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구동독지역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하겠다.
- 0 실업에 당면한 사람들, 실직의 공포에 직면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사회복지적 시장경제의 생활조건과 불안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적 숙명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신설연방주 대다수의 현황보고서가 어느정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40년간에 걸친 사회주의적 통제정책, 상반된 동.서독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상태의 결과를 순식간에 없었던 사실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 0 독일연방정부는 경제적 구조변천 - 이미 "구조혁명"이 되었음 - 에 따르는 불가피한 부수결과를 완화시키고 사회복지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구성되도록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닥아올 수년간 신설연방주에 초현대적 인프라스트럭처가 생성될 것이나, 이와 같은 전망이 잠정적이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큰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 0 그리고 독일인의 공동성장 과정에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연방정부는 물론, 신탁청과 기타 여러기관도 결코 참여가 부족해서는 안될 일임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통일을 위한 재정지출의 정도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신설연방주의 어마어마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아직도 실행되고 있는 것은 적다고 말하고 있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 0 또다른 비판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현재 동.서독일 지역에 상당히 존재한다. 즉, 그들은 물질적 노력과 성과는 모두 감쪽같이 뒷전으로 제껴놓고 독일인들은 아직도 분리되어 있다느니 또다시 분리되었다느니 이제 드디어 남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불만만 토로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오히려 조성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머리속에 새로운 장벽을 구축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40년간 이상에 걸쳐 정신적, 문화적, 비물질적으로 분단되었던 동.서독을 통합한다는 것은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통일의 달성보다 훨씬 어려운 임무이며,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다.
- 0 콜총리는 지난 수개월동안 여러가지 충분한 이유로 이와 같은 맥락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 바 있다. 괴얼리츠, 라임지히, 드레스덴, 츠빅кау, 브란덴부르크 등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십년간에 걸친 가지가지 상흔을 안고 있으며, 학교와 직장

등 인간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무소불위의 국가보위부(Stasi)가 그들의 인격을 박탈해 버렸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처가 아물때까지 그리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마지막 잔재가 제거되기까지에는 수년간이 흘러야 될 것이며, 독일인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함께 극복하였을 때에야 비로서 민족의 통일은 완성될 것이다.

- 0 신설연방주의 자악 개발과 경제적 풍요, 그리고 사회적 안전의 확보는 초석은 세워졌다. 이제부터 용기있게 계속 구축해 나아갈 것만이 남아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는 유럽공동체의 다음 단계인 '92년말의 공동시장 형성과제가 남아 있으며, 경제통합 통화통합과 나란히 정치적 통합이 따를 것이며, 중유럽, 동유럽, 남동유럽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는 등 유럽의 궁극적인 통합이란 과제가 남아 있다.
- 0 이제 겨우 12개월동안 한나라안에서 다시금 함께 살게된 독일인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그 어느 기성세대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화와 자유의 완벽한 생활을 영위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화합과 통일의 유럽이라는 전망은 조만간에 실현될 것이다.

독 일 은 하 나 다

(통합조약 및 부속문서 해설자료)

본 보고서는 독일 공보처가 통합조약 및
그 부속문서 규정을 알기쉽게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발행한 책자
"Deutschland ist eins"를 번역한 것임.

통 합 조 약

독일은 하나다

연방정부 공보처

독일은 하나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국가적 분단이 끝났다. 통일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국가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독일 양쪽 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이 표현된 것이다. 독일인들이 가졌던 민족의 통일성(Einheit der Nation)과 하나임(공속감 Zusammengehörigkeit)에 대한 인식을 40년 넘게 변함없이 강력하였다. 1989년 가을의 평화(봄고도), 민주(적이었던) 혁명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동독에 살아온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분단을 극복하였다. 독일땅에서 일어난 최초의 평화적 혁명이 베를린장벽과 양독간의 국경을 열었다. 이것은 전유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후 가능하였다.

"우리는 국민이다 - 우리는 한 국민이다."

이 자유를 향한 외침이 동독공산당(SED -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독재의 종말을 가져왔으며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하였다. 지금까지의 동독에 살아온 독일인들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의 손에 거머쥐었다. 그리하여, 분단된 조국의 양편에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그를 위하여) 투쟁하고 (그 때문에) 고통을 겪어온 그것이 실현될 수 있었다.

1989년 11월 9일의 평화적 혁명에 이어 신속하게 1990년 3월 18일의 선거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동독안에 자유경선된 의회가 생겨났다. 1990년 7월1일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에 관한 양독조약'이 발효되었다.

지금까지의 동독의 인민회의(Volkskammer 동독국회)는 1990년 8월 23일, 1990년 10월 3일부(로의) 서독가입을 의결하였다. 1990년 8월 31일 베를린에서 통합 조약이 서명(조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4대 강대국 외무장관과 양독 외무장관은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독일통일에의 길을 활짝 열었다. 1990년 10월 3일이 독일통일의 날이 되었다.

서독(BRD - 독일연방공화국)과 지금까지의 동독 사이에 맺어진 독일통일에 관한 조약, 즉 통합조약은 이러한(동독의 서독에로의) 가입이 질서있는 궤도를 달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동조약은 독일의 국가적 통일의 완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독일전역에 통일적인(동일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목표에 가능한한 빨리 도달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동조약은 그토록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엄청난 극적 변화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팜플렛은 연방정부에서 특히 새(로 가입된) 주들과 동베를린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통합조약의 주요규정들을 파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독일민주공화국
국회의장

수신
(서독) 연방수상
헬무트 콜 박사

연방수상실
D-5300 본 1

베를린, 1990년 8월 25일

연방수상께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의 서독(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적용지역으로의 가입에
관한 1990년 8월 23일의 국회(인민회의) 의결을 전달합니다.

동의결은 CDU, DSU, FDP, SPD의 원내교섭단체의 공동제안을 심의한 결과입니다.
294명의 의원이 동의결에 찬성하였고, 62명의 의원은 반대, 7명의 의원은 기권
하였습니다. 400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363명이 재석하였습니다.

이를 개인적인 서신으로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비네 베르그만-폴 박사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적용지역으로의
가입에 관한 독일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의결
1990년 8월 23일

인민회의는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적용지역으로의 1990년 10월 3일부 가입을 선언한다.

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에서 출발하였다.

- 통합조약에 관한 심의가 동일자까지 종결될 것
- 2+4 협상이 독일통일의 외교적, 안보(정치)적 조건들을 규정하는 상태에 이를 것
- 1990년 10월 14일 주의회선거가 실시될 수 있을 정도로 각주의 구성이 준비될 것

위의 의결은 독일민주공화국 인민회의에 의하여 1990년 8월 23일 제30차 회의에서 행해졌다.

베를린, 1990년 8월 23일

독일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의장

베르그만-폴

내 용 (목 차)

국가질서

가 입

5개의 새주

국 경

수 도

기본법의 헌법적 사명(헌법위탁)

조약은 연방법으로 유지된다.

새 주들은 통합조약에 근거하는 제권리를 감시한다

장차의 헌법개정

연방법의 이입

동독법의 효력 존속

공용수용-미해결 재산문제의 규정을 위한 법률

유럽공동체법

(공)행정과 사법

공무 증사자

경 찰

직업공무원제도의 도입

동독공산당 정권과 국가보안부의 행위로 인한 희생자 복권

법원판결과 행정결정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사 법 (재판)

법 원

동독형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법 관

검 사

변 호 사

임신중절과 동성연애 행위의 처벌(가벌성)

혼인(법) 및 가족법

잉여공동제의 법정(부부) 재산제

이혼후 부양

친의 자에 대한 배려(친권)

사회보장금 조정

혈통관계법

친족부양료

자녀부양료

상속법

근

(병역의무자) 민간복무(비군사적 복무)

정 당

공공재정, 사유화, 경제장려, 농업경제

공동조세
대상세
"독일통일" 기금
(연방과 주의) 공동임무
지금까지의 동독재산의 분배
지금까지의 동독채무
재심조항
관세와 조세
철도와 우편
경제장려(조장)
농업

노동·사회

노동법질서

- * 해고(예고) 기간
- * 유일양육자에 대한 해고방지
- * 질병의 경우 임금의 계속지불
- * 최단휴가
- * (기업) 합리화시 (근로자) 보호협정
- * 광산에서의 공동결정
- * 단체협약
- * 사회적 근로보호
- * 기술적 근로보호
- * 법의 정비

근로장려/실업보험

- * 근로장려법률
- * 단축조업지급수당
- * 직장조성대책
- * 준양로연금
- * 근로자대여/불법노동
- * 자녀양육보조금

중장애자법

- * 부담조정공과금

의료보험

- * 조 직
- * 보험금부법규/추가납부금
- * 약
- * 의사회 치과의사의 의료수가
- * 외래진료소
-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간호

연금보험

- * 보험공단
- * 급부법규
- * 신규연금수령자의 신뢰보호
- * 재 활

재해보험

사회보장추가지급금

전쟁희상자원호/사회(생활보호)적 보상

재산형성(재형)

여성, /가족, 조건, 주택, 소비자보호

여성과 가족

- * 유아양육보조금 및 유아양육휴가
- * 자녀양육보조금
- * 사회부조
- * 복지사업단체

보건정책

- * 병 원

임대차법, 주거보조금, 주택건설

- * 임대차법
- * 주거현대화 프로그램
- * 주거보조금
- * 인민소유주택
- * 요양목적의 용익권
("주말별장" - "Datschen")

소유주주거용주택건축 목적의 토지사용권

소비자보호

환경보존/교통

환경보존

교 통

문화, 교육 및 학술, 체육

문 화

방 송

교 육

* 교육에 있어서의 재정적 보조

* 대 학

학술 및 연구

체 육

國家秩序

加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연방공화국 加入이 1990년 10월 3일부터 발효됨으로써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은 독일연방공화국의 州가 된다. 베를린 동서의 23개 區는 베를린 州를 형성한다.

5개의 새 州

5개의 새 州가 가입함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의 州 총수는 16개로 많아진다.

5개의 새 州는 주지사(Ministerpräsident) 선출시까지 연방참의원(Bundesrat)에서 심의권(beratende Stimme)으로 대표된다.

제11대 독일연방의회에 인민회의(동독국회)는 자기의 구성에 따라 잔여 입법기간(Legislaturperiode)을 위하여 144명의 의원을 파견한다. 1990년 10월 3일부터 그들은 완전한 권리를 가진 연방의회 의원이다.

國境

조약 전문(Prämbel)에 유럽에서의 국경불가침이 확정되었다. 통일독일에는 더 이상 미해결의 국경문제는 없다.

首都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이다. 정부와 의회가 그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전독입법자(der gesamte Gesetzgeber - 統獨議會)가 결정한다.

基本法の 憲法的 使命(Verfassungsauftrag - 憲法委託)

가입으로 인하여 새 州들과 동베를린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적용된다. 이것은 原則이다. 늦어도 199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상이한 기한의 과도기간에는 새 州들과 동베를린에서의 법이 기본법과 다를 수 있다.

독일의 統一과 自由를 완성하라는 기본법의 사명은 이제 완수되었으므로 삭제된다. 그 대신에 “따라서 이 기본법이 전체독일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확정적 규정이 삽입다.

條約은 聯邦法으로 유지된다

“조약은 가입 발효 후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라고 조약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연방의 입법자가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할 경우 영구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새 州들은 統合條約에 의거한 제법규(의 이행)을 감시한다

새 州들은 통합조약으로부터 나오는 제법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특히 지금까지의 동독이 국제법적으로나 지역단체(Gebietskörperschaft)로서나 亡하기(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장차의 憲法改正(Verfassungsänderungen)

2년 이내에 기본법의 개정, 보충 문제를 다루도록 통독의회에 권고되었다 이는 특히 聯邦과 州,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의 새로운 규정, 국가목표 규정(Staatszielbestimmung), 장차의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문제에 대하여 그러하다. 한 委員會가 이 문제들에 관한 진행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독일국민 전체는 자유로운 결정으로 기본법을 대신하는 새 헌법을 제정할 기회를 갖는다.

聯邦法の 移入(Überleitung)

통합조약이 그 부속문서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加入時로부터 새 州들과 동베를린에 연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장차의 전 연방영역에서 광범한 법동일화(Rechtsangleichung- 법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을 말함 - 譯者註)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의 동독의 법을 대체한다. 이는 5개의 새 州들과 동베를린에 긴급하게 필요한 투자결정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東獨法の 效力存續

통합조약에서 연방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합의되었다. 일부지역에서는 동독법이 연방법으로서 또는 州法으로서 적용된다.

公用收用(Enteignung) - 이해결 財産問題의 규정을 위한 法律

통합조약에 포함된, 이해결 재산문제 규정을 위한 법률은, 통합조약 제41 조를 통하여 마찬가지로 조약의 일부인 1990년 6월 15일의 양독정부 공동선명을 법률적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다. 따라서 동법률의 규정내용은 공동성명의 핵심가치에 따라야 한다:

점령법상의 또는 점령권력의 근거에 의한 收用(Enteignung)은(1945 - 1949) 취소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국가적 負擔調整給付(Ausgleichsleistung)가 규정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규정되어야 할지는 전독입법자(통독의회)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독건국(1949년 10월 7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다음 원칙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의 독일본단 및 그에 연결되어 있는 東에서 西로의 주민이동과 관련된 규정들에 의거한 收用은 원소유권자 또는 그의 權利承繼者(Rechtsnachfolger)의 신청에 따라 취소된다. 수익상태가 토지의채무초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토지가 收用, 소유권포기, 증여, 상속포기에 의하여 인민소유로 넘어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것이 적용된다. 返還讓渡(Rücküber-eignung)는 그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3자가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용익물권을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배제된다(예외: 1989년 10월 18일 이후의 토지양도는 선의취득의 경우에도 취소된다). 이러한 경우 원 소유권자는 원칙적으로 보상(Entschädigung)을 받는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반환양도를 청구하는 대신에 선택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원 소유자의 자유이다.

시민과 결사체(Vereinigungen)가 나치폭력지배기간(1933 - 1945)에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또는 세계관적인 박해에 의해서 당한 財産喪失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취소된다.

1949년 10월 7일 이후 국유화된 기업은, 그 기업이 현재의 형태에 있어서 국유화 시점에서의 기업과 비교될 수 있는 한, 원소유자 내지 지분참가자에게 반환된다. 이 때 재산상태 및 수익상태에서의 중요한 변경은 조정된다.

1949년 10월 7일 이후 시기로부터의 국가관리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폐지된다. 국가관리자 측에서의 합당한 경제운영 원칙의 중대한 침해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損害賠償請求權(Schadensersatzansprüche)이 있다.

반법치국가적 형사절차에서 선고된 財産沒收(Vermögenseinziehungen)에는 이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처분의 취소는 司法的 節次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약에) 규정된 유죄판결자 복권의 범위에서, 형사판결로 내려진 재산몰수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의 재산법상 청구권의 절차상 처리(Abwicklung - 청산)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賃借權(Mietrecht) 기타의 用益權(Nutzungsrecht)은 返還讓渡 내지는 國家管理取消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다. 권리자는 이들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임차인과 용익권자가 계약체결시에 선의가 아니었던 경우는 예외이다.

토지가 인민소유로 이행되던 시점에 이미 존재하였던 抵押權(Hypotheken) 기타의 物權은 다시 토지등기부(Grundbuch)에 등재된다. 나중에 설정된 건축저당권(Aufbauhypothek)은 권리자가, 해당 차입금이 가액보전적 또는 가액증가적 건축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인수한다.

법률에 따라 규정된 청구권에 관한 결정은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다. 미해결 재산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 앞으로 세워질 - 관서 내지 州관서가 권한을 가진다. 그들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수용당한 소유권에 대한 보상청구 또는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또 누구에 대하여 제기되어야 하나요 ?

1990년 10월 13일에 기한이 종료됩니다. 신청은 권리자가 최후에 살았던 地區의, 기타의 경우에는 재산소재지의 - 이전 동독의 - 지방행정청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누가 지금까지의 동독의 시민들에게 통합조약의 준수를 보장하나요 ?

새 州들이 이를 감시합니다. 그들은 국제법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동독의 주민들의 대리인입니다.

유럽共同體法

유럽공동체법도 개정된 내용, 보충된 내용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동독 지역에 이제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와 동시에 5개의 새 州들과 동베를린도 유럽공동체에 편입된다.

國際(法的)條約

독일연방공화국이 조약당사국인 국제법적 조약과 협정은, 조약과 협정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제부터 지금까지의 동독 지역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의 동독이 체결한 조약에 관하여는 “그것의 (효력) 존속, 적응 또는 소멸 여부를 규정 내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약체결상대국들과 협의한다고 통합조약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독의 국제법적 조약들이 일반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公)行政과 司法

새 州들에 행정(기관)이 독일연방공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성된다. 지금까지의 동독에 있었던 행정기구들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다. 이 (행정)기구들이 연방에서 수행될 임무를 수행해온 경우에는 최고 연방관청들 아래(지휘하에)에 놓인다. 이 최고 연방관청들은 절차적 처리(청산)를 규정하는 바, 즉 그 (행정)기구들의 존속 또는 해체 여부를 결정한다. 그외에는 공행정기구들은 그들이 소재하는 주의 규제 아래 놓인다. 연방과 지금까지의 州들은 새로운 주행정(부)구성에 行政應援(Verwaltungshilfe)을 한다.

公務從事者

지금까지의 동독의 공무수행기구에서 종사한 자들의 법률관계 규정을 위하여 두가지 원칙이 확정되었다: 존속해온 근로관계는 계속 되거나 또는 일단 정지된다. 人事問題(Personalfrage)의 해결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새 州들과 동베를린에서의 公務의 기능력(Funktionsfähigkeit)을 보전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지금까지의 공행정도 적절한 구조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인원감축(Personalabbau)과 연결되며, 이(인원감축)는 또 다시 사회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과규정은 양측 면을 고려하고 있다.

행정기구들이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 또는 州에 의하여 계속 운영되는 경우, 1990년 10월 2일에 공행정내에 있던 근로관계의 존속이 원칙적으로 정하여졌다. 그밖의 모든 경우에 근로관계는 휴직되며 - 이는 市邑面 또는 郡단위(Kreisebene)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6개월 후 내지는 50세 이상된 자의 경우는 9개월 후 종료된다. 이 기간중 공무종사자들은 지난 6개월간의 총봉급 평균의 70퍼센트의 월정 待機金(Wartegeld)을 받는다. 사용자는 공행정의에서의 고용에 필요한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을 장려한다.

그밖에도 정규적인 해고의 가능성이 있다. 해당 근로자는 待機金(과 같은) 액수의 과도기간보조금(Übergangsgeld)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인도주의원칙(인간성의 원칙) 또는 법치국가원칙을 위반하거나 國家保安部(da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를 위하여 활동하였고 그런 이유로 근로계약 존수가 기대불가능한 경우에는 무기한 해고가 고려된다. 항상(어느 경우든지) 개별적 심사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동독여권은 얼마동안 유효한가요 ?

길어야 1995년 12월 31일까지.

警察

경찰업무의 수행은 기본법의 헌법질서에 따라 주에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경찰업무와 경찰권한의 행사는 새 州들의 업무이다. 그밖에도 일정한 업무를 위임받은 연방경찰이 있다.

移徙는 申告하여야만 하나요 ?

그렇습니다, 새 주소지는 항상 市나 지방
자치단체(市邑面)에 신고해야 합니다.

職業公務員制度의 導入

새 州들과 동베를린에 헌법위임(Verfassungsauftrag)에 따라 공무원임용을 위한 법적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독일에서의 公務는 지금까지의 동독지역과 동베를린에서도 공무원(Beamten), 사무직원(Angestellten), 노동자(Arbeiter)로 구성된다.

장차의 공무원에게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가입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통합조약은 일정기한부로(공무원)경력법적인 적용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동독의 공행정에서 종사해온 공무원관계임용대상자들이 보통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력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조약의 공무원법적 규정은 종신직 공무원 임용 전에 공무원관계에서의 3년간의 시험임용기간(Probezeit)을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의 종료시에 시험임용기간에서의 검증여부(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이 입증되었는지)를 결정한다. 과거 해당직위에서 검증된 자(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을 입증한 자)가 시험임용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東獨共產黨(SED)政權의 犧牲者의 復權 / 國家保安部(Stasi) 文書

40년 동안 동독공산당정권은 시민들을 반법치국가적인 방식으로 박해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형사법적인 박해가 그러하였다. 단지 그들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 이 사람들의 복권은, 가능한 한에서 불법과 그 불법의 결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책적, 인도적, 사회적 견지에서 필요하다. 복권을 위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통일과 관련하여 가장 긴급한 과제에 속한다.

과거 국가안보기관의 문서를 장차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앞으로 제정될 利用者規程(Benutzerordnung)에서 정하기로 통합조약의 시행 및 해석을 위한 협정에서 확정하였다.

法院判決과 行政決定은 계속해서 效力을 가진다

(독일연방공화국에의) 加入이전에 지금까지의 동독의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에 의하여 동독공산당정권의 희생자의 복권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법원판결을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재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동독의 (행정)관청의 행정행위도 유효하다. 단, 그 행정행위가 법치국가원칙에 반하거나 통합조약 규정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司法(裁判)

기본법에 의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법치국가질서의 중요한 기둥중의 하나이다. 사법(재판)은 지시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오로지 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사법(재판)의 임무는 민사재판에서는 개인간의 분쟁을 결정해주고, 형사재판에서는 형벌여부와 형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기본법에 따르면 사법(재판)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모든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국가적 사법부의 재건은 통합조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속한다. 일정한 경과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사법권은 자신에서 비롯되는 법치국가적인 각종 보장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즉시 효력을 발한다. 이는 특히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타 중요한 절차법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는 독일연방공화국 형법전과 민법전의 移入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法院

기존의 郡法院(Kreisgerichte)과 地區法院(Bezirksgerichte)은 우선은 존속된다. 그들은 새 州들의 법원이 된다. 행정법상, 재정법상, 노동법상, 사회법상의 분쟁에 대한 재판은 이 법원들의 특별한 담당부에서 수행된다. 여기에 독일연방공화국 법관들이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지금까지의 동독의 최고법원들은 통일과 동시에 폐지된다. 지금부터는 연방의 최고법원이 전독일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

東獨刑事法院 判決에 대한 再審

地區法院에는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권한도 있다. 이러한 再審은 중대한 법률위반에 의거하거나 형벌선고에서 대단히 부당한 모든 형사판결에 대하여 가능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독자적인 신청권을 갖는다. 신청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法官

법관활동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법관이 되고자 하거나 법관으로 계속 있기를 원하는 자는, 의원들과 법관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Richterwahlausschuß)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그는 우선 단순한 일시적 법관(Richter auf Zeit)이 되거나 시험임용법관(Richter auf Probe)으로 임명된다.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후 종신법관(Richter auf Lebenszeit)으로의 임용여부가 결정된다.

檢事

최고법원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동독의 檢事長(Generalstaatsanwalt)도 그 활동을 마감한다. 장차 5개의 새 州 각각에는 州法務長官 산하에 검사장이 있게 된다. 그 휘하에 地區法院 검찰관이 있고, 郡法院 검찰관 - 구성될 경우 -이 있다.

辯護士

증대되고 있는 법률자문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수적으로 충분하고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하다. 5개의 새 州와 동베를린에서의 변호사 허가는 새로 제정될 변호사법에 따른다. 그러나 통합조약에, 독일연방공화국 변호사와 지금까지의 동독의 변호사가 상호동등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연방공화국 변호사는 5개의 새로 가입한 州들과 동베를린에 거주를 정할(주거와 법률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그 역도 가능하다. 그러나 - 지금까지의 동독에서 전에 그랬던 것처럼 - 민사분쟁, 혼인관련사건 및 가족관련 사건(즉 人事事件의 경우를 말함 - 譯者註)에 있어서는 郡法院에서의 소송의 경우 변호사강제주의(Anwaltszwang: 簡易事件을 제외한 通常의 事件에서 반드시 辯護士를 選任하여 訴訟을 代理케 하는 제도 - 譯者註)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區法院에서의 소송의 경우에만 당사자는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

姙娠中絶과 同性戀愛行爲의 處罰(可罰性)

통합조약은 刑法과 형법의 有關 法律分野에서도 광범한 법률통일을 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동독의 과거형법은 특별한 정도로 과거의 사회주의적 국가사회질서에 그리고 특히 국가의 계획경제적 경제구조와 유착되어 있다. 그 형법은 자유민주적 법질서 원리들과 부합될 수 없는 수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통일과 더불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한 지역에도, 몇개의 예외는 있지만 독일연방공화국 형법전이 적용된다. 예외의 핵심은 姙娠中絶 및 18세 이하의 남자와 성인간의 동성연애행위의 처벌(가벌성)에 관한 규정이다. 이들 영역에서 및 두개의 그밖의, 약간 덜 중요한 사항에 관련된, 규정(동독형법 제191조a: 공해사범처벌규정, 제238조: 사법권독립침해사범처벌규정은 통일후에도 적용됨 - 譯者註)에 대하여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경과기간에 서로 다른 법이 존속한다. 이는 곧 “행위지원칙(Tatortsprinzip)”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적인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는 행위가 저질러진 장소의 법이 각각 기준이 된다. 즉 姙娠中絶이나 동성연애행위가 지금까지 처벌되지 않았던 곳에서는 새로운 통일법률이 마련되는 시점까지 그대로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조약 제31조 제4항이 姙娠中絶영역에 대하여 전독입법자(통독의회)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독입법자(통독의회)는 독일 양편(양독)에서 ‘생성중인 생명’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늦어도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하여야 하는 것이다.

相談과 社會的 援助행위의 개선을 위하여 연방의 지원하에 각 州에 여러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相談所網이 짜여질 것이다.

婚姻(法) 및 家族法

민법전의 가족법은 (독일연방공화국에의) 가입시점에 새 州들과 동베를린에 존재하던 모든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적용된다. 새 법률의 소급효는 규정되지 않았다.

剩餘共同制(Zugewinnngemeinschaft)의 法定(夫婦)財産制

민법전의 잉여공동제의 법정부부재산제가 1990년 10월 3일 존속중인 혼인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지금까지의 공동재산제(Eigentums- und Vermögensgemeinschaft)에 대신하여 적용된다. 이는 원칙적으로 (夫婦)別産制(Gütertrennung)를 의미한다. (부부간의) 재산관계의 종료시에, 예를 들면 이혼시에, 혼인중 더 높은 잉여액을 가졌던 쪽은 초과분을 배우자와 나누어야 한다.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자는 자기의 법정 상속분에 더하여 총 잉여액조정으로서 유산의 4분의 1을 추가적으로 받는 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양쪽 배우자는 - 또한 각각의 배우자 단독으로도 - 1992년 10월 2일까지 郡法院(Kreisgericht)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법정 재산제를 존속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離婚後 扶養

이혼후의 부양에 대하여는, 이혼이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지금까지의 동독의 가족법전의 법이 계속 적용된다. 이 날 이후에 이혼한 사람들에게는 민법전 제1569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 동규정은 2년 이상의 부양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업의 경우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親의 자에 대한 配慮(Elterliche Sorge - 親權)

지금까지의 법에 따르면 법원이 이혼판결에서 혼인당사자들이 1년의 기한까지 친권(das elterliche Erziehungsrecht)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동독에서 최근에 개정된 가족법전에 따르면, 부모일방의 신청없이 법원이 이혼절차에서 친의 자에 대한 배려(die elterliche Sorge - 친권)에 관한 결정을 보통은 할 수 없다. 위 두 경우에 있어서, - 민법전에 따라 요청되는 - 직권으로 내리는 친의 자에 대한 배려에 관한 적절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社會保障金調整

사회보장금조정(Versorgungsausgleich: 이혼시, 부부가 장래 받게 될 사회보장금급부에 있어 양배우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반분하는 제도: 譯者註) 규정은 새 州들과 동베를린에서 (독일연방공화국에의) 가입과 동시에 벌써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연금보험체계의 동일화(Angleichung)가 완결된 시점에 비로소 적용된다. 동법은 이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이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회보장금조정의 적용은, 모든 중요한 동독의 사회보장청구권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보험체계안으로 移入되고 그리하여 사회보장금조정목적에 따라 그들이 신뢰도 있게 査定가능한 시점까지 연기된다.

血統(關係)法

(독일연방공화국에의) 가입 이전에 행하여진, 혈통관계법(Abstammungsrecht) 영역에서의 親子關係決定(Statusentscheidung)은 민법전 이입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장차의 親子關係節次는 새 법에 따른다.

親族扶養(Verwandtenunterhalt)

친족부양에 대하여는 1990년 10월 3일부터 민법전 제1601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양청구는 부양권리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부양의무자가 資力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중요한 차이: 부양의무는 子와 父母間, 子와 祖父母間 뿐만 아니라 모든 직계혈족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나 社會扶助를 받은 경우에는 社會保護局(Sozialamt)이 1寸혈족(한국식으로 2寸)에 대하여만, 예컨대 손자에 대하여서는 아니되고 子에 대하여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子女扶養料

자녀부양료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동독의 과거 최고법원의 기준율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 법원이 개별적인 경우마다 부양료가 얼마여야 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마도 법원은 곧 대략의 지침이 될 (부양료)표를 작성, 공표할 것이다. 부양의무자가 예컨대 라인강변의 공장에서 일 자리를 발견하여 소득이 대단히 좋아진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동독에 그대로 남아 있는 자녀에 대하여 더 높은 부양료가 고려된다. 靑少年局(Jugendämter)에서 이에 노력한다. 새로운 州정부들 또는 나중에 연방정부에서 적응기준율을 확정하자마자, 자녀부양료는 증가된 생계비 및 소득에 단순하게 맞추어 적용될 수 있다. 아마도 1990년 10월 3일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나 비로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절차외에서도, 지금 벌써 모든 부양당사자는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하여, 그것이 부양료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인외의 子는 父의 소득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통상의 부양료(Regelunterhalt)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새로운 州정부들에 의하여, 나중에는 연방정부에 의하여 통상의 부양료액수가 앞으로 확정

되어야 한다. 이것도 1990년 10월 3일에 벌써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제데이터가 알려진 후에야 비로소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응율과 통상의 부양료는 일반에게 신속하게 공표될 것이다.

相續法

1990년 10월 3일부터, 지금까지의 동독과 동베를린에서의 모든 相續의 (相續開始의 모든) 경우에 민법전의 상속법편이 적용된다. 동상속법은 매우 광범한 유언의 자유(Testierfreiheit)를 보장하고 있다. 이제부터 상속계약(Erbvertrag)도 체결할 수 있으며, 선순위상속관계 또는 후순위상속관계(Vor- und Nacherbschaft)도 정할 수 있다. 法定相續順位는 第3順位群(의 혈족)에서 끝나지 아니한다. 즉 모든 혈족 뒤에서야 비로소 국가에 (상속재산이) 귀속된다. 배우자상속규정이 약간 다르다. 혼인외의子和 그의 혈족에 관한 특별한 상속규정은 그것이 현재 심사중에 있으므로 효력을 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출생한 혼인외의子和 그의 혈족에 대하여는 민법전 상속법편에 있는 혼인중의子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1990년 10월 3일 이전의 相續(開始)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동독의 상속법 그대로 된다. (피상속인과의 계약에 의한 - 譯者註) 상속포기(Erbverzichte), 유언, (상속인의 일방적 행위인 - 譯者註) 상속포기의 意思表示(Ausschlagungserklärungen) 등등이 정치적 상황의 압력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추후 다투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마도 개개의 경우별로 심사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유언이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유효하게 성립 내지는 취소되었는 지 여부의 문제에 관하여는 지금까지의 동독법이 여전히 적용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부부가 한통의 유언서에 함께 작성하는 - 譯者註) 共同遺言(gemeinschaftliches Testament)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이 공동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처분의 자유(Verfügungsfreiheit)를 제한당하는 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제한당하는 지와 피상속인이 공동유언에서 정해진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지 여부의 문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동독법이 적용된다.

軍

동독군(NVA)의 모든 현역군인은 통합조약과 동시에 연방군대의 군인이 되며, 명령과 복종의 원칙에 따라 연방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는 일정기간복무군인(Zeitsoldaten)과 직업군인에게와 마찬가지로 병역군복무자(die Grundwehrdienstleistenden: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에 의거하여 군복무를 하는 경우 - 譯者註)에게도 적용된다.

일정기간복무군인과 직업군인에 대하여는 공무(원)에 대한 것과 비슷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동독군에 속하는 모든 자가 자동적으로 현역군으로 수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일정기간복무군인과 직업군인의 복무관계는 일단 停止된다. 이 징기기간 동안 지난 6개월간의 월평균봉급의 70퍼센트가 待機金으로 지급된다

해당자가 6개월내에 다시 임용되지 않으면 복무관계가 종료된다. 50세 이상의 군인의 경우 대기기간이 9개월로 연장된다. 징기규정에 해당된 군인은 연방군대내에서의 志願兵服務를 위하여 응모할 수 있다.

자신의 部隊, 단체, 복무기관, 기구가 연방국방장관결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존속하는 군인은 징기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역의무자)民間服務(非軍事的 服務)

통일독일에는 통일적인 (병역의무자)민간복무가 있게 될 것이다. 良心上의 이유로 執銃兵役을 거부한 병역의무자는 군복무 대신에 민간복무를 할 수 있다.

민간복무에서는, 특히 생활보호분야에서, 공공복리에 봉사하는 업무가 수행된다. 노인, 병자, 장애자를 위한 定住補助業務와 外來補助業務가 수행된다. 민간복무자는 군복무중인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

政黨

(독일연방공화국에의) 가입이 발효됨과 더불어 5개의 새 州들과 동베를린에 독일연방공화국 정당법이 효력을 발한다. 가입한 지역의 정당들은 1년 이내에 그들의 黨規를 동법률의 규정에 일치시켜야 한다. 지금까지의 동독의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기타의 정치적 결사"라는 특별형태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목적의 결사는 결사체법(Vereinsrecht)에 따라 결성되고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정당법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상응할 때에만 그 특성에서 나오는 특별한 권리와 기능을 갖는 정당으로 간주된다. 가입의 발효후 1년의 경과기간중에는 1990년 5월 1일 인민회의의 장에게 등록된 정치결사체들이 선거참여를 고려하여 정당과 동등시된다.

지금까지의 동독의 정당법중에서 제20조a와 제20조b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과 그와 결속된 법인 및 대중조직의 재산을 신탁관리할 위원회가 설치된다. 나아가 동위원회는 상기 조직의 재산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도 위임받는다. 이 목적을 위하여 위 조직은 사정을 보고할 의무를 지며 위원회는 조사권한을 가진다. 동위원회는 가입발효와 동시에 연방정부의 법률적 감독(Rechtsaufsicht: 사무처리의 적법성 여부의 감독 - 譯者註)하에 놓인다.

지금까지의 동독의 정당법 제20조b에 규정된 신탁관리는, 1990년 6월 17일의 인민회의(동독국회)법률에 의거하여 구성된 信託廳(Treuhandanstalt)에 위탁된다. 동신탁관리공사는 가능한 한 재산을 원권리자 또는 그의 권리승계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그밖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에 쓰여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본법의 의미에서 실질적-법치국가적 원칙에 따른 것임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대하여서만 정당 기타의 조직에 그 재산이 되돌려진다.

통합조약의정서에, 지금까지의 동독의 과거 提携政黨들(Blockparteien: 한 블록에 속하는 여러개의 정당)과 PDS의 재산은 선거준비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쓸 수 없다고 확정하였다. 이 원칙의 준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각정당의 재무담당자(Schatzmeister)가 이에 관하여 '宣誓에 갈음하는 保證(eine eidesstattliche Versicherung)'을 행하고 해당자금의 투입을 포기했음이 공인회계사(Wirtschaftsprüfer)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금까지의 동독의 提携政黨과 통합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제정당은 1990년 11월 1일까지 각각 결산대차대조표와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公共財政, 私有化, 經濟獎勵(助長), 農業經濟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재정헌법(Finanzverfassung)이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으로 확장된다고 통합조약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새 州들의 재정(Haushaltswirtschaft)의 독립과 재무행정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연방지역에서와 동일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州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연방은 州업무수행을 위하여 통합조약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행정의 기능(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나중에 상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우선적인 급부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특히 다음의 규정들이 정하여졌다:

共同租稅

공동조세(소득세, 법인세, 매상세)는 연방과 지금까지의 州들 사이에서처럼 전체독일과 州들 사이에 할당된다. 州의 租稅收入(Steueraufkommen)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지분(20퍼센트)과 州로 들어오는 '독일통일'기금의 자금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할 일정한 몫(40퍼센트)을 확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동독에서 州를 형성하는 어려운 초기단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자금이 확보되었다.

賣上稅

매상세에 대한 州의 몫(1992년까지 總收入의 35퍼센트)의 배당은, 매상세에 대한 전체독일의 州의 몫을 통일배분된 몫을 우선 계산한 후에 東과 西의 두 배당단체로 작성하는 식으로 행한다. 서부州의 평균 1인당 持分의 55퍼센트에서 시작하여 1994년의 70퍼센트까지 지분율이 단계적으로 증가되어, 기본법 제107조 제1항 제4문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수에 따른 배당에 접근시킨다.

'獨逸統一' 基金(Fonds)

조세수입에 추가하여 약 1,000억 마르크의 '독일통일' 기금이 마련된다. 기금의 자금중에서 새 州들이 85퍼센트(그중 40퍼센트는 지방자치단체의 몫)를 수령하며, 나머지 15퍼센트는 새 州 지역에서의 중요한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방이 사용한다.

따라서 새 州들은 기금에서
1991년에 297억 5천만 마르크,
1992년에 238억 마르크,
1993년에 170억 마르크,
1994년에 85억 마르크를 수령한다.

'독일통일' 기금의 가동기간중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지금까지의 州들과 새 州들 사이에 州間財政調整(Länderfinanzausgleich)은 행해지지 않는다.

(연방과 주의)共同任務

기본법의 혼합재정부담규정(Mischfinanzierungsregelungen: 연방과 주에 일정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정 - 譯者註)은 이를 위하여 정해진 시행규정을 포함하여 새 州들의 지역으로 확장되는데, 특히 '대학건설', '농업구조', '지역경제의 장려' 등의 공동업무에서 그러하다.

지금까지의 東獨 財産의 分配

지금까지의 동독내에 있던 공공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지금까지 단일국가(체제)였던 동독이 諸州의 형성에 의하여 연방구조로 변형된다는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일국가형성시 지역단체(Gebietskörperschaft - 일정지역을 기초로 성립된 공법인, 여기에서는 주, 지방자치단체 등 - 譯者註)간에 이루어진 不當한 재산이동은 취소된다. 그밖에 다음 원칙들이 적용된다:

- a) 행정재산(Verwaltungsvermögen), 즉 행정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그 재산이 사용되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행정주체에 귀속된다
- b) 이른바 재정재산(Finanzvermögen), 즉 행정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연방과 지금까지의 동독내의 州들에 半分된다. 인민소유의 주거재산(das volkseiene Wohnungsvermögen)은 원칙적으로 해당채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누가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주택에 대한
배정권을 가지나요 ?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전독입법자(통독의회)가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해결시까지는 지금까지의
동독법이 적용되지만, 이 동독법은 늦어도
5년후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지금까지의 東獨 債務

(독일연방공화국에의) 가입에 이르기까지 누적되어 온 지금까지의 동독의 공화국(국가)재정의 채무에 관한 규정은 이미 1990년 5월 18일의 국가조약 제27조 제3항에 포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채무는 신탁재산관리로부터 기대되는 장차의 수익에 의하여 辨濟될 수 있는 범위에서 신탁재산으로 이 전한다. 남은 채무는 각각 2분의 1씩 연방과 (동베를린을 포함한) 새 州들에 배정된다. 신탁재산의 현실적인 價額評價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동독의 국가채무를 신탁청, 연방, 동독내 州들에 각각 배정하는 것을 실행할 수 없는 1993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방이 지금까지의 동독내 州들을 이자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 이자부담을 신탁청과 연방에 할당하기로 하였다.

再審條項

통합조약은, 사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새 州들을 위하여 재정능력의 적절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지원의 가능성을 연방과 州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일반적 재심규정을 두고 있다.

關稅와 租稅

독일연방공화국의 관세법 및 소비세법이 (독일연방공화국에의) 가입발효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동독에도 적용되는 반면에, 재산세 및 거래세에 관한 법은 지금까지의 동독에 1991년 1월 1일부터 비로소 발효된다. 그러한 한에서 이 시점까지는 지금까지의 동독법이 계속 적용된다.

鐵道와 郵便

독일국철(Deutsche Reichsbahn: 동독국영철도)의 재산은 채권, 채무와 마찬가지로 연방으로 이전한다. 독일철도(양독철도청)의 두 이사장이 서로 다른 체계를.기술적으로, 조직적으로 통합한다.

동독우편은 독일연방우편과 통합된다. 그 재산은 세 遞信事業體, 전기통신(Telekom), 우편저금소(Postbank), 우체국(Postdienst)에 분배된다. 통신사업에 관한 주요규정들은 이제부터 전연방영역에 적용된다. 특히 새 州들에서의 통신사업(Fernmeldewesen)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단기적, 중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1990년 10월 3일부터 어떤 우편요금이 적용되나요 ?

새 州들에서는 독일우편(동독체신청)의 요금이 일단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전화요금은 그대로인가요 ?

그렇습니다, 통합조약이 직접 변경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물론 요금통일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1990년 10월 3일부터 어떤 우표가 유효한가요 ?

독일연방우편(서독 체신청)의 우표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1990년 7월 2일 이후 발행된 독일우편(동독체신청)의 우표도 유효합니다. 베를린 독일연방우편(서베를린체신청)의 우표에 대하여도 그렇습니다. 1990년 6월 30일까지 발행된 "독일민주연방공화국" 도장이 찍힌 모든 우표는 1990년 10월 3일부터 무효입니다.

經濟獎勵(助長)

통일조약에서 경제구조적응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포괄적인 조치프로그램이 합의되었다.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지금까지의 동독을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이라는 (연방과 주의) 공동임무에 편입. 영업적인 투자에 대하여 지역적인 목표규정없는 투자보조금(예컨대 투자보너스)과 함께 투자비용의 33퍼센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하여 90퍼센트까지 투자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중 지방자치단체의 물적 투자를 위한 100억 마르크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市邑面)의 借入計劃.
- *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중 100억마르크에 달하는 借入金을 이용한 주거현대화계획.
- * 특히 투자촉진, 신용대부지원, 연구 및 개발지원, 재교육 및 상담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한 조치,
- * 살아남을만한 사업체의 건설화 또는 구조변경을 위한 기업의 사례별 채무면제조치.

農業

1990년 5월 18일의 국가조약에 따라서 새 州들의 농업부문도 시장경제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식료품의 생산, 본배에 관한 중앙집권적 계획 대신에 농업 및 식량경제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유럽공동체의 농업시장질서는 독일연방공화국 농업에 매우 중요하다. 그 질서는 지금까지의 동독에도 수용된다. 적응을 위한 과도기에 대하여 수많은 지원조치가 결정되었다.

사적 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가능성)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중추적 원리에 속한다. 자기 스스로의 이니셔티브와 신속한 시장반응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소유권으로써만이 장기투자에게 필요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적 소유권의 보호는 이제부터 농업경제 및 임업경제에 있어서도 재건된다. 농업 생산협동조합(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en)에 관한 舊法은 1990년 12월 31일에 그 효력을 잃는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이제 농업생산협동조합(LPG-Mitglieder)의 수중에 있다. 그들이 새롭게 구성된 농업생산 공동조합 안에 그냥 남을 것인지, 그들의 농토를 스스로 경영할 것인지, 아니면 팔거나 임대할(소작을 줄) 것인지는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1945년에서 1949년 사이에 수용된 토지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새 州들에 귀속된다.

勞動, 社會(生活保護)

勞動法秩序

1990년 5월 18일의 제1차 국가조약과 함께 이미 시작된 길이 계속 이어진다. 이는 연방독일(서독)의 노동법과 근로자보호법규가 광범하게 移入되는 것을 의미한다.

解雇(豫告)期間

동독지역에 지금까지의 동독의 노동법 제55조가 계속 유효하다. 이 규정은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획일적인 해고예고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동기간은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최소한 2주이며 勤續期間에 따라 3개월까지 연장된다.

지금까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되어 온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해고예고기간은, 연방헌법재판소가 1990년 5월 30일 이러한 차등을 위헌으로 선고하였기 때문에, 새 州들에 들어가 적용되지 않는다.

唯一養育者(Alleinerziehende)에 대한 解雇防止

지금까지의 동독에 있던 사용자측의 근로계약 解止에 대한 특별한 (해고)방지는 1991년 말까지 존속한다.

疾病의 境遇 賃金の 繼續支拂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와 사무직원이 질병이 난 경우 6주간 임금을 계속 지불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간의 단체협약에는 조금 더 긴 (임금계속지불)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노동자와 사무직원 사이에 차등이 있는 연방독일(서독)의 임금계속지불규정은 (동독에) 들어와

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질병의 경우 6주간의 계속적 임금지불을 규정하고 있다. 전독입법자(동독의회)는 이 문제를 통일적으로 새로 규정하여야 한다.

最短休暇

지금까지의 동독에서 적용되었던 1년(曆年) 20일의 최단휴가(기간)은 계속 유효하다. 왜냐하면 - 독일연방공화국에서와는 달리 - 동독에서는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통한 휴가청구권형성이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법률규정에 따라 부여된, 최단휴가기간을 넘는 휴가(기간)은 1991년 6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기업)合理化時의 (勤勞者)保護協定

1990년 7월 1일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에서 체결된 기업합리화시의 보호협정은 1990년의 경과와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이 시점 이전에 이미 이 합리화시보호협정으로부터 권리 또는 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는 그 권리를 그대로 가진다. 이 경과규정은 신뢰보호에 기여한다.

鑛産業에서의 共同決定(Montanmitbestimmung)

광산공동결정법의 적용범위가 지금까지의 동독내에 위치한 압연공장에 확장된다. 동법은 1991년 3월 31일까지 監査會가 구성된 모든 압연공장에 적용된다. 1991년 4월 1일 이후의 신설공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團體協約(Tarifverträge)

지금까지의 동독 舊法の 集團契約(Rahmenkollektivverträge)과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社會的 勤勞者保護

사회적 근로자보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서독법을 받아들이지만, 몇가지 예외도 있다. 일요일과 (공)휴일 노동의 금지와 연방독일(서독)의 예외규정은 지금까지의 동독에 1993년부터 비로소 적용된다. 그때까지는 과거 동독에서 적용되었던 일요일, 공휴일 노동 규정이 적용된다. 서독에 적용되는 것처럼, 야간에 빵을 굽거나 배달하는 것의 금지(das Nachtback- und das Ausfahrtverbot)가 1993년부터 비로소 지금까지의 동독에 들어와 적용된다. 공사장에서의 야간노동과 부녀자노동 -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근로시간규정에서 금지됨 - 노동시장정책적 이유에서 지금까지의 동독에서는 계속 허용된다. 동독의 家事勞動日(Hausarbeitstag)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존속한다.

技術的 勤勞者保護

서독의 기술적 근로자보호법규가 원칙적으로 수용된다. 물론 개별적인 경우에 특별한 移入規定이 적용된다. 예컨대 이른바 舊(공장)設備, 즉 가입 이전에 설치되었고 운영되었던 설비에 관하여는 지금까지의 동독에서 적용되어 온, 과거 동독법에 따른 동설비의 기술적 상태에 대한 요건(안전기준)이 기준이 된다. 설비가 중대하게 변경되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요청될 경우에는 감독관청이 보다 진보적인 서독법규에의 적응을 요구할 수 있다. 1991년의 경과와 동시에 舊設備에 대하여도 당해설비의 운영에 관한 서독규정이 구속력을 가진다.

法の整備

전독입법자(동독의회)는 근로계약법, 일요일 및 공휴일 노동의 허용여부와 특별한 부녀자근로의 보호를 포함한 공법상의 근로시간법규를 가능한 한 빨리 통일적으로 새롭게 규정할 임무가 있다.

공법상의 근로보호법규도 유럽공동체법과 합치되도록 통일되어야 한다.

雇傭促進 / 失業保險

雇傭促進法律

서독에서 적용되는 고용촉진법들은 원칙적으로 새 州들에도 확장적용된다. 몇개의 특별규정이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에 대하여만 계속 효력을 가진다.

短縮操業支給手當(Kurzarbeitergeld)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에 대하여 1990년 5월 18일의 국가조약에서 마련된 단축조업지급수당특별규정은 계속 유효하다.

그에 따르면 노동(조업)단축에 해당된 근로자의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해고(와 실업)을 막기 위하여 단축조업지급수당의 지급이 허용된다. 노동행정(부서)에서 이 단축조업지급수당수령자를 위하여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의 기여금 전액을 떠맡는다. 사용자는 단축된 시간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특히 완전한 조업단축의 경우, 사업장 내외에서 직업적 능력의 유지가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노동관서가 자신에게 다른 사업장의 빈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는 경우, 근로알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우선 1991년 6월 31일까지의 기한부의 특별규정은 연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

職場造成對策

직장조성대책(Arbeitsbeschaffungsmaßnahme: 특히 직장알선이 어려운 실업자에게 다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聯邦雇傭廳이 전부 또는 일부의 자금을 대서 일정기간 동안 공익적인 자리에서 일하도록 주선해주는 것: 譯者註)의 자금을 대기 위한 특별규정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동독에 사회통합(Sozialunion) 이후 적용되어 온 법규가 유지된다. 물론 동독에서도 -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 법인, 즉 보통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公益私法人이 직장조성대책의 공급비용에 원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히 노동시장정책적이거나 사회정책적인 의의를 갖는 처분으로 1991년 6월 30일 이전에 허가된 경우에는 노동관서는, 그러한 수외에는 처분이 실행될 수 없을 때에는, 使用者寄與金을 포함하여 완전한 총공급비용을 부담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처분은 총공급비용의 90퍼센트를 가지고 지원된다.

기타 비용을 위하여, 여건대 직장조성대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 노동관서는 일정한 한계내에서 消費貸借나 追加利子를 지불할 수 있다.

準養老年金(Altersübergangsgeld)

과거 동독에서 적용되었던 早期退職規定(Vorruhestandsregelung)은 다음의 새 규정으로 대체된다:

57세에 이른 남성, 55세에 이른 여성은, 실업시에 3년의 - 여성의 경우 5년의 - 존양로연금을 1990년에 받을 수 있는데, 길어도 법정 연금보험으로부터 가장 빨리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이다.

1991년부터는 통일적으로 57세의 연령한계와 3년의 존양로연금 최대수령 기간이 적용된다. 1991년 4월 1일까지 청구권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는 존양로연금이 1년간(에 한하여) 5퍼센트의 추가급부금만큼 인상된다.

존양로연금은 聯邦雇傭廳(die Bundesanstalt für Arbeit)이 자신의 노동관서들(Arbeitsämter)을 통하여 실업보험금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연방고용청은, 신청자가 지금까지 직업활동을 한 지역에 명백한 노동인력부족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존양로연금은 2년 8개월간은 연방고용청이 자금을 부담하고, 남은 4개월간은 연방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이 규정은 1991년 신규자에 국한된다. 동규정은 연방노동부장관의 법규명령(부령)에 의하여 1992년의 신규자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

勤勞者貸與(Arbeitnehmerüberlassung) / 不法勞動(Schwarzarbeit)

근로자를 다른 사용자에게 기한부로 대여하는 것을 규정한 근로자대여법과 불법노동방지법은 새 州들에도 들어가 적용된다.

子女養育補助金(Kindergeld)

공무관계의 사용자는 자녀양육보조금을 자기의 종사자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그밖의 분야에서는 1991년 4월 1일부터 -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 노동관서의 자녀양육보조금금고(Kindergeldkasse)에 지급권한이 있다.

1991년부터 자녀양육보조금은 얼마인가요?

매월 첫째 아이는 50 마르크, 둘째는 130 마르크, 셋째는 220 마르크, 그 다음 한 아이마다 240 마르크.

重障者法

가입과 동시에 서독의 중장애자법이 새 州들에 들어가 적용된다. 지금까지의 동독에서 발행된 重障者證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중장애자증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공공의 근거리승객운송수단의 중장애자에 의한 무상이용에 관한 규정은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에서는 새로운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장애로 인하여 도로교통에서 자신의 거동능력을 심각하게 잃고 있거나, 自力에 의지할 수 없거나 청각이 없는 중장애자는 해당표시가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주소지에서 50km 원주안에서 전차, 버스, 전철, 1991년 7월 1일부터는 독일국철=동독국영철도 - 2등칸 -). 증명서에 印紙가 붙어있을 것이 전제조건이다. 印紙는 1991년 3월 31일까지는 1년에 30 마르크, 그후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년에 60 마르크 또는 반년에 30 마르크를 납부하면 교부한다. 盲人, 自力에 의지할 수 없는者, 특정그룹의 빈민들이 신청에 의하여 1년간 유효한 印紙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쟁희생자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들은 원칙적으로 수수료납부를 면제받는다.

負擔調整公課金

의무적으로 중장애자를 임용해야 하는 일자리(Pflichtplätze)를 위하여 기업과 관청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조정공과금은 전독일에서 균일하게 月 200 마르크이다.

醫療保險

組織

1991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편성체계가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에 도입된다. 과거의 14개의 地區 내에 일반지역의료보험금고(Allgemeine Ortskrankenkassen)가 설치된다. 사업체의료보험금고, 동업조합의료보험금고, 임의의료보험금고(Ersatzkasse), 농업종사자의료보험금고 및 광업종사자보험금고(Knappschaft)와 같은 그밖의 의료보험금고들은 과거 동독지역에 새로이 설립되거나 혹은 서독으로부터 그리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은 서독지역과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을 분리하여야 하며, 이는 베를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의료보험금고는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에서 1991년에 오로지 12.8퍼센트의 획일적인 保險料率을 징수할 수 있다.

保險給付法規 / 追加納付金

원칙적으로 1991년 1월 1일부터 서독의 보험금부법규가 수용된다. 피보험자의 추가납부금에 관하여는 서독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규정들이 도입된다:

1991년 6월 30일까지는 피보험자로부터 추가납부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 義曲는 예외이다. 의치의 경우에는 1991년 1월 1일부터 벌써 비용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납부금을 내야 한다.

1991년 6월 30일 이후에는 기타의 보험금부에 대하여도 추가납부가 실시될 것이나, 低所得때문에 원칙적으로 서독 수준의 50퍼센트만이 실시될 것이다. 피보험자의 추가납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가혹사례완화규정(Härtefallregelungen: 추가납부금의 요구가 사정에 비추어 특히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 - 譯者註)에 대하여 낮은 봉급수준에 상응하여 저소득한계도 적용된다.

藥品

전독입법자(통독의회)에 의해 규정될 때까지 다음이 적용된다:

1980년 11월 14일의 藥品價格規程의 의미에서 제조자가격은, 약국에서만 판매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동독내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약에 대하여는, 1991년에 55퍼센트 引下된다.

引下額은 1992년 1월 1일과 1993년 1월 1일에, 서독과 (지금까지의) 동독에서의 보험료납부의무있는 소득의 비율에 맞추어 연방노동사회부장관의 법규명령을 통하여 축소된다.

위 규정은 1993년 12월 31일의 경과로 효력을 잃는다.

醫師와 齒科醫師의 醫療酬價

의사, 치과의사의 의료수가는 수수료규정에서 서독수준의 45퍼센트로 확정되었다. 보험환자취급의, 보험환자취급치과의와 의료보험금고 사이에서 협의를 통하여 의료수가를 합의하는 한, 의료보험의 보험료율이 12.8퍼센트에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外來診療所

5년의 과도기동안 기존의 보건소들(지방자치단체산하의 또는 사업적인 응급진료소와 외래진료소)은 주민들에 대한 구급활동을 위하여 계속 허용된다. 그와 동시에 의사 기타의 급부수행자들이 자유적으로 정주하도록 재정적, 조직적으로 그리고 상담으로써 지원한다.

疾病이 있는 兒童의 看護

독신의 직장인 및 두 아이를 가진 혼인중의 직장여성에 대하여 질병있는 아이의 간호목적의 직장면제(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동독에서 적용되었던 규정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이 시점 이후에는 서독법이 적용되는데, 동법은 8세 이하의 질병있는 아이의 간호를 위하여 매년 5일간까지의 직장면제(휴가)와 (임금에 대신하는) 의료보험금(휴업보상금)급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부모 양쪽이 다 노동을 하는 경우 동청구권은 선택적으로 양자에게 부여된다.

질병시의료보험금급여(휴업보상금)
(Krankengeld: 질병이 있어 일을 할
능력이 없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임금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부금: 譯者註)는 얼마나 되나요?

임금이 보험료산정에 참작이 되는 한에서,
받을 임금의 80퍼센트입니다.

年金保險

保險公團

1991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보험공단은 자기의 권한을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으로 확장한다: 聯邦事務職員保險公團, 聯邦鑛業組合金庫(Bundesknaappschaft: 광업종사자보험의 보험자 - 譯者註), 聯邦鐵道保險公團, 海上金庫(Seekasse: 해상선박근로자의 연금보험의 보험자 - 譯者註). 근로자연금보험 실시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동독의 각 州에 州保險公團을 설립한다.

베를린 주보험공단의 권한도 동베를린으로 확장된다.

지금까지의 동독의 기존의 社會保險保險者는 1991년 1월 1일자로 “社會保險 移入公團”으로 변형되어 연금보험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위임에 따라 연금보험업무를, 동업무를 개개의 보험자가 인수할 때까지, 수행한다. 동移入은 늦어도 1991년 12월 31일까지 완결되어야 한다.

給付法規

서독의 연금법규가 원칙적으로 1992년 1월 1일부터 들어와 적용된다. 그 상세는 전독입법자에 의해서(통독의회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1991년중에는 지금까지의 동독의 연금법규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新規年金受領者에 대한 信賴保護

1992년 1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법정연금보험으로부터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신뢰보호가 적용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1990년 6월 30일에 지금까지의 동독에서 그때까지 적용되었던 연금법에 따라 (보충적 급부금과 특별급부금은 빼고) 지급되었을 액수'의 연금이 지급된다. 1990년 6월 30일에 지금까지의 동독에서 그때까지 적용되었던 연금법에 따라 연금청구권이 존재했을 경우에 대하여도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再活(Rehabilitation)

再活을 위한 의료급부 및 직업재활급부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벌써 적용된다. 따라서 연금보험보험자는 벌써 급부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활사업은 우선적으로 의료보험의 업무에 속했었다.

연금 은 오릅니까 ?

그렇습니다, 연금은 최소한 1년에 한번 봉급변동에 맞추어집니다.

災害保險

영업분야에서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에 同業組合(Berufsgenossenschaft: 재해보험의 보험자, 서독에는 산업별동업조합, 농업동업조합, 원예동업조합 등이 있음 - 譯者註)이 새로이 만들어지지 아니한다. 서독의 기존 동업조합이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으로 확장된다. 州와 지방자치단체(市邑面)의 근로자를 위하여 州단위에 새로운 보험주체(=보험자)가 구성된다.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에 농업동업조합이 있게 될 것이다.

재해보험금부법규는 1992년 1월 1일자로 들어와 적용된다. 그때까지는 1990년 제1차 국가조약이후 형태의 (지금까지의) 동독의 법규가 계속 유효하다.

재해방지에 관한 규정, 치료 및 재활에 관한 규정, 노동재해시의 救助에 관한 규정, 사용자면책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에 벌써 移入된다. 법정 재해보험은 재해시에 企業者와 사업체직원들간의 민사책임에 介入한다.

社會保障追加支給金

지금까지의 동독에 도입된 '연금보험, 재해보험, 실업보험의 금부에 대한 사회보장추가지급금'(月 495 마르크로의 금부 증가)은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신규연금수령자에 국한된다. 금부금은 길어야 1995년 6월 30일까지 지급된다. 동급부는 유동적이지 않다(확정적이다).

사회보장추가지급금은 연금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동독에 - 서독 시스템과 비교될만한 - 사회부조시스템이 이제 비로소 형성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1990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추가지급금은 시한부(로 적용된다).

연금에 대한 사회보장추가지급금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급되나요 ?

길어야 199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금부는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신규연금수령자에 한합니다.

戰爭犠牲者援護 / 社會(生活保護)的 報償

서독에서 적용되어 온 聯邦援護法(Bundesversorgungsgesetz: 聯邦戰爭犠牲者援護法)은 전체 금부스펙트럼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동독에 들어와 적용된다.

현행의 금부액수는 서독의 연금과 비교한 지금까지의 동독의 연금보험연금액에 따른다(현재 서독수준의 약 40퍼센트).

지금까지의 戰爭傷痍年金은 일단 존속하나, 연방원호법에 따른 금부에 맞추어 산정된다.

연방원호법에 따른 사회적 보상(생활보호보상)은, 건강장애의 경우에 피해자희생법(폭력범죄피해자)(한국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해당 - 譯者註)에 의거하여 청구권이 있는 자에게도 지급된다.

전쟁희생자도 이제 (독일 양쪽에서)
동등하게 간주됩니까 ?

그렇습니다. (동독지역의) 전쟁희생자들도 전부
지금까지 서독에서 적용되어 온 법의 대상자가
됩니다. 급부액수는 새 州들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집니다.

財産形成(財形)

재산형성법(936-마크-법)의 규정, 근로자의 자기회사지분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세제상의 장려, 주택건설장려금법(이를 통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저축이 장려됨)은 1991년 1월 1일자로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에 들어와 적용된다.

女性 / 家族, 保健, 住宅, 消費者保護

女性和 家族

男女平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職場과 家庭의 調和를 수월하게 해 줄 임무가 전독입법자(통독의회)에게 있다.

乳兒養育補助金과 乳兒養育休暇(産前後休暇)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새 州들에서도 유아양육보조금과 유아양육휴가가 있다. 이 시점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週間補助金, 産後休暇, 母(子)支援金에 관한 지금까지의 동독의 법이 계속 적용된다.

새법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있게 된다: 유아양육보조금은 지금까지의 모자지원금에 비하여 보통 더 긴 기간 지급된다. 월간 유아양육보조금은 생후 18개월까지 600 마르크이다. 생후 7개월 이후부터 유아양육보조금 액수는 부모의 소득에 달려 있다(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다). 父와 母는 - 이제까지의 직장이 보장된 가운데 - 18개월 동안 아이의 양육에 우선적으로 매달릴 수 있다.

1991년부터 어떠한 유아양육보조금이
존재하나요 ?

199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기들의
아이들 스스로 양육하는 父와 母는 18개월
까지 월 600 마르크의 유아양육보조금을
받는다. 생후 7개월부터 동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子女養育補助金

1991년 1월 1일부터 자녀양육보조금에 관한 지금까지의 동독의 법규정이 연방자녀양육보조금법으로 대체된다. 자녀양육보조금은 첫째에게 50 마르크, 둘째에게 130 마르크, 셋째에게 220 마르크, 그 다음부터 한 아이당 240 마르크인데, 세제상 자녀공제(액 혜택)이 전혀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전액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이 한명당 48 마르크까지의 추가지급금이 더 붙는다.

연간소득이 (결혼한 사람의 경우) 45,480 마르크 내지 (독신자의 경우) 37,880 마르크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아이부터 자녀양육보조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최소한, 둘째 아이에게 70 마르크, 그 다음부터 한 아이당 140 마르크는 불변이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자녀양육보조금액)감축은 5개의 새 州들에는 1991년의 경과 후에야 비로소 적용된다.

자녀양육보조금은 연속해서 직업교육을 받을 경우 보통 27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된다. 자녀양육보조금은 노동관서에 새로 구성될 자녀양육보조금금고에서, 그리고 공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접) 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된다.

자녀양육보조금은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기혼자의 경우 45,480 마르크 이상, 독신자의 경우 37,380 마르크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으면, 자녀양육보조금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최소한, 둘째 아이 70 마르크, 그 다음 아이당 140 마르크는 불변입니다.

社會扶助

지금까지 서독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회부조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달리 살아 나갈 수 없는 자에게 필요한 도움(부조)을 주는 것이다. 첫째로는 생계비보조가 있는데, 이는 월정액(가장과 독신자에게는 400 마르크, 가족구성원에게는 연령에 따라 200 마르크에서 360 마르크 사이의 금액)과 주거임대료 전액과, 필요할 경우, 1회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또 예컨대 양로원이나 장애인복지원 등에 수용되어야 할 경우, 스스로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수용비도 인수된다. 그밖에도 요양간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요양간호부조금(Pflegegeld)과 장애인에 대한 특별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부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지금까지 서독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 수많은 임의복지사업단체와 교회복지사업단체도 이 업무에 봉사한다.

福祉事業團體

임의적(자율적) 사회단체, 특히 임의복지사업단체와 임의청소년구조단체는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주요한 징표이다.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까지의 동독 지역에서는 발전할 수 없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과 사회적 그룹들의 자율적인 활동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公的인 지원도 필요하다.

保健政策

보건의 중요성은 이미 1990년 5월 18일의 국가조약에서 명시한 바 있다. 목표는, 독일연방공화국 전역에 자유롭고 본원적이고 다양성과 자주성에 입각한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이 체계는 많은 부분에서 사경제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보건적 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이 새 州들에서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향한 첫걸음은 이미 취해졌는데, 의료직의 가능한 한 신속한 허가가 그 예이다.

공적으로 경영되어 온 약국은 다시 사유로 이전될 것이고 정주의 자유(주거와 영업소를 연방 어디에나 둘 수 있는 자유 - 譯者註)가 인정되는 결과 새 약국들이 생겨 날 것이다.

의료직에 있어서도 직업교육수료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방지를 위한 설명 및 상담프로그램은 새 州들에 들어와 적용된다.

病院

입원치료시설(병원)은 건물도 시설도 낙후되었다. 지금까지의 동독의 470개 병원중에서 단지 30퍼센트만이 보존상태가 좋다. 80개의 국립병원 대부분이 보수를 요한다. 서독에 비교할만한 의료급부는 의료급부조건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일시적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전독입법자(통독의회)의 임무이다.

賃貸借法, 住居補助金, 住宅建設

통합조약의 주택건설정책적 및 都市計劃政策的 규정은 賃借人, 賃貸人, 投資者의 이해관계조정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주 낡은 住居는 임차인에게 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수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언제나 점진적으로만 적응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정상화된다. 그동안 실효성이 입증된 바 있는 임차인보호규정이 새 州들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賃貸借法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적(성격을 갖는) 임대차법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차임인상으로부터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주는 수단이다. 동법은 장래 지금까지의 동독의 임차인의 권리도 효과적으로 지켜줄 것이다. (독일)통일 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동법에 따른다.

통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다음의 특별한 경과규정이 임차인을 광범하게 보호해줄 것이다: .

1. 임대인이 자기필요(예컨대 자기 스스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사용할 목적: 譯者註)에 의해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향후 2년간 금지된다. 다만 주거변경이 임차인에게 미치는 것보다 자기필요에 의한 사용의 거부가 임대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더 가혹하다는 것을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2. 임대인도 같이 거주하는 2가구주택에서의 자유로운 계약해지권은 자기 필요에 의한 계약해지와 비슷한 정도로 제한된다.

3. 순경제적 이유에 의한 계약해지는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4. 영업사무실임차인은 契約解止가 자신의 생존근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인데다가 임대차관계의 존속이 임대인에게 기대가능한 것일 때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영업사무실의 경우 契約解止通告期間은 6개월로 연장된다.

借賃(주거임대료)이 지금까지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차임은 특별법규(명령)에 의해 점차적으로 증액될 것이다. 주거보조금의 지급을 통하여 차임은 모든 가계에서 지불할만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주거현대화(주택개량)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장차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 임대인이 주거운영비(온방, 수도, 오물처리, 도로청소 등을 위한)와 주거수리경비를 어느 정도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지는 연방정부가 법규 명령으로 정할 것이다.

개인자금으로 신축되거나 주거불가능한 장소가 (주거용으로) 개조된 주택에 대하여는 차임이 자유롭게 합의될 수 있다.

借賃이 인상될 수 있나요 ?

지금까지의 동독에 있어 온 住居에 대한 가격구속은 일단 존속합니다. 차임은 장차 법규(명령)에 의해 소득변동에 맞추어 증액될 수 있습니다.

借賃에 대한 재정적 보조가 있나요 ?

그렇습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전독일에 주거보조금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차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거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 액수는 가계소득액, 월정 차임 내지 부담, 그리고 가족수에 달려 있습니다.

住居現代化프로그램

경제성장속진을 위한 (경제)구조(변경)지원의 범위내에 1993년까지 100억 마르크의 신용대부자금이 제공되는 주거현대화계획이 있다. 저렴한 이자의 신용대부가 차임주거 또는 자기사용주거에 대한 현대화 및 보수작업을 위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市邑面)에 도시계획에 의한 정비프로그램이 있다. 그리하여 보다 더 적합한 주거에 살 기회가 개선될 것이다.

임차인이 주거현대화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나요 ?

직접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새 州들에서는 매년 11 퍼센트의 액수가 借賃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가혹(한 경우를 완화시키기 위한: 譯者註) 조항이 기대불가능한 차임인상을 방지해 줄 것입니다.

주거현대화를 위한 低利의 信用貸付가 있나요 ?

있습니다. 1993년까지 100억 마르크가 임대주거와 자기사용주거에 대한 현대화조치에 제공됩니다.

住居補助金

'임차인'과 '所有主住居住宅(Eigenheim) 또는 自己所有住宅(Eigentumswohnung)'을 가지고 있는 자'는 법정급부요건을 갖추면 주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주거보조금은 자기 스스로 적합한 주거를 구하기에 소득이 충분치 못한 가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1991년 1월 1일부터 독일전역에 주거보조금법이 적용된다. 동법은 실제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앞으로 새 州들의 서로 다른 차임수준과 소득수준에 적응되어야(맞추어져야) 한다.

人民所有住宅

인민소유의 주택, 지방소유의 주택에의 배정권은 전독입법자(동독의회)가 앞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때까지는 - 길어야 5년 - 동독법이 계속 적용된다.

인민소유주택은 지방자치단체소유로 이전한다. 이 규정의 목표는 활기차게 시장경제적 주택경제를 확장하고 사유화를 통하여 개인적 주거소유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인민소유주택은 어떻게 양도될까요 ?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소유로 이전됩니다. 주택시장을 신속히 확장하고 사유화를 통하여 주거소유를 가능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양목적의 용익권("주말별장": Datschen 동독의 주말별장 - 譯者註)

요양목적, 여가를 보내기 위한 목적, 작은 농장을 가꾸려는 목적의 토지 사용관계는 존속되며,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법에 따른다:

1. 주말농장안에 있는 작은 오두막(Lauben), 방갈로 기타의 건물(주말별장)은 사용권자의 소유로 남는다.

2. 토지소유권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근거에 의해서만, 즉 사용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태도라든지 긴급한 자기필요가 있는 경우, 解止할 수 있다.

3. 使用料(地料)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같은 식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통상적인 사용료에 적응된다(맞추어진다). 그러한 법규명령의 제정시 까지 사용료는 불변이다.

所有主住住宅(Eigenheim)建築을 위한 土地使用權

과거동독의 법에 따르면 많은 경우에 인민소유 또는 협동조합소유의 토지에 소유주주거주택 또는 기타 개인적인 필요에 이용될 건물의 건축을 위한 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한 사용권에 의거한 건물에 대하여는 권리자에게 건물소유권이 부여된다. 그 권리는 동독민법전의 실효로부터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에 의하여) 부담을 받고 있는 토지의 토지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용권은, 제3자가 이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이 그 시점에 전부 또는 일부 미완성인 경우, 사정에 따라서는 소멸할 수 있다.

消費者保護

소비재와 용역의 충분한 공급은 소비자에게 기회뿐만 아니라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분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일련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보통거래약관법(das Gesetz über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 AGB-Gesetz)은 계약에 "작은 글씨로 인쇄된 것들"을 다루고 있다. 동법은 그러한 표준화된 조항들이 언제 유효한 것으로 계약에 편입되는가를 정하고 있고 그 조항들의 내용을 통제하고 있다.

"방문판매(및 그와 유사한 거래) 철회에 관한 법"은, 소비자가 예컨대 집문앞에서, 직장에서, 또는 커피여행(경치 좋은 곳에서 커피 한 잔 나누기 위해 회사에서 조직하는 여행인데 그 장소에서 물건판매도 함: 譯者註)에서 맺은 계약에 대하여 1주일 내에 법률행위(거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거래는 실행에 옮겨지지 아니한다. 이미 제공된 급부가 있는 경우 이는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은 소비자가 술선하여 성립된 계약의 경우, 사소한 거래의 경우 및 보험계약에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금분할변제법(Abzahlungsgesetz)은 할부판매, 할부우송판매, 소위 제3자 계산의 매매계약을 다루고 있다. 동법은 특히 정보제공의무와 소비자의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51조 a에서 k에 포함되어 있는 여행계약 법규정은 여행비일괄지불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보호한다. 동규정은 특히, 여행사에 의해 연결되는 국내외의 호텔주인 또는 버스사업자 등이 손해를 야기하거나 불완전한 급부이행(Schlechtleistung)을 초래한 경우에도, 여행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Produkthaftungsgesetz)은, 제조물의 瑕疵로 인하여 신체 또는 건강상의 손해가 야기되거나 손해를 야기한 제조물 외의 물건이 손상을 입은 경우, 그 범위에서 제조물에 책임이 있는 자의 무과실책임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한 한에서 제조물책임법은 이 분야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제조물-과실-책임을 보충해주며, 이 전통적인 제조물책임법규정과 공동으로 제조물에 의한 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준다.

環境保全

통합조약에서 다시 한번 환경에 중요한 모든 법률의 수용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영업설비는 독일전역에서 동등하게 엄격한 환경보전기준에 따라 인가된다. 기존의 설비에 대하여는 경과기간이 정해진다.

새 州들에서의 경제현대화에 있어서, 처음부터 환경보전(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환경을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성의 요청이기도 하다.

자연대로의 생활근거를 보호하고 최고수준에서의 생태학적 생활관계의 통일성을 촉진하는 것은 계속 과제로 남는다. 최소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서의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聯邦, 州, 지방자치단체(市邑面)는 생태학적 정비 및 개발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여기에서 주민에 대한 건강상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최우선이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에서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들이 수년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긴급원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1990년 5월 18일의 국가조약과 통합조약을 통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새로운) 진로가 결정되었다. 새 州들에서 특히 (환경악화라는) 큰 부담을 받고 있는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의 개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역들에 집중하여 3억 6천만 마르크가 환경프로젝트에 지원된다. 이는 약 15억 마르크의 환경투자를 의미한다. 환경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현대적인 기술이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도 있나요 ?

연방독일(서독)의 환경법이 새 州들에도 적용됩니다. 우선 긴급원조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交通

도로교통에 관련한 사람들과 자동차에 대한 허가 분야에서 현재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통합조약 경과규정은 분명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증은 교체될 필요가 없다. 즉 그대로 유효하다. 자동차 허가 법규의 경우 환경우호적인(공해를 덜 일으키는) 차에 관한 규정과 유독가스를 덜 배출하는 차에 대한 세제상의 장려규정이 수용된다.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에는 0.0 프로밀리 규정이 계속 적용되며, 따라서 과도기적으로 상이한 알콜위험한계치가 적용된다. 장차의 전독입법자(통독의회)가 통일적인 새 규정을 의결하지 않으면, 1993년부터는 전독일에 0.8 프로밀리 규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의 동독의 속도제한은 일단 존속한다(고속도로 시속 100km, 국도 시속 80Km). 고속도로상에서는 1992년 1월 1일부터 통일적으로 권고최고속도 시속 130Km가 적용되며, 국도상에서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속 100Km가 적용된다.

지금까지의 동독의 속도제한은 존속되나요 ?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0Km/h, 국도에서는 80Km/h. 1992년 1월 1일부터 고속도로상 권고최고속도 130Km/h, 1993년 1월 1일부터 국도상 100Km/h.

0.0 프로밀리-한계 규정은 사라지나요 ?

0.0 프로밀리는 새 州들에 그대로 존속됩니다. 전독입법자(통독의회)는 1992년말까지 전 연방에 적용될 통일적인 규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동차는 언제부터 종합검사(TÜV)를 받아야 하나요 ?

자동차종합검사와 배기장치특별검사(ASU)는 즉시 도입됩니다. 검사장을 현재 건설중입니다. 경과기간이 부여될 것입니다.

文化, 教育 및 學術, 體育

文化

독일의 통일이 경제분야, 재정분야, 사회분야 외에 문화적 차원도 가지고 있음을 통합조약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금조달을 포함하여 문화업무의 수행이 보장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동독의 문화적 가치는 손상되어서는 아니된다.

지금까지의 동독의 문화기금(Kulturfonds)은, 융통성있는 자금조달기구로서 문화, 예술의 진흥 및 예술인의 지원을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운영된다.

조르베인(서슬라브족의 일파, 동독지역이었던 작센州에서 少数民族을 형성하고 있다 - 譯者註)의 권리는 통일독일에서 보장된다.

放送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방송”의 개념에 라디오와 T V 가 합쳐진다. 통일조약과 동시에 “동독 라디오 방송(Rundfunk der DDR)”과 “독일 T V 방송(Deutsche Fernsehfunf)”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권리능력있는 기구(독립법인) 내로 옮겨진다. 이 기구는 관할권한있는 州들 공동의 과도기구이다.

새 州들이 과도기구의 해체를 결정할 때까지, 길어야 1991년 12월 31일까지, 지금까지의 동독의 주민들에 대한 방송서비스를 과도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통합조약에서 마련되었다.

통합조약의 방송관계규정은, 존재하는 구조를 장래를 위하여 상세히 확정함 없이, 기존 제도의 이입을 과도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방송프로그램의 준비 및 전파를 위한 전제요건은 나중에 관할권한있는 주정부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방송시청료인상에 관한 1990년 8월 15일의 과거동독의 각료회의 결정이 통합조약에서 수용되었다. 1990년 10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월시청료는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 * 라디오에 대해서는 2 마르크에서 4 마르크로
- * T V (제1프로그램)은 5 마르크에서 9 마르크로
- * T V (제2프로그램)은 3 마르크에서 6 마르크로.

1991년 1월 1일부터는 이미 지금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적용되어 온 시청료규정이 수용된다. 즉 월 6 마르크의 기본요금에 월 13 마르크의 T V 시청료가 추가 징수된다.

라디오와 T V 에 대해 장차 어떠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1990년 10월 1일부터 시청료가 인상됩니다:
라디오 4 DM, 1 T V 9 DM, 2 T V 6 DM.
1991년 1월 1일부터 전독일에 통일적으로
기본시청료 6 DM (라디오)와 T V 에 대한
월 13 DM의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教育

교육은 지금까지의 동독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쇠신하는데 막중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두) 교육제도간을 옮겨 다닐 수있도록,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생활관계의 균등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졸업과 자격증 원칙적으로 상호인정한다.

주를 새로 편성하는 문제는 학교제도에도 관련된다. 이 경우 학교교육의 통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의 수료는 모든 州에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인정받는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에게 유능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융통성있는 규정을 통하여 직업교육에 있어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2원적 직업교육제도로의 移行이 보장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교사의) 既得 資格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제도전환시 직업교육사업장을 도와준다.

지금까지의 동독의 교육수료가 계속 유효한가요 ?

그렇습니다. 이미 획득하였거나 또는 국가적으로 인정된 것인, 학교수료, 직업훈련수료, 학문연마과정의 수료나 거기에서 얻은 자격증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지금까지의 지역(서독)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들이 동일한 가치의 것일 경우 동일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教育에 대한 財政的 補助

연방교육지원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BAföG)은 1991년 1월 1일에 5개의 새 州들에서 효력을 발한다. 각주의 상이한 직업교육비용과 생계비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그때까지 동일화한다. 1991년 1월 1일까지는 학생들과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보조와 장학금에 관한 과거동독(에 적용되었던) 법이 계속 유효하다. 그렇게해서 舊法과 新法 사이에 재정적 지원의 흠결이 발생하는 것이 방지된다.

어떠한 교육지원이 있나요 ?

학생들과 대학생들에 관하여는 지금까지의 동독규정이 1990년 12월 31일 끝납니다. 그후에는 BAföG이 적용됩니다. 직업훈련교육에 대하여는 근로장려법에 따른 지원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정보는 노동관서(Arbeitsämter)에서 제공합니다.

大學

대학에 있어서는 특히 教授와 研究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대학입학제(Hochschulzugang)와 대학입학허가제(Hochschulzulassung)는 독일 양편에서 경과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동일화될 것이다.

학교제도가 새로이 조직되나요 ?

이에 관하여는 새 州들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일이 모색될 것입니다.

學術 및 研究

동독의 학문은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각 州의 구조, 학문의 자유라는 원칙, (학문의) 質을 지향한 통일적인 독일의 연구상황형성이 목표이다. 학술평의회 설치에 학문적 質에 지향된 발전을 보장해준다. 통일의 날부터 연방공화국(서독)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바 있는 지원체계가 동독내의 모든 학자, 연구자에게도 개방된다.

강력한 산업연구와 특히 생산력있는 기술지향적 중소기업은 일자리 보장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주요한 전제조건이다. 특별히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에 대한 목적지향적인 추가지원조치는 이 지역의 연구 및 발전잠재력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體育

통일후 지금까지의 동독의 체육에 대하여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규칙과 원칙이 적용된다. 이들 규칙, 원칙은 과거에 그 실효성이 입증되었으며 자유헌법(질서)에 상응하는 것이다. 과거의 동독에 민주적, 연방적 구조가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동독공산당에 의하여 파괴된 (체육)단체들이 부활되어야 한다. 체육에 대하여 자주행정과 자기책임이 적용된다. 국가는 체육이自力으로 해나갈 수 없는 경우에만 후원한다.

전문체육(Spitzensport)에 대한 권한만이 있는 연방정부는 지금까지의 동독의 성적추구체육(Leistungssport)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체육문화로 옮겨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다.

구동독의 붕괴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본 보고서는 "현실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패
원인과 경과를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 (구동독
출신 학자중심)가 다각적으로 분석해 놓은 책
"Das Ende eines Experiments"중 구동독 붕괴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다룬 Rolf Reissig가 기고한
글 "Der Umbruch in der DDR und das Scheitern
des realen Sozialismus"를 전문번역한 것임.
양이 방대하여 나누어 번역 송부예정인 바,
1부는 목차중 1.4까지를 다루고 있음.

구동독의 붕괴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목 차

1. 구동독의 붕괴 - 그 원인과 수행 주체자
 - 1.1 위기를 가속시킨 내적요인
 - 1.2 위기를 가속시킨 외적요인
 - 1.3 변혁의 원인제공자
 - 1.4 변혁의 주체자
 - 1.5 SED내의 논쟁

2. 혁명 또는 복구 - 동독의 변혁과 독일통일과정
 - 2.1 혁명인가 ? 복구인가 ?
 - 2.2 변혁중의 변혁, 변혁의 경과
 - 2.3 어떤 통일 ?

3. 현실사회주의의 쇠퇴로부터 몰락까지
 - 3.1 체제의 위기 - 유형변경으로부터
체제변경으로
 - 3.2 몰락의 원인
 - 3.3 스탈린주의 대 레닌주의
 - 3.4 역사적 실험이 끝난이후 (5대 테제)

1. 동독의 붕괴 - 그 원인과 수행 주체자

- o '89 동독 "현실사회주의 체제" (Realsozialistisches System)의 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와 가치체계 및 생활방식 등 전분야로 확산되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으나 위기를 극복할 체제내적 장치란 아예 없었다. 그 반대로 체제전체에 걸친 철저한 개혁과 과감한 새로운 시작이 불가피했지만 체제내에 그와 같은 것을 실현할 전제조건과 기초가 전연 없었다. 단지 10월 대변혁의 주체자들만이 변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89년의 전반적이고 광범한 위기는 주민의 충성심과 거부감, 그리고 역사적인 위기의 잠재력에 대응한 SED의 적응노력과 부분적인 개혁추진 등 오랜 발전과정을 거친후에 나타난 최종 형태였다.
- o 이와 같은 동독의 상이하고 모순에 가득찬 발전 - 일정기간동안 아직도 상이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음 - 속에 동독은 동. 서 양진영에서 상당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된 국가로서 제한적이거나 변화가능성 내지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Brzezinski 역시 '89년도까지 "소비에트 블럭"중 동독만이 유일하게 비교적 안정적이며, 경제적 발전잠재력이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Z. Brzezinski : Das gescheiterte Experiment. Der Utergang der kommunistische Systeme, Wien 1989, S. 233, 239 참조)
- o 그러나 '89년이라는 위기의 해에 - 모든 "현실사회주의" 국가처럼 - 동독에서도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논의 되었다. 즉, 동유럽 사회의 발전형태는 궁극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원칙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1953, 1956/57, 1961, 1970/71)에 국가정당으로서 SED가 시도한 바 있던 소위 위기극복 전략이 '89에는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체기반" 위에서는 "현실사회주의 체제"를 개혁하거나 변형시킬 방안이 결코 없었다. 즉 이미 오랜동안 지속되어 온 "현실사회주의" (Realer Sozialismus)의 위기로 인해 - 50년대와는 달리 - 전세계적으로 "현실사회주의적 체제"는 직접 붕괴되어 몰락하는 단계로 악화되었던 것이다.

- 이와 같은 배경하에 '89년 동독의 위기는 마침내 체제를 공중분해시켜 버린 파급 효과를 나타냈는 바,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80년대 후반기에 위기를 가속시킨 요소들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무엇이 바로 '89년 10월 동독혁명을 일으킨 직접적인 요인이었을까 ?

1.1 위기를 가속시킨 내적 요인

- 지난날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오랜동안 동독의 경제는 모범적이었으며, 동독은 세계 10대 선진산업국중에 든다고 공식적으로 선전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와 비교할때 동독의 경제는 발전되었고, 효율적이었으며 발전된 기술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선전적이었으며 단한번도 현실과 일치해본적이 결코 없었다. 그 반대로 80년대에 들어, 특히 그 후반기부터 동독의 경제상태는 점점더 악화되었다.
- 위기를 가속시킨 첫번째 요인은 경제발전의 침체와 퇴조현상 이다. 국내사용 가치분 소득은 '81년부터 '87년까지 단지 연간 2%만 증가하였을 뿐이다. 이기간 동안 인플레이는 2-4%였으며 주민의 금전수입은 연간 4.1%증가하였다. (N. Peche u. a : Was heisst Radikale Reform ?, Berlin 1990, S.18 참조) 공급의 애로는 점점더 악화되었는데 소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긴급한 투자마저 계속 축소되었다. 대부분의 생산시설은 완전히 노후해 버렸다. "독자적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개발이라는 일방적인 방향설정은 경제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켜버렸다. 발전된 서방산업국에 비해 낙후된 테크놀러지는 80년대 후반기에 더욱 악화되었다. 투자제한은 인프라스트럭처의 낙후성을 초래하였다. 환경오염 잔재가 너무 극심하여 수많은 곳 (특히 남부 관구지역)에서 생태학적 파국상태가 일어나 버렸다. 경제의 집약화 형태로에의 이행은 - 선전적으로나 학술상 "대부분 성공적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 이룩되지 못했다.

- o 대외부채는 점증하였고 성장의 추진력은 점점더 마비되어 새롭고 질높은 경제발전은 사실상 추진될 수 없었다. 오늘날까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구조문제, 즉 생산기술에 있어서의 생산성 저조, 불균형, 현대화 결핍을 비롯하여 생산품의 경쟁력 부재,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업내 자본걸핍과 같은 것은 실패한 경제질서와 경제정책의 결과이다. 다만 그 원인이 깊숙한 곳에 있을 뿐이다. 중앙통제식 명령경제체제에는 현실적인 시장, 재화, 화폐관계, 경쟁구조, 생산적인 능력창출을 억압하는 결정적인 구조적 장애요소가 내재 되어있다.
- o 이로써 사회복지정책을 펴기 위한 경제적인 재량의 여지는 80년대 후반기에 점점더 좁아졌는데 주민 각 집단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71년 Erich Honecker가 착상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일" - 소위 "주요과제"로서 - (Einheit von Wirtschafts-und Sozialpolitik)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성과와 경제정책과의 결속가능성은 점점더 사라져 버렸다. 경제상태에 대한 동독주민 대다수의 전반적 불만은 "역동적인 경제부흥", "새로운 능률본위사회의 성공", "주요과제에 대한 동독주민의 확고부동한 지지" 등등의 끊임없는 선전이 난무하는 시기에 확산되었다.
- o 비록 서독의 발전상태와 비교할때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수십년간, 특히 70년대에 이룩한 풍요와 함께 시민의 대다수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괄목할 만큼 높고 신속한 임금수준의 상승, 풍부한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인간의 다양한 욕구충족의 가능성과 같은 것은 대다수의 동독주민에게는 요원한 일이었다. 이러한 결과 동독의 직장보장과 사회복지적 안전제공에도 불구하고 "서독식 생활방식"이라는 매혹은 증가하는 가운데 단지 사람들이 결코 그것을 "완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 o 위기를 가속시킨 두번째 요인은 인간의 관심, 욕구, 가치관의 변화 및 이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정치적 모순과 갈등이 있다. 표면적으론 분쇄가 불가능한 단단한 돌덩이 같았으나 사실상 권력정치적으로는 물론, 사회복지적으로도 균열되어버린 동독사회는 80년대이래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회의 분화현상" (Ausdifferenzierung der Gesellschaft)이 일어나고 있었다.

- o 욕구는 다양화되어 결정과정의 공개, 공동결정, 대대적인 여론화, 나아가 여가 선용의 문제, 여행자유화와 같은 것들이 욕구와 요구사항 단계의 최상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개체화, 민주주의, 인권, 환경보호와 같은 가치관 역시 마찬가지였다.
- o 새로운 욕구와 가치관의 형성이라는 이와 같은 사회적 다원화는 조금도 변함없는 정치체제의 완전한 당중심 구조에 막혀 그것이 수용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교정의 장치나 통합의 장치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발전상태는 SED 지도층의 주관적 몰이해와 충돌하였으며 점증하는 "인민(Volk, 지배층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국민)의 정치적·도덕적 통합"이라는 세계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체제에서는 생소한 "서독화" 현상이나 활동, 심지어 이방인에 의해 조종되는 반사회주의적 행동이 불가피했다. "민족" - 1933년 파시스트의 정권강점의 쓴 경험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어 - 에 대한 불신감 지도층내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래서 "인민과 정당의 확고부동한 일치" (unerschuetztliche Einheit von Volk und Partei)라는 구호가 더욱 강력하게 제창되었으나 이와 동시에 특히 공안기구를 통한 억압이 강화되고 전국을 망라하는 감시체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동독지도층도 억압과 병행하여 통합적 측면 즉, 비판자나 새로운 그룹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용과 같은 것은 주로 교회의 보호아래서만 허용하였으므로 반대나 욕구의 대중적 조직화는 불가능했다.
- o 80년대의 변화로는 사회적 승진기회의 차단현상이 점증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자격이나 직업수행능력에 입각하지 않은 인력의 채용이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예외가 아니었다. 직업에 있어서의 능력의 완전한 개발, 그리고 이와 연계된 사회적 승진과 더욱 많은 급여보장은 한계에 부딪혔다. 더구나 50년대나 60년대와는 달리 사회적 특권을 누릴수 있는 직장들이 추가적으로 줄어들었다. 점차로 통치 엘리트는 거의 그 자체내 기득권층에서만 후진을 양성하고 채용하였다.

- o 이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기초변화에 대해서 세대교체가 더욱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바, 결국 세대교체는 세대간 갈등으로 귀착되고 말았다. 동독주민 1/3이상이 1961년 이후에 출생하였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생활여건을 대부분의 노년층처럼 전후시대와 비교하지는 않았다. 만일 비교한다면 그 대상은 오로지 서독뿐이었다. 70년대말 이래 청소년들은 어느정도의 풍요, 사회적 미래에의 전망과 더불어 체제로부터 이탈현상이 두드러졌다. 대다수에게는 변혁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체제 순응한다는 것은 정치적 교조주의화, 자기체험에 의한 행동공간의 협소화, 여행가능성의 제한 등 너무 큰 댓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였다.
- o 위기를 가속시킨 세번째 요인은 "시민사회" (Zivile Gesellschaft)의 형성과 더불어 시민사회가 국가, 특히 SED의 주도권 및 통제권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해방되었다는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현상은 80년대 동독에서 대체문화(alternative Kultur)의 형성, 특히 민권운동단체, 자율적 평화운동단체, 여성단체, 환경보호단체의 형성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의 독자적인 통로, 독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생성되었던 바, 이러한 새로운 관점들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표했던 것과 전연 공통점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일상생활을 지배하던 맹신적 일치성 (Konformitaet)의 극복, 정치적 자유와 같은 새로운 의지가 가시화되었으니, 이와 같은 새로운 의지는 관료주의적 통치를 반대하는 반항의식으로 고무격려되었고, 주민들의 공포심은 점차로 극복되어 갔다. "성년시민의 사회적 토론을 위한 공개된 공간" (W. Suess : Revolution und Oeffentlichkeit. In : Deutschland-Archiv, 1990, H.6, S.910 ff. 참조)으로서의 공공성의 형성이 곧 기존 권위적 권력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이다.
- o 위기를 가속시킨 네번째의 구조적 요인은 80년대 하반기 이후, SED 통치라는 정치체계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이 급속하게 사라졌음을 들 수 있다. 동독주민의 대다수 (Eine Mehrheit)는 동독이라는 정치체제와 진정코 일치감을 가졌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제공된 상대적 풍요, 사회복지적 안정성, 사적 활동영역의 인정 등으로 특정의 대중충성심 (Massenloyalitaet)이 있기는

하였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 국가가 그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와 함께 40년간이나 존속할 수 있었겠는가? 80년대 후반기에 SED 통치의 정당성 위기를 급성적으로 초래한 요인은 유토피아 내지 미래의 상실, 과거에 대한 의문제기, 현재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o 유토피아, 곧 미래에의 상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70년대초 Honecker시대의 개막과 함께 더욱 심화되었다. 공산주의란 곧 머나먼 먼곳에나 있는 것이 되어 버렸다. 또한 "발전된 사회주의적 사회" (entwickelte sozialistische Gesellschaft)라는 테제 역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시간만 "점점더" 필요로 하는 역사적 발전과정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파악되었다. 바로 오늘 이곳에서의 중점은 인간의 노동과 생존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소위 "주요과제"정책의 의미였다. 70년대초에 대체적으로 이해할만한 방향설정이 - 비록 공식적 표현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 이루어졌으나 결코 장기적이지도 지속적인 수행능력이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과 함께 자기주변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에 관한 자각이 점점 가시화되어 버렸다. 70년대의 전반기에처럼 경제적 부흥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초가 공고해 졌다면 이와 같은 정책은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충성심을 조장하는 효과로 나타났었을 것이다.
- o 그러나 경제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정책을 펴기 위한 재량의 영역이 더욱 강력하게 제한되자, 이와 같은 정책은 하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물자의 결핍과 이의 획득을 위한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조만간 달성될 "찬란한 미래"라는 교시로서는 더이상 정당화 될 수도 상쇄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o 더우기 고르바초프의 취임과 더불어 과거는 공식적으로 탈신화화되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스탈린식 정권이 저지른 죄악은 점점 상세하게 드러나 공개적으로 토론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이 동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리 없었다. SED 정치국에 의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 ("Sputnik"지 발간 금지, 소련영화의 수거, 미디어나 학술전문지상의 공개토론 금지)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여론에서는 물론, SED내에서도 과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팽배하기만 하였다. SED의 정당성위기는 일반화되었으며 특히 '87년 말부터 급격하게 첨예화되었다. 현실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1.2 위기를 가속시킨 외적 요인

- o 80년대, 특히 그 후반기에 들어 동독에 대한 전략적인 총체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적 총체상황이 곧 89년 10월의 변혁을 위한 중대한 조건이자 전제였다.
- o 그 첫번째 조건이 CSCE 과정이다. CSCE 과정의 발단 및 발전에 동독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의 집단적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 경제적 협력을 위한 대책, 그리고 국경의 존중과 불가침 및 주권과 같은 기본원칙의 명기, 지역적 통합성의 명기를 비롯하여 국내문제에 불간섭과 같은 것은 동독으로서는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들이었다. 그 반대로 CSCE과정을 통해 동독내에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는 인권과 기본자유권의 존중에 대한 요구, 인도주의적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대한 요구, 인간적 접촉에 대한 요구, 여행가능성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신장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동독주민들은 점증적으로 이와 같은 권리들이 Helsinki 최종문서에 확정될 것을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민권을 자신을 위해 지키기를 바랐다. 최종문서의 제Ⅲ분야 (인도주의적 협력)가 곧 동독 민권운동단체의 활동을 위한 정당성의 기초가 되었다.
- o CSCE 인권규정과 이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대해 SED는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이러한 권리들은 인정함으로써 긴장이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긴장은 인권요구에 있어서 Helsinki의 결정내용보다 훨씬 광범하면서 각 분야에 걸쳐 서방측 기준에 맞게 설정된 Wien 최종문서이후 더욱 급격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SED의 정치국은 Wien에서 최종회담이 진행되는 도중 동독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 사안에 관하여 수차례 걸쳐 논의한 후, 오로지 국내실정법적 유보조건하에, 그것도

현실이라는 압력에 못이겨 서명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인권분제의 직접적인 "위협"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위협성은 매우 깊숙한 곳에 있었다.

- o CSCE과정과 더불어 동. 서간의 갈등은 점차 상대화되었다. CSCE는 체제간의 단계적인 접근 및 체제의 개방을 위해 매우 중대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동독은 역사적으로 전략적이고 확고부동한 차단(장벽)을 고수하였다. CSCE는 대내외적인 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동독지도층은 이를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정한 여론의 조성으로보나 자유스런 토론으로서의 대내적인 대화 (이런 개념조차 공식적으로 환영되지 않았음)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와 민권운동단체, 평화운동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간의 대화 또는 최소한의 대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범죄시되어 이 단체들은 지하로 밀려나 버렸다.
- o CSCE과정을 통해 변화된 동독과 SED의 전략적 총체상황은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Glasnost"와 "Perestroika"라는 정책으로 훨씬 더 영향을 받게 되었다. 처음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맹주국으로서 아직도 동독의 존립을 위해 전략적 의미가 컸던 소련자체로부터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스탈린주의 및 그 뿌리와의 결별, "현실사회주의의" 행정적, 관료적 형태에 대한 신랄한 비판, 소련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대외 정책적 방안과 실제 (블릭사고방식 ; 적대의식, 군비경쟁에 대한 막대한 공동 책임, 헤게모니추구, 강대국 추구,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몇나라에서 있었던 민주화 추세 및 민주주의적 민족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 및 새로운 사회주의 방안에 관한 토론, 소련에서의 Glasnost와 민주화를 향하는 실제적 제단계 모색 등, 모든 것이 동유럽 전체에 걸쳐 심각한 파급효과로 나타났다.
- o 민주주의의 추구와 발전에의 추구는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급격하고 강력하게 일어났다. 이로써 공산당의 통치기능은 전례없이 마비되어 버렸다. '89년 여름, 폴란드에서는 동유럽 최초의 비공산주의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소련도 이를 인정하였다. 헝가리의 변혁과정은 집권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 (USAP) 자체에 의해 대대적으로 주도되었으며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 동독에 대한 파급효과는 다양하였는 바 동독에서는 "고유한" 사회주의 체제의 난립, 결합, 폐해 등에 관한 광범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는데, 이는 물론 민주적 변화라는 희망과 연계된 것이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정책과 더불어 그 당시 동독의 모든 희망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민권,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공개성, 더 많은 공공성, 더 많은 체제의 개방을 추구하는 동독의 변화와 개혁이었다. 절대다수가 이를 원했다. SED당원 자체내에서조차 반항은 커졌으며 논쟁은 증가되었다. 그러나 SED의 지도층은 고르바초프의 뜻에 부합하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할수도 없었지만 혹시나 사회주의를 민주화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쳤다.
- '88년 1월 (소련 공산당 1월 - 당대회시 사회주의의 민주화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된후 가시되었을 당시, 고르바초프는 일반성명을 통해 이를 방치하지 않았음) 이래 동독의 SED 당내에서는 고르바초프 반대운동이 정식으로 개진되었는데 단지 외적으로는 편의상 가리워져 있었다. Perestroika를 지지하거나 더구나 이를 동독에 도입촉진하려는 자는 SED를 반대하는 배신자라는 오명이 찍혀 버렸으며 때로는 연설금지, 저작금지, 업무정지 조치를 당하였다.
- 동맹국내 진전상황은 동독에게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특히 위기 시대에 그래도 기댈수 있었던 그때까지의 불릭이라는 연대의식은 점차로 희미해져 버렸고 동독은 드디어 처음으로 자체진영내에서 고립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동독 외교정책상의 이데올로기적 합법성, 즉 "평화의 주춧돌"이자 "사회주의의 전초"라는 사실은 눈에 띄게 사라져 갔다. 민족적 정체성이 부족했던 동독은 일순간의 민족적 요소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을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외적요인, 특히 소련이 동독을 "자유방임(Freigabe)하지 않았던들 동독의 변혁은 불가능하였을른지도 모른다.

1.3 변혁의 원인제공자

- o 호네커 정책의 실패, 그리고 동독의 변혁에 파급효과로 나타난 직접적인 발단 요인이었던 여러가지 상황이 "추가"되지 않았던들 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되었을 것이며 SED 통치가 서서히 붕괴되면서 몇년동안 계속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으로는 우선 '89년 9월 11일 헝가리 정부에 의한 국경개방 을 들수 있다.
- o 헝가리 정부에 의한 국경개방은 동독의 전반적 불안정의 발단이였다. 출국 여행자의 물결은 점점 높아져 갔으며 이 사실은 서독의 전자미디어를 타고 매일 저녁 거실에 파고들었는가 하면 동독의 전체주민에게 가장 중대한 테마가 되었다. 단지 SED의 정치국만이 수주일간이나 완전히 침묵하고 있을 뿐이였다.
- o 출국여행물결 영향은 동독에 머물어 살기를 원하던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는데 이들은 기존상태로는 더이상 만족할 수 없었다. 시위의 횟수와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자체의 역동력을 얻게되었다. 8월25일, 라옌치히시 니콜라이교회에서 평화예배를 마친 5,000명이 처음으로 시위행렬에 참가했다. 그 한주일이 지나자 시위대는 이미 20,000명에 달했으며 10월 9일과 10월 16일에는 120,000명이나 되었다. 사실상의 변혁은 바로 이시간, 즉 수만, 수십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을때 시작 되었다.
- o SED 지도층 역시 원하지는 않았지만 변혁의 원인을 제공하고 가속시킨 요인중의 하나였다. '85/'86년 이래 점점 나약해지기 시작한 정치국의 지도력은 '89년 여름에는 드디어 급격한 지도력 위기로 나타났는 바 혁명전단계 ('89년 여름부터 '89년 10월초까지)에서는 "유구무언"으로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무력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 이전에 취해졌던 결정 역시 동독의 위기와 변혁을 직접적으로 준비시켰으며 첨예화시켰는데 이미 1985년과 그 이후부터 반복되었으며, 이번에는 그 이전보다 훨씬 숙명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 o 고르바초프와 그의 정책에 대한 거리감 유지 (이 사실은 문화담당 정치국원 Hager의 음울한 표현, 즉 "이웃집이 도배를 한다고 우리도 도배를 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말에서 공공연하게 됨), 소련 공산당수 고르바초프가 실각하기를 바라는 희망, 동독의 경제상태가 다른 동유럽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유리하게 호전되리라는 믿음, 동유럽의 민주화 추세와는 달리 동독국민에게는 "면역성"이 있을 것이며 이제까지 잘 작동된 권력기구에 대한 믿음 등을 새로운 시대에는 커다란 오해였음이 드러났다.
- o '88/'89년에 대내적 대화, 즉 민주화를 단계적으로 공동추진하려던 교회권과의 대화 역시 묵살되고 말았다. SED내 개혁파들의 생각은 경청되지 않았으며 그들이 공식에 등장하기만 하면 밀고당하고 배척당했다. 사회의식구조와 실상에 관한 몇개 안되는 비판적 사회학적 분석은 중앙위원회의 비밀금고속으로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동독이 점차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기 시작하여 동독주민간에 여행 문제가 점점 강력하게 논의되던 시기에 호네커는 장벽이 100년 정도는 더 거뜬히 서있게 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 o 중국의 보수지도층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천안문사태에 대한 무력진압을 지지한다는 인민회의의 공식견해 표명,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잔인한 독재자로 단죄된 초우체스쿠에 대한 칼마르크스 훈장수여는 그때까지 체제를 신봉했던 수많은 사람들마저 비판하였다. 그리고 '89년 5월 7일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부정은 수없이 많은 불가사의한 사실에 익숙되었던 동독주민들마저도 참을 수 없도록 하였다.
- o 9월이 되자 정치국은 Prag 주재 서독대사관에 몰려있던 피난민들을 동독의 국영 철도를 이용하여 통독을 통과, 서독으로 운송하도록 허락하는 결단을 취했다. 그것은 유조탱크 옆에서 불장난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SED 지도층의 이와 같은 일련의 결정사항의 최정점은 바로 동독건국 40주년 기념식인 '89년 10월 6일/7일이었다. 전국이 온통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음에도 호네커와 그 일행은 전대미문의 화려한 경축행사를 벌여 "당과 인민의 공고한 결속"을 더욱 인상깊게 과시해 보려고 하였다.

- o 경축행사에 초청된 고르바초프 역시 당과 인민의 결속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었다. 고르바초프는 인민과의 대화와 개혁 ("늦게오는 자는 인생의 벌을 받을 것이다" : "Wer zu spaet kommt, den bestraft das Leben)을 촉구하였는가 하면 정치국 회의에서 호네커가 열거한 성공사례와는 전연 반대로 사회주의의 문제점, 모순, 새로운 도전을 지적했다. 그는 이로써 정치국 자체내에서 최소한 진지한 고려를 해보도록 공공연하게 자극할 수 있었다. (Wie Erich Honecker und sein Politbuero die Konterrevolution erlebten (II). In : Der Spiegel, Hamburg 1990, Nr. 17, S. 90-92 참조)
- o 또한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천안문식 해결방안"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공공연하게 단언했다. 실제상황과 공식발표 사이의 괴리는 더이상 주민들이 인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다. 그리고 모순이 첨예화되고 저항이 자극되자 인민은 '53년 이래 다시금 국가권력이라는 발가벗은 폭력앞에 처음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로 뛰쳐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이로써 10월 9일부터 11월 9일까지 계속된 혁명은 시작되었다.
- o 그럼에도 불구하고 SED 지도층의 결정은 단지 사태에 대한 "극해" 또는 "오판"으로서 점철되었으며 그와 같은 오해를 오히려 첨예화시키기만 했다. 이와 같은 결단중 대부분은 주민의 대다수에게는 물론 SED 당원의 대다수에게조차 도저히 이해하기 불가능한 것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단은 인민과는 이미 단절된지 오래된 통치집단에 의한 어느정도 "합리적인" 관점이었다. 이와 같은 결단은 주로 통치집단의 권력욕이나 통치욕을 근거로 한후, 그들 자체의 통치와 그에 연계된 특권을 유지, 신장하는 목적에만 기여하는 것이었다.
- o 따라서 정치체제를 민주화하고 다원화하라는 요구, 대화와 함께 사회적 토론을 허용하라는 요구, 경제에 있어서 중앙집권주의를 철폐하라는 요구는 통치권의 관점으로 볼때 동치자체에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었으므로 거부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SED 지도층의 이와 같은 결단은 SED 정치국이 이미 인지한 공공연한 인식, 즉 진정한 민주화란 곧 이러한 사회주의 형태를 문제시하게 된다는 결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한가지만이라도 들어주게 되면 모든 것이 마치 눈덩이가 녹아버리듯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명제하에 모든 행위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문제설정의 핵심은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민주화는 아직도 민주적으로 정통을 확보하지 않은 통제를 능사로 삼는 정당의 권력독점을 극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SED의 개혁파들이 매우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위기를 초래한 요인이 SED 지도층의 낡은 고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원인은 체제내적으로 깊이 내재해 있었으며 당시 체제구조속에서는 더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1.4 변혁의 주체자

- '89년 10월/11월 동독의 사태진전은 여러모로 종이상자로 만든 집이 쓰러지는 것과 비슷했다. 외양으론 모든 것을 통치하는 듯 하던 국가정당의 갑작스런 자체붕괴, 통치기구와 공안기구 일체가 권력을 상실하고 드디어 아무런 무력사용도 없이 권력이 박탈된점, 모든 국가의 권위가 급속하게 상실된 점 등은 종이상자의 붕괴와 너무도 유사하다. 왜냐하면 이 붕괴는 곧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한 주체자에 의한 의식적으로 강요된 변혁이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혁명적 변혁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동을 취해야할 압력은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 (von unten) 강하게 일어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었다.
- 동독 변혁의 주체와 주체자에 관한 문제는 해당문헌이나 정치학적 논의에 있어서 공통점 뿐만 아니라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은 "동독의 대변혁"이라는 전반적인 현상과 특히 그 주체자에 관한 심도있는 학술분석은 아직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리고 주체에 관한 문제는 변혁자체를 3단계로 구분해 볼때 그 편차가 매우 크다. 변혁의 3단계란, 1. 혁명전 단계 ('89년 여름부터 '89년 10월까지) 2. 혁명적 변혁 단계 ('89년 10월 8/9일로부터 11월 9일까지) 3. 혁명후 단계 (서독사회에의 적응시기)를 뜻한다. 이와 같은 단계속에서 그리고 각 단계와 단계 사이에서

주체자의 결집의 변화, 즉 근본적인 집단의 재편성과 그들의 동기, 요구사항, 목표의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변혁에 참여했던 상이한 주체자들의 특이하고 실질적인 "참여도"와 행동단체의 상이한 정치적 비중이 구분되어야 한다.

- o 본장에서 모든 문제점이 명확하게 다루어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변혁의 주체자"에 관한 견해를 대강 요약해 보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o 중유럽이나 동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로 변혁의 전기간에 걸쳐 소위 엘리트(Elite)는 물론 소위 대중(Masse) 역시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엘리트와 대중이란 두 그룹은 구분되어야만 한다. 실례를 들자면 변혁시 엘리트는 주로 새로운 정치단체로서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체제, 나아가 구엘리트의 비판적이고 개혁주도적인 인물로서 그 일부분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중유럽과 동유럽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된 사실이었으나 그 특이한 결합 상태는 국가마다 매우 달랐다. 헝가리의 변혁과정과 변형과정은 집권정당의 개혁 주도권에 의해 수행되었음에 비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특히 야당 인텔리와 반정부주의자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그 실례로 들 수 있겠다.
- o 변혁과정에 있어서의 대중의 개입역시 상이하다. 동독에서의 대중의 등장과 혁명이라는 역사적 과정에 있어서의 대중의 행동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다만 지금까지 정확하게 연구된 바는 드물다.
- o 아래로부터의 행동에의 압력과 대중의 행동은 최초에 출국여행 대열(변혁의 발단 요소이기도 했음)로서 나타났으며 그후 수만, 수십만에 이르는 노상시위대열(혁명전 단계로부터 혁명단계의 전위)로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결사를 완성시켜 효과있게 전개된 운동('89년 11월 9일 이후 변혁의 정점을 이룸)으로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이한 양상중에는 대중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시민·민권운동 단체가 이미 구권력 구조를 공격한 이후에야 비로서 등장하였음을 들 수 있다. 또한 숫적인 절대다수가 거리에서 시위하지도 않았고 대중과 엘리트간의 원초적인 결합에 의한 추진력이 보전되지도 않았으며 단지 단기간에 걸쳐 이들간의 결합(10월 7/8일부터 11월 9일까지)이 이룩되었을 뿐, 그 이후 곧 해체되고 말았다.

- o 직접적 정치주체자로서는 그 비중이나 참여도에 비추어 매우 상이하게 평가 되어야 할 4가지 그룹이 있다. 그 첫째 그룹이 새로운 정치집단인 시민.민권 운동단체 (Buergerbewegung)이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숫적으로는 작은 집단이고 그 사회적 기반은 대체적으로 노동자 근로대중이 아니다. 구성원은 주로 신교와 자유업 종사자들이며 젊은 세대의 참여율이 매우 높았다.
- o 민주적 변혁의 준비과정에 있어서나 그 실제적 실현과정에 있어서의 시민.민권 운동단체의 공헌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그 어느측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미 이 단체들은 면모와 프로그램구성이나 그 목표와 전술을 평가해 볼때 다른 집단과 전혀 달리 행동했다. 물론 비판점이 없는 바도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명확한 미래에의 비전이 없다는 점, 변혁과정중 현실성이 결핍되었다는 점과 대중을 설득시킬만한 "민주적 극소주의 (demokratischer Minimalismus) 프로그램" 설정의 미흡, 특히 11월 9일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유연성 부족 등과 같은 것이다.
- o 오랜동안 민권운동단체는 동독에서 국가보위부의 판단은 예외였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력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89년 6월 1일자 "중앙자료분석단"의 보고서 조차 민권운동단체에 관한 매우 상세한 개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내적으로 적대적이고 야당성이 있는 기타 집단"으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 동독에는 160개의 시민운동조직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교회저변단체"로서 약 2,500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미 그 단체명이 입증하듯 이들은 동독의 가을변혁시 출중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사들이었으며 그후 "원탁회의" (Runder Tisch)에 참여하여 국사를 논했으나 오늘날에는 영향력이 미미한 장외집단화 하였다.
- o 무엇보다도 시민운동단체들에게는 다른 결합에의 구심력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교라는 지붕밑에 대오를 갖추었다. 그 동기와 세계관적 관계로 보아 매우 광범하고 상이한 구성체로 그중에는 심지어 (절대 소수이기는 했지만)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교회내적 어른형성에 그 쫓점을

맞추다가 80년대 중반부터 교회내적 여론을 초월한 "제2의 여론형성" (zweite Oeffentlichkeit)의 일환으로서 자체발행 잡지, 소책자, 전단 등 발행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80년대의 이와 같은 집단과 과거의 야당정치집단간 접근방법상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연속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우선 근본적인 정치적 접근방법 대신 동독사회의 주요한 개별분제를 쟁점화 시켰다. 또한 중앙집권적 대신 기초적 직접 민주주의식으로 조직되었으며 권력 권력지향적이기 보다 문화윤리적이고 사회윤리적이었다. (H. Knabe : Politische Opposition in der DDR. In : Aus Politik und Zeit geschichte, Bonn 05. Januar 1990. S.23 참조)

- o 이와 같이 상이한 비공식 민권운동단체, 평화운동단체, 인권단체, 환경단체의 정치적 야권집단으로의 점진적인 변형은 8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되었다. 그중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이 제일 먼저 구성되었다.
- o 이들이 벌인 중요한 사건으로서는 동독내 근본적인 정치적 개혁 촉구 (예 :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명제설정서 또는 1988년 6월 Friedrich Schorlemann이 Halle에서 거행된 종교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적 쇄신을 위한 20대 테세형식의 정치적 개혁방안), '87년 9월의 Olof Palme 평화행진과 같은 활동, SED와 SPD간의 논쟁문서(Streitpapier)에 관한 광범한 토론, '88년 6월 Liebknecht-Luxemburg 데모시 공개적인 등장, 특히 1989년 5월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최초의 집중적 항의로 선거부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린 사실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o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야당단체들은 새로운 정치집단으로서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던 바 그와 같은 것중에는 "Neues Forum" (신광장 : 89년 9월 9일 창립), "Demokratischer Aufbruch" (민주돌진 : 1989년 10월 30일 구성), "Sozialdemokratische Partei" (SDP 사회민주당 : 89년 10월 7일 창립), 시민운동단체 "Demokratie Jetzt" (민주주의 당장: 89년 9월 12일 테세 및 호소문), "Vereinigte Linke" (연합좌파 : 89년 9월), "Gruene Partei" (녹색당 : 89년 11월)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o 이들은 '89년 10월 4일 유일하게 단 한번 공동호소문과 함께 여론앞에 등장하였는 바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더불어 UN 감시하에 민주선거가 실시될 것을 촉구하였다. (전계서 및 "die tageszeitung", Berlin 9. Oktober 1989 참조)
- o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볼때 동독의 시민운동 단체는 비교적 뒤늦게 형성되었고 장기간에 걸쳐 심하게 분열되어 있어 일반 여론에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
- o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에 입각한 방향설정과 목적관념에 있어서도 동독의 야당운동과 폴란드나 헝가리의 야당운동간에는 극심한 차이점이 있다. 폴란드나 헝가리의 야당에서는 "새로운 민주적 사회주의" (demokratischer Sozialismus), 70년대말 이후 "제3의 길"과 같은 논의가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음에 비해 동독에서는 그와 같은 논의가 '89년말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동독의 새로운 집단이나 정당간에는 차이점이 부정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변혁이 일어난 시점까지 프로그램에 입각한 방향설정에 있어서 커다란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와 같은 것으로는 SED의 권력독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 스탈린주의로 변형된 사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 자본주의 소비사회에 대한 대체방안, 민주적으로 형성된 정치체제에의 방향, 책임감 있는 법치주의국가에의 방향, 공개적이고 민주주의 통제하의 환경보호적, 사회복지적 경제구조에의 방향, 문화.교육.운영에 있어서의 자기책임하에 자유스럽고 창조적인 발전에의 방향, 동.서독이 협력적으로 연계하면서 군축 및 전세계적인 정의가 진유럽 통합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게하는 외교정책에의 방향설정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
- o 이와 같은 새로운 운동단체와 정치단체가 대중운동과 민주적 변혁의 선도자들이었다. 민권운동단체의 활동가들은 '89년 여름과 초가을의 정치적 진공상태 (SED의 행위불능 상태) 속으로 돌입하였다. 그들은 출국여행 물결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쟁점화하였으며 곧이어 야당의 지위를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속에 격상시켰다. 그들은 사회현황에 관한 사회전반에 걸친 대화를 촉구했다. 특히 '89년 9월 11일 "Neues Forum"의 호소는 상황을 돌변시켜 버렸다. 단 며칠동안에

25,000명이 서명운동에 날인했다. 수만명, 수십만명이 시위를 벌이면서 "Neues Forum"의 등록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 o 이미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민주적 촉구를 주장하는 수십만에 이르는 전국적 시위활동과 성토대회가 일어난 과도기가 바로 혁명적 변혁의 시작이었다. 이제부터 대중자체가 사회의 변화를 위한 중대한 주체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대중운동의 역동력은 거의 매일 커졌으며 곧이어 민중운동단체의 활동동기, 요구사항, 목표와 점점 일치되었다. 그러나 민권운동단체는 계속해서 변천하는 대중운동의 성격상, 그 이상으로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민권운동단체가 구정권을 반대하여 등장하면서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게는 되었으나 동독을 새롭게 구성할 혁신적 세력으로서의 시민, 민권운동단체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 o 시민운동단체가 조직상 분열현상을 극복할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극복하려고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상황은 더욱 가중되었다. 새롭게 생성된 절대다수(대중)는 3월 18일 선거결과로 뚜렷이 보여주듯 급진적 민주주의나 개인적 자기계발은 물론 강요되지 않는 스스로 결정에 의한 사회주의나 "제3의 길"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선 사회복지문제, 조만간에 생활수준이 개선되리라는 희망,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 (gutes Geld fuer gute Arbeit), 충분하고 다양한 상품공급과 같은 현실적인 것들을 요구했다.
- o 어느 사회주의 실험에서나 항상 그렇듯 새로운 것이없는 구태의연한 동독에서 대중운동의 방향과 변혁과정의 변화추이는 서독과의 무조건 통일(Vereinigung), 서독식 경제모델과 사회모델과의 동화(Adaptation)로 귀착되었다. 11월 9일 이래 서독의 정당체제를 통한 자매정당에의 신속한 간섭(Ueberlagerung)은 동독정당과 동독의 자율적 발전 가능성을 점점 좁혀버렸다. 이미 과거부터 잠재되어 있던 모순으로 인해 추진세력간에 근본적인 구조재편 작업이 일어났다.
- o 민권운동단체가 새로운 정치집단으로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도부로의 성장, 정신적 해게모니나 새로운 민주적인 대체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현실적 기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변혁중의 변혁 (Wende in Wende)은 동독의 민주적 변혁으로 장차 이득을 취하는 계층에게도 그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다.

- o 동독 민주적 변혁의 두번째 주체자는 신교 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전체가 아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민권단체와 민권운동단체에게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교는 이와 동시에 장기적이고 모순에 찬 과정속에서 동독의 단계적 개방과 개혁을 위한 독자적인 사회정책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주의적 개혁 세력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신교는 새로운 사회적 개방이 조성됨에 있어 괄목할만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교회자신이 일반주민들은 물론 사회적 관심과 욕구의 대변자가 되었다. '88/'89년, 모든 종교회의에서는 동독의 사회현황에 관한 토론이 철저히 수행되었으며 개혁에의 촉구를 여론에 반영했다. 권력의 진공상태가 발생했을때 교회는 보완기구, 통합기구, 법률 기구가 되었다. 개혁이 폭력없이 수행될 수 있었음은 교회의 커다란 공헌 때문이었다.
- o 그러나 교회대표자들은 신교의 참여가 장기간에 걸쳐 상이한 추세와 접근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상이한 비중으로 점철되었다고 교회자체에 대한 비난을 삼가지 않았다. 즉 그와 같은 것은 지배관계에 대한 적응과 비판, 공식적 정책과 야당 속에 결속, 체제의 개혁능력에 관한 환상, 본질적인 제한에 대한 인식과 같은 것이었다.
- o 동독의 비판적 인텔리 중 일부, 그리고 문화엘리트 역시 민주적 변혁의 준비과정과 도입에 적지않은 역할을 담당했다. (세번째 주체자)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특정인들 - 그중 대표적 인물이 Christa Wolf임 - 이 구동독의 예술가와 심지어 작가들을 지명하면서 비판했는데, '89년 11월까지 서독에서는 이들이 SED가 주도하던 동독사회에 대한 "비판적 정신적 지도자"로서까지는 추앙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동독에서 의식적으로 토론이나

완전히 당중심으로 경직되었던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투쟁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 오늘날의 관점으로론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나 - Christa Wolf, Stephan Heym, Christopf Hein, Volker Braun 등의 작품의 사회비판적 효과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 o '89년 11월 4일 500,000명이나 참여한 가장 대규모의 인상깊은 시위를 조직한 것이 동베를린의 예술가들이 아니었던가? 그렇지만 예술가들이 행한 동독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의 형태는 현실적으로 광범하게 대중에게 전달되지 못했음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SED의 실상에 대해 무서운 비판을 가했던 많은 작가들은 "민주사회주의적" (demokratische-sozialistisch) 확신과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위해 봉사할 것을 고수했다. 이와 같이 "민주사회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던 동독의 인텔리와 예술 엘리트들은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 같은 다른 동유럽 국가의 인텔리와 예술엘리트의 대부분과 달랐다.
- o 이와 같이 상이한 기본관점으로부터 상이하고 명확한 행동양상, 요구사항, 목표가 생성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중 대부분은 - 동.서를 막론하고 - 이미 과감한 단절의 긴급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변형이나 발전의 가능성을 아직도 믿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왜 이 단체가 변혁과정에서 추동적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될 것이다. 동독의 변혁시 이들의 무시 못할 역할이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사회적 참여의 동기와 효과는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분화시켜 파악해볼 필요는 있다.
- o 동독의 민주적 개혁의 네번째 주체자는 SED내 비판적 개혁주도파였다. 유감스럽게 '89년 여름과 초가을에야 비로서 민주주의 민중운동의 형성과 함께 SED내 비판자와 개혁자들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는데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다. 그중 일부는 오늘에야 비로서 - 결과라는 압력하에 - "깨달음에 이르는 속성학습과정"을 밟으며 방황하고 있다. 당내 비판적 저변층은 곧 시위와 성토대회로 연결되어 SED의 구지도층과 신지도층을 반대하면서 활동하였다. SED 지도층은 이미 '89년 9월에 당내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서독의 동독 연구 전문가가 얻은 평가이다.

1.5 SED내의 논쟁

- o 특히 SED내 비판적 개혁주도파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집권이래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되었다. 고르바초프의 Glasnost와 Perestroika,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 "신사고"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주의의 출발 등은 SED내에서 처음에는 매우 일반적이면서 소규모 집단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어떤 조치가 없었지만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 무엇보다 SED 인텔리들의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호응은 이미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기전부터 모스크바의 정계에서 세계적인 문제점(무기, 전쟁과 평화, 환경, 제3세계)들의 폭발성을 인식하여 제기된 "체제간 협력", "공동안보(Gemainsame Sicherheit)", "대화", "사회체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내적인 질"(경제적 효율성, 민주주의, 개인의 생활방식)의 추구, 사회적 격차, 사회의 민주화와의 필요성 같은 문제점이 논의되고 일부 비판적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으로 볼때 매우 이해할만한 일이었다.
- o SED의 지도층과 기구내에서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불안과 거부자세는 비록 절대다수의 SED 저변층이 막연하고 무책임하게 호응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SED내에 갈등의 소지가 잠복해 있다는 신호나 다름없었다. '87년 이래 SED 지도층의 소련의 개혁정책에 대한 점점 분명하고 교만에 가득찬 거부는 이와 같은 잠재되었던 갈등을 더욱 표면화시키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독일어로 발간되는 소련잡지 "Sputnik"이 동독에서 판금조치된 이래 당내 갈등을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SED 저변층에 의한 수만통의 개인적, 집단적 항의편지는 늘어만가는 징계조치와 탈당보다 더욱 심각한 조짐이었다.
- o '80년대 중반이래 SED내에서는 상당기간동안 당의 "유일성"과 "일치성"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쉽게 파악하기 힘든 변화된 전략적 상황이 생성되었다. SED는 엄격한 중앙주의, 준군사적 규율, 반대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세계관적 확신, 실질적 방향설정과 관련하여 보면 모든 다른 유일정당과는 달랐다. 특히 외부적으로는 당의 지도층을 중심으로 일치단결되어 공고한 듯이 보였지만 SED의 80년대의 내부상태는 이와 전혀 달랐다. 물론 공식적 정책은

마지막까지 보수적 블록인 정치국, 중앙위원회의 다수, 중앙기구, 하부구조의 다수, 관구 지도 서기국과 군당지구 지도서기국 등 대다수의 이데올로기 생산자들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D는 당원수가 230만명 (성인주민의 약 20%)이라는 사실로서도 알수 있듯이 동기와 복적의식이 다른 다양한 세력의 저수지나 다름 없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o 국가정당이었던 SED의 당원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경력이나 이를 위한 직업훈련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이었다. 당원이라는 사실은 경력만능주의자에게 승진을 위한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SED내에는 당을 통해 민주사회주의적 대안의 실현, 즉 "현존사회주의"(real existierender Sozialismus)의 철저한 개혁을 실현해 보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경제, 국가, 사회에 있어서 SED의 철저한 권력독점이 이러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유일한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보였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한 "공상가"나 "환상가"로 치부만 할수는 없었다.
- o 그리고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USAP)과 일부 소련공산당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한 개혁집단이 스탈린주의식 중앙집권적 정당의 정상을 차지함)의 발전추세는 SED내 개혁파에게도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중앙집권적으로 구성된 국가정당 SED를 통해 동독의 개혁과 민주화를 추구했다는 것은 SED 개혁파의 전략적 오판이 있었다.
- o SED라는 저수지속에서 - '85년 이후의 새로운 현상으로서 - 점차적으로 두가지 기본조류가 형성되었는 바, 그것은 "동독역사상 최고의 성공적인 시대"로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연장고수"하느냐 아니면 "변화와 개혁" (그러나 그 내용은 아직도 매우 불명료하게 반영되었음)을 추구하느냐 였다.
- o 이와 같은 발전과정중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룬 사건은 '87년 8월말 SED와 SPD간의 "이데올로기 논쟁과 공동안보" (Der Streit der Ideologie und die gemeinsame Sicherheit)라는 공동문서의 합의였다. (Der Streit der Ideologien und die gemeinsame Sicherheit. In : Neues Deutschland, Berlin, 28. August 1987 또는 Sonderdruck "Vorwaerts", Berlin 1987 참조)

- o SED 정치국이 이 문서의 작성과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토론을 거쳐 이를 인정하였다. 정치국에게는 이 문서가 대외적인 평화정책과 대화 정책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국내정치적으로는 SPD와의 "공동문서"를 통해 - "이와 같은 제안은 고르바초프일지라도 제시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믿고 - "신사고"와 "대화과 개혁의 자세"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스스로 주민들로부터 정당성 확보와 호응을 얻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희망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때 이 문서의 파급효과는 우선 이중적이었다. 그러나 SED 지도층과 SED 저변층 일부간에 논쟁문서와 연계하여 의도하던 바가 매우 상이했으며 결국 SED 지도층이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되었다.
- o SED가 이 문서를 수용했다는 점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SED내에서 다년간에 걸쳐 특히 '68년이래 전혀 없었던 토론과 이념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문서의 가치는 동.서간 "평화보장"을 위한 상이한 정치세력에 관한 합의로서 "공동안보"의 조성을 위한 합의로서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 토론이 진지하게 되면 될수록 "평화"와 "평화보장"에 관한 이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차이가 공공연하게 드러났다. SED 지도층에게 평화와 평화보장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군사전략적 세력균형의 문제이지, 이는 군축을 통한 감축이지 대화나 "적대의식" 해소 문제, 인권의 실현, 분쟁대처, 합의점 도출능력을 갖춘 평화 애호적 사회의 실현 문제가 아니었다. SED내에서는 물론, 점점더 그 외부로부터 이미 "평화토론"에 있어서 새로운 차이점이 등장하였다.
- o SED와 SPD 공동문서의 중요 전제조건과 기본명제가 SED내에서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 도그마적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식 이데올로기적인 명제에 대해 정면으로 상충 관계에 있었으므로 SED의 생각과 공동문서의 내용사이에는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대화와 적대의식의 해소라는 명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상의 계급의식과 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의 명제, 자본주의 체제의 평화보장능력과 개혁능력 명제에 대한 제국주의의 체제내적인 침략성 및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악화에 관한 합법칙성 명제, 평화공존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보편적이지 시간적 제한성이 없는

규범이라는 명제에 대해 평화공존이 계급투쟁의 특수형태라는 명제, 사회체제의 상호인정 명제에 대한 세계적 혁명과정 명제, 체제간의 평화적 경쟁과 그 발단의 공개성 명제에 대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우월성과 시대의 성격상 인류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법칙적으로 전환된다는 명제 등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 o 그러나 동독의 내적 발전과 직결되어 있고 정치현실에 대해 모순을 지적한 논쟁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더욱 강력한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논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 자유스런 정보와 공개적인 비판, "체제간 경쟁"에 관한 자유스런 토론, 체제간 경쟁의 공개적이고 비교가능한 결산, 다른 체제의 장점 인수, 신문과 기타 간행물의 교환, 시민사회의 대화에의 참여, 인간의 상호방문, 학술·문화·스포츠 행사의 공동거행과 같은 요구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었다. 이와 같은 것은 '89년 가을이래 퇴색하여 진부한 것처럼 보였지만 당시의 동독현황으로서는 엄청난 폭파력을 갖고 있었다.
- o 이와 같은 주장과 함께 논쟁서의 정신은 SED내 비판세력이나 미미한 비판세력으로부터 동독의 단계적 개방·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신호로서 이해되었으며 동독 특유의 Perestroika 과정의 발단으로 여겨졌다. 이것이 바로 논쟁서를 작성에 참가한 대부분의 의도이자 의지였다.
- o SED와 SPD간의 논쟁서는 명백하게 SED내 개혁세력을 강화시켜 주었으며 교회로부터 야당 민권운동단체의 대부분에 달하는 SED내외의 사회주의적 개혁파로부터 대대적인 호응을 받았던 동독 최초의 기록문서였다. 정치국은 이 문서의 이와 같은 파급효과를 계산하지 못했다. 불안은 엄청났다. 그들은 탈출이 불가능한 "악순환"에 빠져버렸다고 파악하고, 이 문서의 가치를 절하하기로 결정하여 직접적으로 내용상의 반박논리를 (예 : 자본주의체제의 평화유지 능력 대신 제국주의 침략성에 관한 일방적 주장) 개발하고, 동시에 동독내에서 팽배하고 있는 사회적 토론에 대해 제재하였는가 하면 드디어 서방측에서의 토론과 견해표명을 비롯하여 이미 예정된 인쇄조차 금지해 버렸다.

- o 위와 같은 조치에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는 사회학자들에게 반격의 조롱이 잇따랐고 보수적인 동료들로부터 "사회민주주의적 이탈자" (Sozialdemokratische Abweichler) 라고 낙인찍혀버렸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SED내에서나 동독내에서 전반적으로 "정치적 변혁과정을 촉진한" (J. Schmude : Ein "Kleiner Schrift" der richtige bleibt. In : Sozialdemokratischer Pressedienst, Bonn, 15. Dezember 1989, S 3f 참조) 이 문서의 파급효과를 더이상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문서의 작가나 지지자들 조차 이 문서가 제공하는 동독의 불가피한 민주화와 개혁에 관한 공개적이고 사회적인 토론을 물론, 특히 SED 정치국의 모순된 자세를 공개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모든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했다. 또한 이들중에도 SED와 SPD의 논쟁서와 동독에게 주는 의의, 역할 나아가서 특히 실현가능성에 관해 엄청난 견해차가 있었다. 결국 이들중에서 원래 이 문서를 지지하였거나 잠정적으로 선호했던자들 일부가 탈퇴하였다.
- o SED 중앙위원회 제7차 본회의 및 제8차 본회의 ('88년 12월 및 '89년 6월)에서 SED 정치국과 SED내 기구내에서 각종 개혁반대세력이 비판적이고 개혁지향적 잠재세력을 꺾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로써 SED내 갈등은 더이상 해소되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증대되기만 하였다.
- o 이데올로기 통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사회학에 있어서도 거리감은 점점 커졌다. 장기간에 걸쳐 사회학자중 절대다수는 사태의 뒷전에서 숨어지냈다. 즉 '89년 8월까지 "Neues Deutschland"지 주도적 "당이론가"들은 "발전된 사회주의적 사회 (entwickelte sozialistische Gesellschaft)의 역동력"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향하는 부단한 과도기"를 주장하면서 "공산주의자가 항상 옳다"는 주장을 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Neues Deutschland지 1989. 8.8/9, 8.30, 9.1 등 각각 제3면의 사회학자에 의한 논설기사 참조) 경제체제, 법치주의 체제, 정치체제의 개혁을 비롯하여 광범하고 새롭게 사회주의 사상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등장하였다. 개혁주장자들은 단지 소규모로 연구하고 토론하였는데 SED로부터 결코 올바르게 이해되어 본적은 없다. 이들은 동독의 긴급한 변혁

이 필요했던 80년대초의 토론과 그들의 주장을 연계하였는데 결코 SED의 영도적 역할에 대한 비판을 체계화하지 못했다.

- o 그러나 '89 가을 주민들의 체제거부와 함께 처음으로 SED내에서 갈등이 분출되었다. 비판세력이 대중운동으로 연계되었으며 중앙위원회건물앞 등지에서 "독자적인" 정당원들의 시위가 조직되었는 바, SED의 극복이 그 주된 요구사항이었다. SED의 정치국과 중앙위원회는 이와 같은 SED 저변층 등장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신임당수 Krenz 역시 대안을 인정하지 않다가 비판적인 SED의 기층이 이미 수주일 간 주장해온 요구사항의 압력에 못이겨 그 직위를 잃고 말았다. 중앙위원회가 계획하여 결정한 당대회 대신 비정기 전당대회를 열었는 바, 근본적으로 인사와 프로그램을 혁신하는데 그 목적이었다. 미약했지만 최초의 균열이 기구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 o SED내 개혁추구파의 세력과 영향은 비록 숫적으로는 미미한 반대파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그 초기 단계임)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SED내에 이와 같은 조류가 없었던들 동독의 변혁이 SED나 SED가 주도하던 통치기구나 공안기구의 반발없이 그토록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으로 수행될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SED는 국가정당임과 동시에 전사회에 군림하는 통치권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는 소련의 역할과 동독 영토주둔 소련군의 역할 역시 변혁의 평화적 진행에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o 이와 같은 SED내의 매우 상이한 개혁추구세력의 취약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었다. 개혁추구세력이 사회에서 비판적 잠재세력이 한계에 부딪혀 박해받고 있을때 그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나서지 않았다는 점, 개혁추구세력이 야당 민권운동단체들과 광범한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개혁세력이 장기간동안 개혁방안을 단지 그 권내에서만 토론했지 심지어 '89년 가을까지 진정하게 토론하지 않았다는 점, 개혁추구세력이 서로 연계하여 조직하지 않고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개혁단체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기구의 압력과 금지조치에 계속 굴복했다는 점 등이다.

- o 각 단체의 대표들이 서로 상이하게 행동을 하게 된 이유 역시 좀더 정확하게 연구되어야 할 일이다. 당의 위협적이고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조치 - 징계조치, 제명, 자격박탈, 사회복지적 손해위협 - 는 상당히 효과가 컸다. (때때로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란 매우 보잘것 없는 사실일지라도 그와 같은 특권의 금지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개혁주도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차단이 아마도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다. "현실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비교할때 더 역사적 발전이라는 법칙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민주화되고 개혁되기 이전에 우선 준수되어 방어되어야 한다고 역설되었다.
- o 동. 서체제간 갈등속에 "체제의 대립성"이 점점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관점을 더욱 조장하였다. 역사적으로 특수하게 형성된 정당으로서 그 당의 심층적 규율에 대한 이해없이 "생물학적 문제" (고령 때문에 "지도력"으로부터 은퇴)가 조만간 정치적 해결방안을 스스로 제시해주고 최소한 용이화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이 우선했다. 동독내 전략적인 상황에 대한 오판 (위기의 심도, 갈등 잠재력의 진전상황, 실질적인 대중의 분위기) 역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인 바, 이와 같은 것들은 대다수가 SED의 권력독점이 무너지고 있던 '89년 여름과 가을까지 체제의 내적 변혁 가능성과 함께 민주사회주의적 변형의 가능성을 믿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 o 그럼 어째서 SED 지도층은 일부 차이점과 마지막에 준비된 호네커의 실각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배공산당과 달리 위기의 순간에서마저 하나의 개혁세력 형성을 허용하지 않았는가? SED내 당간부(Kader) 선발의 원칙, 특권을 유지하려는 욕심. 개별적 부정부패,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자체내 집단적 토론과정의 억압, 최고위층만 참여하는 "신들의 회의" (Rat der Goetter)에서조차도 정보가 선별적으로 전달된 점, 위기가 성숙되어가고 있음을 보면서 Honecker-Mittag 일당이 모순에 빠져 버렸음에도 시민적 용기가 걸핍된 점, 비판적인 당 저변층에 대한 당지도부의 이데올로기적 차단이 우월했다는 점들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2. 혁명인가 복고인가 - 동독의 변혁과 독일통일과정

- o '89년 10월/11월 동독의 변혁은 악화일로의 경제, 사회, 정치의 위기의 결과이자 장기간에 걸친 동독의 현실에 대한 주민대다수의 점증하는 불만의 결과였으며 SED 통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 항변의 결과였다.
- o 그러나 동독 "현실사회주의"의 위기잠재성은 이미 그 건국 이래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와같은 위기잠재력은 과거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라는 조건하에 소비에트식 스탈린주의식 사회주의 모델을 인수한 - 약간 변조되었다고는 하더라도 - 때부터 자리잡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잠재성은 또한 동독의 건국과 존립이 소련과 너무 밀착되어 소련에 의해 비록 그 존립이 전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할 정도로 종속되어 있었다는 기정사실속에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
- o 이와 같은 위기의 잠재성은 동독이 한 민족의 일부로서 성립된후 결국 동독주민의 대다수에게 매력적이 되어버린 거대하고 능력있는 독일(서독지칭)이라는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대치되어 있었다는 기정사실 속에도 있었다.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이고 유동성이 없는 계획경제의 역기능,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시민들의 관심, 욕구, 가치기준에 어긋나는 철저한 당우위 정치제도간의 모순속에 위기의 잠재성이 있었다.
- o 이와 같은 위기의 잠재성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발전은 그 초기부터 실패의 자동적인 연속은 아니었다. 그와 같은 상태로 40년간이나 존립할수 있었던 국가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개혁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잠재성이 결코 둔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즉 근본적 쇄신과 민주화의 진정한 시도와 사회주의 뿐만 아니라 동독이라는 국가마저 붕괴시켜버렸다. 이로써 역사적 실험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동독에서 변혁의 속도는 대체로 경이스러웠다. '89년 가을, 더이상 견잡을 수 없는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킨 위기의 요인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도 하지만 정치체제 자체로부터도 연유한다. 이와 같은 단순구조(Monostruktur)로 형성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폐쇄적인 중앙집권적 체제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줄수 있으나 바로 이와 같은 구조속에 치명적인 급소가 있으며 체제자체에 체제내적 위기극복 장치나 위기통제장치는 물론 개혁능력과 변혁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순이나 갈등이 일시에 첨예화되기 쉽고 또한 주민대다수의 대규모 저항이 있을 겨우 체제가 급속하게 붕괴된다. 이러한 체제속에서는 중요한 권력의 지주와 집권정당의 상층부 독점권의 전복만으로도 전체제는 비교적 급속도로 붕괴되어 버린다.

- o 이에 추가하여 동독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SED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만한 아무런 방안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진정한 지적인 토론의 전개과정도 없었으며 SED 지도층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 완전히 행위불능 상태였음을 들지 않을 수 없다.

2.1 혁명인가 ? 복고인가 ?

- o 동독의 혁명을 그 본질상, 그리고 그 특성상 어떻게 분석하고 규정화할 수 있겠는가 ? 이와 유사한 질문을 중유럽과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변혁에 대해서도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Dahrendorf는 "우리는 사회주의를 개방사회로 전위시키는데 있어 도움이 될만하거나 단지 이해만이라도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이론을 갖고 있지 않다" (R. Dahrendorf : Die offene Gesellschaft und ihre Aengste. Rede auf dem. 25. Soziologentag. In : Frankfurter Rundschau vom 13. Oktober 1990. S.7 참조)라고 말한 바 있다.

- o 사실상 고전적 혁명이론은 작금의 과정 분석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수 밖에 없다. 또한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의 변혁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서 분석되어야 함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설정,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이론적 착상이 필요하다. 우선 당시 동독의 변혁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o Habermas가 처음으로 중.동부 유럽의 혁명에 관한 상이한 관점과 해석방법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J.Habermas : Nachholende Revolution und linker Revisionsbedarf. In : Die nachholende Revolution, Frankfurt am Main 1990, S. 181 f 참조) 어떻게 동독변혁의 특징을 확정할 수 있겠는가 ? 이 역시 오늘날 상이한 학파와 정신적 사조에 근거하는 각종 상이한 견해가 있다.
- o 다른 저자나 마찬가지로 필자는 동독의 변혁은 '89년 10월에 시작되었으며 우선 민주적혁명으로 서서히 발전되었는 바 다음과 같은 발전단계를 통해 진행되었다고 본다.
 - 혁명전 단계 : 1989년 여름부터 1989년 10월초까지 :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는 사회전체의 위기의 성숙
 - 혁명단계 : 직접적 민주화 변혁기간인 1989년 10월 6/7일부터 11월까지 : 민권운동의 활발한 등장, 새로운 정치단체와 정당의 성립, 주요 구권력구조의 붕괴, SED 권력독점의 폐기, "2중 통치" (Doppelherrschaft), 동독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정치주체자들의 필사의 노력
 - 혁명후 단계 : 이미 1989년 11월 9일부터 시작된후 인민의회선거, 화폐.경제 통합, 서독에의 가입과 같은 각종단계를 거친후 서독의 경제모델과 사회모델에의 적응 (Adaption) 과정이 착수되고 관찰된 시기. 각종세력의 변형과 요구사항이 뒤따랐으며 결국 서독에의 합병(Anschluss) 내지 가입(Beitritt)이 달성됨. 또한 이 과정에서도 철저한 민주적 변화가 뒤따랐음.

- 혁명이라는 개념을 지배세력의 전략적 세력애로의 교체로서, 구지배구조의 극복과 신지배구조의 구성으로서 그리고 궁극적인 사회의 변혁으로서 이해한다면 동독에서 일어났던 것은 (다른 중. 동 유럽국가에서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혁명이었다. 이것은 또한 주로 '89년 10월/11월에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강력한 주민봉기에 의해 강요된 정치적, 사회적, 정신적 변혁과정으로서의 혁명이었다. 이 혁명의 대표적 특징중의 하나는 전반적으로 평화스럽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동독의 혁명은 동유럽 혁명의 일부분이었다. 이 혁명은 소련과 폴란드와 헝가리의 발전에 기초하면서 그 자체가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의 변화를 위한 추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 동독혁명역시 “뒤늦게 따라가는” (nachholende) 특징 (전개서 S. 180/181 참조)을 지니고, “유럽으로 돌아가도록” 유도되었으며, 민주적 법치국가, 다원적 정치체제, 시장경제에의 “복귀” (Rueckkehr)와 더불어 가능한한 현대성에 접목되도록 하는 “복귀”를 의미했다.
- 그러나 동독혁명은 “개혁적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사상이 철두철미하게 결핍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개서 S. 181 참조)는 Habermas의 진단은 최소한 필자의 견해로는 제1단계와 제2단계에 대하여 완전히 직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동독혁명이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회유형을 탄생시키지 않았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소한 변혁의 초기에 있어서는 아직도 완전히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 당시 동독의 야당인 민권운동단체, 새로운 정치집단과 정당, 당시의 지배정당 (SED)내 개혁세력 등은 처음에는 동독을 살리기 위해 그것도 혁신적으로 민주화된 법치주의적이면서 다원화된, 개방된 동독을 창출하기 위해 나섰으며 이것은 곧 일종의 민주화된 인간적 사회주의의 변형이었다. 장벽은 점차적으로 철거되어야 하며 동. 서독이라는 두국가는 장기적으로 유럽의 일환으로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되어 있었다.

- 그러나 민주혁명에는 곧이어 하나의 단절 (knickte ab)이 일어났다. 11월 9일 이후 새로운 단계, 즉 서독의 경제, 정치, 사회에의 적응(Adaption)이라는 단계로 돌입하였다. 그리고 혁명후기 자체에 있어서도 과거의 것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것도 있었다. "원탁회의"와 그 결론, 특히 헌법초안과 사회복지헌장, 시민운동에 의한 특수한 파급효과, 생성과정에 접어든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할과 같은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 변혁중의 변혁, 변혁의 분기점

- 동독주민의 대중의식의 변화는 이미 11월/12월에 식어들기 시작했다. SED 지배를 무너뜨린 "우리는 국민이다" (Wir sind das Volk !)라는 구호대신 "우리는 한 국민이다" (Wir sind ein Volk !)라는 구호가 점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동독을 위하여" (Fuer eine neue DDR)라는 요구대신 "통일조국 독일" (Deutschland - einig Vaterland)이라는 요구가 선도적인 정치세력간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 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까? 변혁의 경과에 대한 원인과 변혁중의 변혁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혹자는 말하기를 의식의 조작이요 외부의 간섭이라고들 했다. 의심할 바 없이 그와 같은 것도 있었다. 그리고 Bonn의 각정당은 장벽이 개방된 이후 자매정당을 통해 이미 동독주민속에서 매우 높은 차원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각 정당은 당시 동독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는 바, 주로 서독 미디어의 지원을 받으면서 서독지역에서 선거전을 감행하였다.
- 동독에 대한 이와 같은 서독의 정당과 미디어를 통한 간섭은 동독내 그리고 동독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여지를 점점더 줄여 버렸다. Bonn에 있는 서독정부에게 이니셔티브가 넘어가 버렸다. 서독이 점차로 동독의 발전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결정을 주도하였다.

- o 그러나 이와 같은 변혁중의 변혁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동독 체제내에 있었다. 동독에서는 단순히 후기스탈린주의식 통치체제만 붕괴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회체제의 전체적 붕괴임과 동시에 사회질서 전체의 붕괴이자 가치체제의 붕괴였다. 인간의 심각한 정체성 (Identitaet) 위기가 발생 되었으며 사회적인 진공상태가 생성되었다. 이러한 진공상태로부터의 돌파구 모색과 계속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돌파구 모색이 절실했던 가운데 11월 9일 갑작스레 장벽이 개방되었다.
- o 아래로부터 실제적인 통일은 인간들 사이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짧은 기간동안에 수백만명이 서로 만났다. 동독에서 새로운 돌파구 모색은 바로 서독의 성능이 우수한 경제모델과 사회모델에서 찾아야할 것 같았다. "구원의 강변" (Das "rettende Ufer")이 그토록 가깝게 보였으며 서독마크크(DM)의 도입은 고도의 물질적 생활수준에의 진입로였다. 무엇때문에 자체적 개혁이니 새로운 사회주의 실험이니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것을 지향할 망정 필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무엇때문에 총력을 경주하면서 스스로 늪에서 헤어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 Helmut Kohl 수상과 서독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 그것을 보장해준다고 했지 않은가!
- o 새로운 사회주의로의 새로운 출발 - 그것은 동독의 사회주의속에서 인간이 실제로 체험한 것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미디어를 통해 드디어 동독의 역사를 근거하여 스탈린식 죄악상, Stasi의 조작, 부정부패, SED 지도층의 개인적 치부와 특권향유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정치체제의 정당성 위기는 빈틈없이 완벽할 정도로 팽배했다.
- o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기능을 발휘할만한 사회주의적 대안이 없었 으며 게다가 사회주의는 이미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Perestroik의 위기는 명명백백하였다.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로부터 진정으로 사회주의적 혁신을 위한 역동력이 더이상 나올 수 없었다. 또한 동독의 새롭고 독자적인 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할 만한 출중하고 신뢰할만한 정치세력조차 없었다. 민권운동단체와 새로운 정치집단도 그와 같은 것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 동독주민의 대다수는 급진적 민주주의, 혁신된 동독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으며 대중은 민권운동 단체와 사회주의 개혁세력에 반대하기로 결정해 버렸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실험은 말할나위 조차 없고 새로운 동독이 아니라 서독과의 통일(Vereinigung)이었다. 그러나 성능이 우수하고 현대적이면서 민주적이고 사회복지적인 공동체 (곧 국가체제 : Gemeinwesen)의 구축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였는 바, 구동독은 물론 특히 중.동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였다.

- 중.동부 유럽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 볼때 동독에서는 독일통일을 통한 변형과정에 있으므로 여러가지 특수하고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양독국가의 변형과정과 통합과정(Der Deutsch-deutsche Transformations - und Intergrationsprozess)도 갈등의 소지와 위험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 중.동부 유럽 여러 국가들의 현대사회에로의 복귀와 재구축은 극도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국가에서는 새로운 위기상태를 극복하거나 생산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해주는 민주헌법의 시도,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도, 안정된 정당체제의 시도가 중요하다. 또한 최소한 인간의 주요 물질적, 사회복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능률적인 시장경제의 조성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의 "유럽에의 통합"이 중요하다. 어떠한 사회단체가 이에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이며 어떠한 변형전략이 동원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불리한 내외적 (각종 위기의 첨예화 및 중첩되는) 수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이 성취될때에야 비로서 중.동부 유럽의 혁명은 진정코 성공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혁명이 좌절될 위험은 상존할 것이며 특정 조건하에서는 심지어 새로운 권위주의적 해결방안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2.3 어떤 독일 ?

- 동.서독의 유기적 공동성장이라는 애초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미미할 뿐이다. 급속하게 진행된 통일, 그리고 구동독의 심각한 위기는 드디어 동독의 서독에의 가입 (Beitritt der DDR zur Bundesrepublik)의 향방에 전환점을 설정해 주었으며 서독식 모델의 전반적인 도입을 통해 드디어 국가적 통일은 달성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적, 사회복지적, 문화적, 사회적 통일은 매우 장구한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다. 8년, 10년 내지 12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 높은 생활수준과 함께 안정된 경제모델, 법치주의국가성, 정치문화, 문명사회의 발달, 국제시장에의 통합과 같은 서독의 장점은 미래의 독일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게 될 것인 바, 이는 곧 현대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 시민사회(buergerliche Gesellschaft)는 혁신능력이 있으며 개방적인 현대사회임이 입증되었는 바, 이는 바로 국가관료주의적 사회주의 모델의 붕괴를 볼때 명백한 사실이다. 즉 서독사회체제가 이곳 동독사회에서 더욱 우월하다는 사실이 실증된 것이다. 그렇지만 서독식 경제모델과 사회모델은 자동적으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다른독일"을 단순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닐뿐만 아니라 특히 동독에서 대다수의 인간들이 쌓은 경험, 지식, 자질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바로 무시못할 문제와 모순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 그리고 상반된 구조하의 사회체제가 직접 "통합" (Zusammenfuehren)되고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즉각 이전 (Uebergang)된 역사상 유일무이한 독일 통일과정은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과 새로운 갈등이 제기되었다. 즉 경제와 농업 등 산업분야의 와해, 점증하는 실업, 기존 직능과 자격의 가치절하, 생활환경과 관습의 심대한 전환, 새로이 조성되는 사회복지적 격차와 같은 것들이 있다.
- 구동독지역은 지금 시장경제로 향하는 어려운 과도기에 처해 생존에 급급하고 있다. 따라서 적응대책과 경과대책이 따르는 장기적 계획하의 구조개선방안이 현재 그

어느때보다 더 시급한데 아직까지 그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적 안정"이 이룩될 것이 비록 예상된다 할지라도, 아울러 민주적 입헌주의 공고화 과정 (demokratischer Konstitutionsprozess)과 동시 추진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o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전환 역시 아무런 마찰없이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과거의 강제적 배척 (Verdraengung)방식이 다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과거의 비판적인 청산작업 (Aufarbeitung)은 국가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아직도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잔재와 각종 강압이 남아 있다. 게다가 구동독 주민들에게는 기존 연속성으로부터 또다른 연속성에 빠져버리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 o 신생독일의 경제적, 사회복지적, 문화적 갈등의 소지는 이와 같은 변형과정속에 있다. 통독과정속에서의 문제점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자체가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갈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처하는가 라는 사실이다. 협력을 통한 통합인가, 일방적 적응을 통한 통합인가가 문제이다. 이점에 있어서 두체제중 "최상"부분의 절충식 접합 (eklektisches Zusammenfuegen)으로 전연 새로운 체제가 창출된다는 점은 불가능한 노릇이다. 과거 동독에 있던 여러가지 가치 (장점)는 다른 체제 즉 "현실사회주의"의 구성 요소였음과 동시에 새로운 이 사회의 내적 모순성을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례를 들어 보자면 보장된 노동권 같은 것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능력발휘 유인이 결핍되었기 때문이었다. 사회복지적 보장 역시 국가에 의한 후견조치와 연계된 것이었다.
- o 그러나 서독이 장기간에 걸쳐 무수한 갈등을 극복하고 형성해온 문명사회의 발전 수준을 과연 구동독지역의 독일인들이 계속 유지하고, 나아가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대두되는 바, 공식적인 정부정책을 통한 통일과정 (Vereinigungsprozess)에 있어서의 동독의 기여는 상당히 질곡당했다.
(Th. Schmidt : Ein Staat, Zwei Gesellschaften, In : Blaetter fue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Koeln 1990, H.10, S.1182 ff 참조)

- o 그러나 동독은 통일된 독일의 미래를 구성함에 새로운 것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새로운 것은 무엇보다도 민주적 변혁기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시민운동의 경험, 민주적 국민운동의 경험, "Runder Tisch"를 둘러싸고 대좌했던 각 정당과 운동단체의 경험, 자결권에 의한 민주주의 형태, 논의가치가 충분한 헌법초안, 일련의 사회복지에의 권리보장 등.
- o 동독의 민주적 변혁의 발전과정으로부터 창출되었던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것들은 무시당하고 장외시 되어 버리고 있다. 그래도 그중에서 사실상 아직도 남아 있거나 후일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비로소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은 주로 시민운동의 저력과 비판적 여론형성 추세와 의회주의의 정치적 다수구성과 같은 현상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와 같은 발전현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지는 변혁과정중의 다음과 같은 주요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요사항이란 이미 오래전부터 더이상 혁신력이 없어져 버린 사회유형의 극복, 권위주의 통치체제로부터 해방, 민주주의와 인권의 쟁취, 경제적 효율성과 개인적 생활방식의 전제조건 조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o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설정해보는 "과연 어떠한 독일이 생성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비단 독일인들만 제기하는 문제가 아님은 당연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독일문제란 곧 유럽문제이기 때문이다. 1990년도의 독일통일과정은 1871년의 독일통일과는 전연 다른 전제조건하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므로 건설적이고 무엇인가 다른 결과를 배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대대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동.서독 지역의 독일인들이 새로운 독일을 형성하는 절호의 기회를 유용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 o 미래의 전체독일이란 단순히 확장된 독일연방공화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른 국가에게 부수적인 흔적 (Folgeerscheinungen)을 남기지 않은채 한 국가가 해체된 적은 단한번도 없다. (J. Kuppe : Der Staat der SED in der Auflosung. In : Die DDR auf dem Weg..., 전계서 S.101 참조). 더우기 이는 바로 일민족 이국가(Zwei Staaten einer Nation)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서독역시

독일통일과정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변화될 것이며 비록 오늘날에는 아직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로 인한 문제점은 이미 구서독이 갖고 있던 문제점과는 전연 다른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서독의 발전상태가 단순하게 선형적으로만 계속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 o 사회복지의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 전통적 문제와 새로운 문제는 계속 존존할 것이다. 단순히 분배관계 (능력에 부응하는 임금)에만 연계되는 사회복지적 정의 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 보건과 개인적 계발의 기회를 비롯하여 닥아올 세대를 위한 사회복지적 보호가 포함되는 사회복지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자유스럽게 자신이 결정하는 민주적 생활이 중요한 것인 바, 정치 역시 명령만 해버린다는가 "위로부터" 조종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결정과 자결권 (Mitbestimmung und Selbstbestimmung)와 같은 것이 국민운동 깊숙한 곳에 뿌리내려져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개체의 관심이 집단의 관심보다 더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o 국가가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에 의해 통치되고 사회의 집단과 개체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변천되어 그속에 사회의 기구들이 광범하게 현실적 권한과 함께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 발전이란 현상은 무엇보다도 문명사회의 발전이라는 척도로서 가늠해 볼 수 있다. 노동환경과 생활환경속에 있는 현대사회의 갈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위험을 내포한 사회, 생활환경의 위협으로 인한 특히 생존 영역의 상위성, 모든 사람을 위해 관망과 선택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상태의 생존 기회 (R. Dahrendorf, 전계서 참조)라는 문제점과 같은 것은 현대사회의 갈등을 대표하는 단지 몇가지 사실일 뿐이다. 그리고 - Habermas가 이미 오래전부터 질문하고 있듯이 - 어떠한 "이성적 정체성" (vernuenftige Identitaet)과 어떠한 현실적 사회계약 (realer Gesellschaftsvertrag)이 과연 현대사회를 조성해 줄 것인가? 현대적 사회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단지 이권 (Interessen)과 환상 (Visionen)간의 쟁론을 통해 그리고 갈등의 생산적 해소로서만 생각할 수 있다.

- 서유럽 현대사회가 전세계적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은 더구나 중요한 사실이다. 경제적 강대국으로서의 독일은 이 사실을 확고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독일은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발전논리 (Entwicklungsolgik)가 전개되도록 함께 도와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것으로서 우선 새로운 기회는 물론 갈등과 위협이 공존하는 유럽속에서 독일의 역할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독일은 단계적 군축과 새로운 유럽의 안보질서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독일의 경제적 저력을 통해 그리고 당분간 그 미래가 매우 불확실한 동유럽 여러 국가의 현대화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발전된 사회보장체제, 정치적, 민주적 자유, 경제적 책임감이 전유럽에 걸쳐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식 유럽"이 될 것이 아니라 "유럽식 독일"이 되어야 할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독일은 제3세계의 비용으로 번영해서는 안될 것이며 새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와 제3세계의 자체적 발전 가능성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
- 새로운 독일은 연방주의에 입각한 지방분권식 (foederalistisch)이면서 사회 복지적 의무수행과 함께 경제적 협력의 방향설정이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지향하는 평화애호적인 독일이어야 한다. 만인을 위한 도전은 개인의 독주가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참여, 민주적 운동, 각 정당과 같은 것을 통해서만 스스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동쪽의 독일인들과 서쪽의 독일인들은 이와 같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결국 그와 같은 기회를 활용하는 가운데 유럽이 전세계로부터 평가될 것이다.

3. "현실사회주의"의 쇠퇴로부터 몰락까지

- o 동독의 위기와 붕괴는 중.동유럽 국가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와 붕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중.동유럽국가의 변혁에 관해서는 H. Vogel (Hsg) : Umbruch in Osteuropa, Bundesinstitut fue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Koeln, Januar 1990 (Sonderveroeffentlichung) 참조). 중부유럽이나 동부유럽의 위기역시 하룻밤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발전과정의 최종산품이었다. 80년대에 일어나기 시작한 위기증세는 특히 80년대 후반기부터 이지역의 모든 국가로 점점 번지기 시작하여 위기는 점차로 전반적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 o 그와 같은 현상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a) 경제분야 : 생산력의 퇴조, 경제시스템의 혁신력 부재와 효율성 결핍, 누후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생태학적 위기상태, 대규모 지역적 황폐화, 부채로 인한 위기, 선진산업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b) 사회분야 : 급성적 공급애로 및 공급위기, 실질임금주의의 하락, 실업, 주민의 사회적 천민화 및 기생생활 (Parasitismus)을 하는 층의 점증, c) 정치분야 : 권위주의적 통치구조, 민주주의와 여론형성의 결여, 국가기구와 공안기구의 당기구와의 밀착, 사회조직의 도구화, 국민대표의 단순한 투표거수기로 전락, 주민대다수의 정치적 방향감각 상실, 점증하는 민족주의경향, 증가하는 소수 민족 분쟁, d) 정신분야 : 공산당의 진리규정 독점성 고집, 체제비판적 사상에 대한 억압, 사회학의 도구화
- o "영도적 역할"을 자처하는 공산당의 정치적 헤게모니니 정신적 헤게모니 따위는 더 이상 논의대상 조차 되지 않았으며 그 권위는 급속도로 하강하였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정치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은 사라졌으며 정당성을 위한 물질적 기초 (Legitimitaetsreserve)마저 없어져 버렸다.
- o 이 기간중 중.동부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는 집권공산당의 지배위기가 첨예화되었다. 산발적으로 발전되면서 정치적으로 상이한 면모를 갖고 있던 야당이 이와 같은

국가에서 대부분 이니셔티브를 장악하였다. 동유럽 각국 공산당간의 커뮤니케이션, 즉 첩예화된 모순과 그 원인을 비롯하여 개혁의 가능성 모색 등 위기증상에 관한 정보교환은 이룩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정보교환은 의식적으로 차단되기조차 하였다. "중·동부 유럽 전체차원"의 새로운 정치적 "대체방안"이란 소련과 동유럽 자체에서는 전연 존재하지 않았다.

- o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소련공산당 지도층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국면에서 "사회주의 국가공동체"의 분해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심한 논쟁이 있었다. 고르바초프와 소련공산당 지도층은 "각 국가와 각 국민 자결권에 의한 발전과정의 자유스런 선택"이라는 결정을 사회주의 동맹국들에게도 적용키로 하였던 바, 서방측에서는 적지 않아 놀라운 일이기도 했다.
- o 그러나 위기는 그 반대로 점점 심화되어 갔다. 소련의 Perestroika는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늦어도 너무 늦게 등장하였으며 중대사안에 대하여서는 무책임하게 설정되었던 것이다.

3.1 체제의 위기 - 모델변경으로부터 체제전환으로

- o 애당초 스탈린주의식 모델의 위기로서 파악된 사회주의의 위기는 개혁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모델변경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와 같은 시점에 이미 일반적인 체제의 위기로 되었으며 체제전환 논의가 대두되었다. 고르바초프조차 이와 같은 현상을 예상하지 못했던 바, 그의 Perestroika 방안은 소련내 사회주의의 체제내적 개선을 고려하면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역동력 제공자로서만 생각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사회주의" (Weltsozialismus)의 위기는 '89년 가을, 극명하게 드러났다. 개혁은 체제전환을 통한 극복이라는 발전추세를 띄게 되었다. (R. Weiss (Hrsg) : Chronik eines Zusammenbruchs, Berlin 1990. S. 124 참조)

- o '89년, 동독을 비롯한 중·동부유럽의 모든 국가에서는 근본적인 전환, 급진적인 새로운 출발, 위기로부터의 돌파구 마련 등이 체제내적으로는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관료주의 계획경제, 일당체제, 공산당의 주도권 독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직원칙으로서의 민주적 집중주의와 같은 체제의 구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이 결국 명백해 졌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위기와 몰락에 대한 궁극적, 결정적 요인은 - 두가지 모두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되겠지만 - 지도층의 "잘못된" 정책이나 정치국의 노망 (Altersstarrsinn)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내 "행정적·중앙집권적 형태가 내포한 모순"속에 있었다.
- o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발생사, 사회주의의 작동 메카니즘, 사회주의의 구조적 결함과 위기, 대안 모색 가능성과 사회주의의 궁극적 붕괴 등 급세기 사회주의에 관해 모든 것을 비판적·총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동독의 멸망과 독일 땅에서의 사회주의의 종말은 전후역사의 종말이며 약 75년간에 걸친 특수한 혁명사와 특수한 혁명이론과 혁명의 실제의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할수는 없다. 더구나 그와 같은 분석이 오로지 결론만 갖고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서 시도될 수도 없다.
- o 하지만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것은 사회주의 좌파의 무자비한 자기바판, 즉 역사적 실제와 사회주의적 이론과의 괴리와 관련한 자체비판이다" (W. Thierse : Zoegernde Bemerkungen zum "Demokratischen Sozialismus". In : SPW (Zeitschrift fuer sozialistische Politik und Wirtschaft), Kiel/Koeln 1990, H. 4, S. 40. 참조)라는 사실과 다만 자기기만만을 위한 주장(테제)의 극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 o 마지막으로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부패한 구 지배층"만이 져야하며 "올바르고 훌륭한 (사회주의적) 방안"이 단지 "옳게 실천되지 못했다"는 견해가 상당히 팽배해 있는 바, 즉 모든 최악의 원인이 바로 스탈린주의에만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리고 동독이나 소련이나 중·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존재했던 사회주의는 결코 "진정한 사회주의" (Wirklicher Sozialismus)가 아니

였다는 테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맹점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체제문제와 구조문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논의하려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물론 중·동부유럽적 체제가 사회주의자나 좌파가 설정했던 사회주의사상과 일치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경제적인 구체적인 체제로서의 "사회주의"는 오늘날까지 소련이나 중유럽이나 중국과 기타 다른 국가에서 토착화된 것과 다른 형태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 o 위와 같은 각양각색의 설명방법과는 무관하게 그와 같은 사회에 근접하여 사회학적으로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지만 단지 종말을 맞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80년대의 "현실사회주의적 체제"란 이미 더이상 역사적 전망이 없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이유가 무엇일까 ?

3.2 몰락의 원인

- o 유럽사회주의 국가들은 현대적 개방사회로 변천될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회는 폐쇄된 산업사회로서 그 구조가 독점적이고 중앙집권적 통치형태를 띠고 있어 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광범하게 평준화되고 고착화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사회적 역동성이 부족하고, 미약한 능력 발휘 유인제공력 때문에 문명 사회로서 자체적인 개혁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폐쇄된 사회에 전망이란 없기 마련이다. 만일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제적 진전상태와 계속 연계되지 않고 고립정책을 취했다라면 훨씬 더 오래 존속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국제환경의 70년대와 80년대에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곧바로 개방과 현대화를 하도록 강요해 왔다. (CSCE, 국제적 분업화, 군축 등) 그렇지만 주어진 구조속에서의 제한적인 현대화란 의욕에 찬 계획과는 달리 쉽지는 않았다.
- o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결국 "대체가능한" 사회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 다만 사회주의는 일종의 사회질서로서, 그속에서 인간자체가 사회복지적으로 정의

롭고 민주적이면서 연대의식에 넘치는 사회를 조성한다는 사회주의의 원초적 아이디어가 발현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버린 것이었다.

- 민주주의 대신 지배도당에 의한 독재, 공동소유 및 실질적 재산의 사회화 대신 국유화 및 생산자에 대한 소유권과 생산의 분리 그리고 명령경제, 사회복지적으로 정의롭고 연대의식에 넘치는 사회대신 봉건주의와 유사한 종속관계 체제, 인격의 자유스런 계발대신 개체의 평준화와 개성 무시 그리고 사전에 계약된 듯한 역할 수행과 임무부여 등이 우선한 사회주의는 점점더 위로부터 조종되고 명령되었으나 공동결정과 자결권이 보장된 국민운동속으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 사회체제가 만일 문명사회로서의 발전상태의 최고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판단되어 내적 호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체제가 약속한 목표와 권한수행이 해결되지 못하게 되므로 국민대다수는 실망과 함께 의식적으로 외면하게 될 것이며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 이와 같은 발전상태의 결정적인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 뿌리는 곧 역사적으로 생성된 특수 사회주의형태의 기본구조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적, 중앙집권적 사회주의의 발전형태는 예외없이 그 원칙적인 발전의 한계성과 맞부딪히게 마련이다. 사회주의의 최종적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르익기 시작하였다.
- 이와 같은 사회주의 기본구조의 최대의 모순은 한편으로는 모든 중요 생산력 기능과 소유권 기능의 부단한 집중화를 통하여 사회의 모든 중요 권력을 국가와 당이라는 행정적 중심부로, 다른 편으론 근로자의 재산몰수로 그들이 갖고 있던 기능과 지위와 노동력을 박탈해 버리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M. Brie : Die Allgemeine Krise des administrativ-zentralistischen Sozialismus. Eine reproduktionstheoretische Skizze. In : Initial, Berlin 1990, H.1, S.17. 참조)
- 현대사회의 고유한 요소인 자기이해 표출, 자기발의, 자기책임, 자아형성과 같은 것은 장기간에 걸쳐 파괴되고 말았다. 시장, 화폐, 이윤, 공개성, 법률, 민주주의,

다양한 개인생활양식과 같은 현대사회의 추진력은 파괴되고 제거되었으며 결코 현실적으로 신장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은 하부체제와 연계된 파급효과의 특수한 합리성인 경제적 효율성, 민주적 토의, 학술적 진실의 발현은 이북되지 않았다.

- o 관료주의 행정적 계획경제, 거의 완벽한 국유화, 중앙통제식 가격형성, 경제전반에 걸친 단일정책적 구조와 같은 것들은 참된 경제적 경쟁, 기초적 혁신, 산업단위와 개체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제한해 버리기만 하였다. 시대가 요하는 가치법칙과 경제법칙의 효능은 모든 현실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그 기반이 박탈되었다. 일반적인 방향감각 상실상태, 책임감 부재, "위로부터" 결정이 내리기까지의 기다림과 같은 것이 기본주체의 재산권 몰수와 현대사회의 하부구조의 박탈로 인한 결과이다.
- o 현대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와의 경쟁에 있어서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은 점점 더 열세에 빠졌으며 심지어 80년대부터는 자본주의 선진산업국에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예속화 되어 버렸다. 대량소비를 지향하는 "서방측" 생활양식의 동유럽 주민들에 대한 파급효과는 매년마다 눈에 띄게 증대되었다.
- o 권력의 사회통제 대신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신뢰"가 촉구되었다. 관심과 욕구와 동기의 다양성은 조직가능성과 구조형태의 다양성과 부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평화스럽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위한 그와 같은 기본원칙과 가치는 사회내 논쟁, 관용, 합의점 도달, 다수결 원칙, 소수집단의 권한 존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묵살되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직의 원칙으로서의 "민주적 집중주의"는 그 원칙과 반대로 결정의 완전한 체계화와 민주적 운동형태의 추세와 상반되게 전개되었다.
- o "정치적 책임자"의 사고방식에 뿌리깊이 박혔던 것은 팽배한 중앙집권화와 더불어 행정적 명령체제의 보편적 효율성에 대한 신봉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현대의 복잡하고 분화된 경제와 사회가 무능하고 관료주의적인 단하나의 "중앙"에 의해 계도되고 통제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신봉하는 것이 바로 집권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출발점이었다.

한정당이, 아니 한 정치국이 감히 수백만명의 창의력, 발의력, 지식을 비롯하여 사회토론을 대신하거나 최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통합해 나갈수는 없었다. 그와같은 것은 비록 지도세력의 의도에 따라 일단 수용된다고 할지라도 아름답지만 불가능한 모험에 지나지 않았다. 다양한 사회주의 국가들속에 있던 지도체제와 지도구조의 "변화"와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는 의도와는 달리 "민주적 집중주의"라는 수단으로는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이로부터 모든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실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관료주의적 명령경제와 하명체제의 공고화가 반복되었다.

- o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발전은 "마르크주의 - 레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체제속에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내포되어 있었던 바, 이 체제는 마르크스의 비판적 사회 분석을 사상한채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되어 정신적 협소함과 사회체제의 불임증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 o 설사 소비에트식 경제체제와 사회체제를 통해 저발전 상태의 농업국에서 때늦은 산업화가 완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경제모델과 사회모델은 경제적 효율성, 사회복지적 생활의 질, 다원화된 여론조성, 민주적 시민참여가 따르는 현대사회의 형성에는 전연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현실사회주의" 국가내 위기 발생적 발전과정의 경과와 결과는 갈등과 침체와 위기, 드디어 붕괴라는 여파를 몰고온 원인이 무엇보다도 다름 아닌 이와 같은 사회체제의 내부에 있었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 o 중. 동유럽의 사회주의 사회의 몰락에 영향을 미쳤거나 지금도 미치고 있는 외적 조건이 물론 있었고 지금도 있다. 냉전, 동. 서간 갈등, 유럽의 분단, 외적 위협, 서방측의 금수조치와 같은 것들이 경제적 발전의 속도를 억제시켰으며 정치적 개혁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나타냈다. 유럽일대에 걸친 정치세력의 양극화는 제2차 세계대전중 반파쇼주의, 민주주의, 발전의지로 결속되어 생성된 (반히틀러 체제) 연합 (Koalition)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다.

-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속에서는 진영론적 사고(Lagermentalitaet), 요새론적 사고(Festungsmentalitaet), 방어론적 사고(Verteidigungsmentalitaet)과 같은 것이 형성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공식정책을 통해 더욱더 굳어져 갔다. "안정"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군사적, 안보정책적 요인이 되어버렸으며, 국내의 정치적 합의점 모색과 정신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논쟁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 서방측에 의한 영향은 오로지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어 허용되지 않았다. "새로운" 사회는 다른 세계와 철저히 "독립된" 사회여야 했고 다른세계에 필적하는 사회였어야만 했다. '75년 이래 국제적인 경기침체는 사회주의 국가들도 심각하게 당면하였던 바, 여하튼 그에 대한 준비란 전연 없던 무방비상태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제적 파국상태를 극복할만한 발전적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는 바, 이로써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진영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평화정책과 긴장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이래 "사회주의 국가공동체"는 전세계에 걸쳐 정치적 비중과 권위와 영향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말았다.
- 사회주의와 쇠퇴로부터 몰락되기까지 이미 사회주의의 이론과 성립에 그와 같은 위기가 진전될 근본적인 소지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은 계속 남아 있다. 역사적 발전과정에 "민주적" 사회주의, "인간적"사회주의, "인도적" 사회주의라고 일컬어 질만한 대안이나 발전가능성이 있었는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은 확고부동하다. 즉 이와 같은 비정상적 사회주의에 대한 주관적 주된 책임은 무엇보다 다름아닌 공산당, 공산당의 지도층인 엘리트, 공산당의 공식적 이론, 정책,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들이 짊어져야 한다.
- "현실사회주의"가 쇠퇴로부터 드디어 몰락되기까지 이미 위와 같은 발전상태가 민주주의 대신 독재, 재산의 사회화 대신 국유화, 경쟁구조 대신 중앙집권적 통제 경제와 같은 것은 이미 프로그램상에 예정된 사실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사회주의 이전에 장기적이고 분화된 분쟁의 소지가 충만한 발전과정이 선행되었는 바,

그와 같은 발전과정속에 수많은 가능성과 대안역시 있기는 했다. 그와 같은 것으로는 20년대 소련의 "신경제정책"의 시도, 소련공산당 제XX차 전당대회와 연계된 50년대 중반의 사회주의 체제 동맹내 논쟁과 그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68년 "프라하의 봄"의 문안중 "인도주의적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한 추구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o 당시까지 개혁과 민주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던 체제의 여러 위기 - 동독의 경우 '53, '60/'61, '68, '70/'71 - 는 그렇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기회로써 활용되지 못했고 항상 동일한 방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되었다. 그와 같은 방법과 원칙이란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 "대중"쪽으로 방향을 돌려 개혁에의 호소, 체제의 부분적 개혁과 적응시도 등인데, 이와 같이 사회주의 유형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결과 새로운 정체적 추세가 점점 광범하게 사회의 각 분야에 파급된 후 결국 새로운 위기가 조장되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 o SED 역사상 명확하고 진지한 개혁시도는 단지 '53년의 "신노선", '60년대초의 "새로운 경제체제" (Noes), 매우 이중적인 '70년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일"이라는 슬로건 등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시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로 책임감 결핍, 일방적인 기술관료주의적 발상, 명령경제 체제의 변화시도의 포기 등과 같은 것 때문에 모두 실패하고 말았거나 실패로 유도되었다. (당내 파벌간의 투쟁에서 "개혁선호" 그룹에 대한 "보수"그룹의 승리, 그리고 '68년 체코사태시 무력진압과 공산권의 "형제적 지원")

3.3 스탈린주의 대 레닌주의

- o 역사적으로 행정적, 중앙집권주의 사회주의의 최초의 변형이라 할 스탈린주의는 무자비한 테러정권 완결을 위해 경제모델, 정치모델, 사회모델을 극단으로 몰고 갔다. 농민단체의 제거, 비판적 인텔리의 제거, 군부지도자와 구불세비캐의 제거, 당내적수 일체의 제거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사회주의 모델의 실천에 옮긴 결과

였는 바, 또한 그것은 권력욕에 혈안이 된 독재자의 행위였다. 어떤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이와 같이 사회주의 형태가 것처럼 극단적인 형태로 현대사회의 제추진 세력을 말살해 버리지 않는 않았다.

- o 동독의 발전과정에서는 저변층에 대한 재산몰수와 박해의 특수한 혼합형태로서 이러한 사회주의 모델이 나타났었다. 각 국가간 차이점은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의 일치된 모델의 본질상 모든 현실사회주의 체제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재 붕괴과정과 극복과정에 나타나는 일종의 공통된 유형이 중요하다.
- o 사회체제로서의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를 극단적으로 변형시켰고 사회주의 문제점을 엄청난 정도로 첨예화 시켰으나 스탈린주의에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점 역시 아주 정확하게 연구한후 평가해볼 일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설정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스탈린주의와 레닌주의는 동일한 것인가? 공산주의에 관한 해박한 학자인 Herрман Weber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탈린 치하에서는 대체적으로 독자적인 질서와 이데올로기의 실체가 레닌주의의 확신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였을 때에도 엄청난 차이점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통치를 담당하게 된 관료의 새로운 특권, 당 민주주의의 배제, 강제집단화, 비러시아 민족에 대한 억압, 비밀경찰의 절대권력과 같은 것들이 차이점중 중요한 특징이다. 비단 스탈린주의가 레닌주의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할지라도 스탈린주의는 레닌의 제원칙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H. Weber : Kommunistische Bewegung und realsozialistischer Staat. Koeln 1988, S.65/66. 참조)
- o 이와 동시에 오늘날 그 어느때보다도 레닌에 관한 진지하고 비판적인 분석과 함께 레닌의 이론적 입장과 실제정책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와 같은 것을 위해 그 당시의 차르황제 통치에 의한 러시아가 처해있던 낙후된 상태를 연구해 보아야 한다. 그 이외에 시대별 (1902부터 1914/15, 1916-1918, 1919-1921, 1922/23)로 저술된 레닌전집에 내포된 매우 상이하고 상반되는 동기를 구별해야

된다. 실례를 들자면 레닌은 관료주의화에 반기를 들면서 아래로부터의 공동 결정을 촉구하였고 혁명의 평등이라는 오래된 이상에 집착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치 엘리트가 태산준령이라도 옮길수 있다는 점을 믿으면서 그 무엇보다 이들의 역할과 의지를 강조하는 주의주의 (Voluntarismus)에 근접해 있으며, 권력쟁취와 권력유지가 모든 것을 우선한다고 주장한 점인데, 그는 제X차 전당대회에서 당내 교섭단체를 금지하였고 폭력사용을 지지하였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 o 레닌의 신경재정책 방안 (1922/23)은 과거의 입장과는 다른 중대한 노선수정이 내포되어 있으며 개인이니셔티브를 위한 광범위한 활동영역 인정, 국제경제에의 통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평화적 무역과 공존대책 등을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의 방안과 정책에는 현실사회주의의 개혁과정에서 궁극적인 실패를 위한 근본적인 제요소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와 같은 것은 주로 레닌의 정당개념, 민주주의 방안, 혁명방안, 혁명실제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o 정당이란 이미 예정된 전위 (Avantgarde)라고 정의된 후 진리규정의 독점성에 근거하여 대중을 교육하기 위해 등장하여야 하며 (의식주입) 당내부에서 민주적 의지형성과정과 의사결정 단계를 최종적으로 금지하여 권력을 쟁취한 후 원칙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각종의회 (Raete)를 대신해야 하며 스스로 민주적 감독으로부터는 이탈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당이론과 정당의 실재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한 기본원칙이 아니라 독재적 발전노선을 위한 것이다.
- o 레닌의 관점에 나타난 여러가지 "약점"중 한가지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레닌의 견해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인 바, 특히 "시민민주주의" (buergerliche Demokratie)의 성과와 그 문명적 특성을 거의 완전히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규명해 보어야 할 것이다. "시민민주주의"의 연속성과 질적 발전을 단절시킨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sozialistische Demokratie)가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 어느 누구에도 부인하지 못한다.

3.4 역사적 실험이 끝난 이후 (5대 태제)

- 오늘날 과거를 소추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는 바, 이미 논급한 것과 같이 금세기 사회주의 발전에 관한 철저한 분석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제 1태제

- 형식적, 관료주의적, 독재적 사회주의의 형성과 그 쇠퇴 및 궁극적 몰락의 원인이 모두 이미 그 이론에 있거나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 (특히 그의 역사관)에게는 해방을 지향하는 기본사상에 모순되는 관점과 입장과 같은 것이 있었다. 레닌에 있어서는 모순성이 그의 이론적 입장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특히 그의 민주주의, 정당, 혁명에 대한 관점은 사회주의의 변형, 정체, 궁극적 실패의 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요소였으며 출발점으로 내포되어 있었다.
- 따라서 "훌륭한 이론"이 단지 "올바르게" 실현되지 못했다는 논쟁과 오로지 "미흡한" 실천 또는 "오로지" 스탈린주의만이 비판대에 올려져야 한다는 논쟁은 이미 설득력이 없고 긴요한 비판적 전체 조감과 전체분석을 편향시킬 뿐이다. 그렇지만 이론적 입장자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종말을 치닫고 있는 소련과 동유럽 여러국가들의 사회주의 유형의 정치적 발전에 대한 주된 원인이 아니다.

제 2태제

- 행정적, 중앙집권적 사회주의의 각종 변형이 처음에는 소련에서 그리고 1945년 이후 중, 동유럽 여러국가에서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어떻게 다양한 대안과 개혁의 맹아가 좌절되고 또한 민주적, 사회주의적 야당운동이 억압되었는지 그 정도에 따라 사회주의의 역사적 쇠퇴는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이었던가가 결정되었다.

- o 이와 같은 주장은 역상과정에 있어서 근본적 개혁과 민주화, 그리고 급진적 변형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당시 소련의 헤게모니 권력 ('53, '56, '68)과 바르샤바조약 가맹국을 통치하던 당관료주의에 의해 파괴되고 말아버렸다는 견해와도 일치한다.
- o '85년 고르바초프에 의해 단계적으로 도입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했으나 철저한 변혁을 실현해 보기에는 이미 너무 늦게 나타났다. 사회주의의 개혁과 혁신을 고려한 페레스트로이카는 스스로 사회주의 체제동맹을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요소가 되었다. 행정적, 관료주의적 사회주의 유형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의 직접적 전위는 - 민주주의적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해 볼 사람이 현재 전연 없을 것인 바 - 오늘날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 o "현실사회주의 체제"는 단지 실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실패하였다. 근본적인 극복만이 모든 계속적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은 억압적 폭력기구와 감시기구의 구축, 대대적인 폭력위협과 테러, "지도급 인사"들에 의한 부정부패와 직권남용과 개인적 치부 등은 구제운동 (Emanzipationsbewegung)과 해방운동 (Befreiungsbewegung)으로서의 사회주의의 근본사상을 최악상태로 그리고 수십년간에 걸쳐 실추시켜 버렸다.

제 3단계

- o 금세기 사회주의 발전의 제문제성은 아직도 철두철미하게 연구해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극복"과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은 러시아(경제적, 문화적 낙후성만으로도)에서도 세계 그 어느곳에도 없었다.
- o 위기와 전쟁과 팽창정책과 함께 사회적 모순을 첨예화시키면서 "대중"의 일부로 하여금 혁명(1917/18)을 야기토록 한 자본주의는 - 앞으로 보여지겠지만 - "씩어 빠져" "죽어가는" (Lenin) 발전과정에 있지 않았다. 유럽에서 혁명이 연속적

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다. 자본주의의 발전의 잠재력은 많이 소진되었지만 아직도 고갈되지 않았다.

제 4테제

- o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문제는 단순히 "시간문제" (혁명은 "너무 조급")로서 볼것이 아니다. 역사적 발전은 "자본주의 사회"의 단절로서나 폭력적으로 강요되는 형태변경으로서나 외부 (전연 소수를 통해서)로부터의 사회주의의 "도입"으로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사회의 추동세력과 저변의 주체가 연속성과 변혁을 일체화시켜 경제상태와 사회상태의 철저한 개혁과 민주화가 이룩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유기적 발전 (형태변경)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o 틀림없이 그와 같은 - 다원화된 노동운동과 민주운동에 기초를 둔 - 현대적 발전방안만이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위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전제조건이 "현실 사회주의"에 결여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o 따라서 "현실사회주의"와 함께 과거의 "시대적 환상" (Epocheillusion)과 "체제적인 사고" (Systemdenken)과 "발전숙명론" (Fortschritts-determinismus)과 석별을 고하고 편협한 인간상과 추상적 사회주의 모델에 대해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는 역사가 항상 그리했던 것처럼 다르게 행동하는 주체자에 의한 구체적인 정치적 과정과 사회적 과정으로서 다시 인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해결된 상태이다.

제 5테제

- o 따라서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종말은 -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역사의 종말"이 아니다. 모든 근본적인 사회적 발전과정이 이와 같은 사실을 함의한다.
중. 동부 유럽의 혁명은 체제해체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해 가고 있다.

새로운 경제와 사회의 구축 그리고 유럽에의 통합이 아직 남아있으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 출발 상황은 불확실하다. 반동도 가능하다. 절망과 미래에의 전망이 없다는 인식이 사회전체를 재삼 휩쓸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미 소련의 발전상태는 새로우면서 특수한 극적 과정에 돌입했다.

결 론

- o 전후체제의 결말, 적대적 군사블럭에 처했던 유럽분단의 결말, CSCE과정의 새로운 차원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륙의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분단, 기아, 등.서간 민족이등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첨예한 갈등의 소지가 동유럽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존재했다.
- o 새롭고 특히 전세계적인 도전은 사회의 발전원칙과 발전구조가 장기적이고 복합적이면서 진화적 과정을 통해 극복적 되면서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문명유형과 진화유형을 위한 새로운 변혁과 발전의 길이 중요하다.
- o 그와 같은 발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국제적 대결, 팽창, 군사적.규모위협으로부터 협력과 동참을 원칙으로 하는 각민족간의 지속적 세계평화가 실현되는 발전
 - 자연을 해치고 다음세대의 생명을 희생 (생태학적 파국은 이미 미래의 문제만이 아님)하는 무절제한 경제성장으로 부터 "양질의 성장", 자연과의 평화, 생태학적 균형의 복귀가 실현되는 발전
 - 일부 선진산업국에 의한 부의 집중, 제3세계와 제4세계의 증가일로의 빈곤과 저개발로부터 새롭고 정의롭고 연대의식이 충만한 국제경제질서가 실현되는 발전
 -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적 열악성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따르는 민주주의와 수많은 사회복지적 정의가 실현되는 발전

- 가부장적으로 형성된 통치구조, 사고규범, 행동규범으로부터 남녀성별간 동등화, 여성과 남성 대등한 참여가 실현되는 발전
 - 의회주의적 형식과 제도화만을 강조하는 (매우 불가피한)의 민주주의로부터 대의민주주의 (Representativdemokratie), 직접 민주주의 (Direktedemokratie), 경제민주주의 (Wirtschaftsdemokratie)가 통일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발전
- o 동유럽이 현대화라는 불확실한 과도기에 처해있다면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현대 사회의 현대화", 그리고 현대의 새로운 질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서방사회는 긴급한 사회변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시민사회는 현대적이고 혁신 능력이 있으며 개방된 사회로서 실증되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 여론조성, 경제의 경쟁구조와 혁신저력, 경제와 사회의 국제화와 같은 것은 발전 능력이 있고 진화의 문이 열려 있는 사회에서만 볼수 있는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내부에 있는 사회복지적, 민주주의의 문제와 특히 국제적 도전과 사회의 발전원칙과 발전구조의 불가피한 변화에 비추어 볼때 이와 같은 현대의 시민사회는 새로운 진화유형과 문명유형에 있어서 광대한 변천과 변화에 처해있다.
- o 이에 상기한 현대의 질을 "폐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변천과정 속에서 정치적, 문화적 조정작용을 통한 새로운 제원칙과 제구조가 관찰 (D. Klein : Die buergerliche Gesellschaft vor der Reform zur ueberlebensfaehigen Gesellschaft. In : Utopie konkret, Berlin 1990, H.Z, S. 6ff. 참조)되므로써, 경제의 생태학적 변환, 철저한 사회복지적 민주주의, 남녀평등, 국제적 인류문제의 극복과 같은 것이 "착수"되고 사회원칙 (Sozialprinzip)이 자본원칙 (Kapitalprinzip)에 대한 긍정적 대안으로서 계속 발전될 것이 매우 중요하다.
- o 이와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이룩되지는 않는다. 사회운동과 민주운동, 비판적 여론형성 및 공개성의 제고, 정치적, 의회주의적 다수의 형성과 같은 것이 개혁과 변형, 사회복지적, 경제적 발전의 주요전제조건으로서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